

석사학위논문

일본 강점기하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관한 실태연구

—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을 중심으로 —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일 본 학 과

조 원 준

석사학위논문

일본 강점기하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관한 실태연구

—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진 기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일 본 학 과

조 원 준

조원준의 국제 지역학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 함

2006년 2월 일

주심 문학박사 신종대 (인)

위원 문학박사 박화진 (인)

위원 정치학박사 김진기 (인)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2
3. 강제동원의 개념 문제	7
4. 연구방법과 범위 및 구성	8
II.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정책	10
1.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의 배경	10
1) 조선의 대륙병참기지화와 전시통제경제	10
2) 전시동원체제의 강화를 위한 국가총동원체제	13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의한 국가총동원	14
(2) 국민총력운동에 의한 국가총동원	18
2.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의 전개	20
1) 1939년 이전의 조선인 노동력동원	20
2) ‘국가총동원법’의 제정과 강제동원을 위한 제도적 준비	23
3) 노동정책의 강화와 전개	28
3.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환	34
4. 소결	38
III.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개과정과 유형	39
1. 강제동원 시기적 단계구분과 동원규모	39
2.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형태와 유형	47
1) 조선내의 노동력 강제동원의 형태	47

2) 조선외의 노동력 강제동원과 유형	54
(1) 모집에 의한 강제동원	54
(2) 관 알선에 의한 강제동원	56
(3) 징용에 의한 강제동원	60
(4) 조선농업보국청년대에 의한 강제동원	64
(5) 기타방법에 의한 강제동원	68
3. 소결	70
IV.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실태와 노동구조	72
1.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노무관리와 노동구조	72
2.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75
1) 식민지민족으로서의 노동차별	75
2) 군대식 노동통제와 생활	78
3) 노동력 강제수탈과 생활상	80
3. 소결	83
V.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저항과 귀환	85
1. 도주에 의한 저항	85
2. 분쟁의(紛爭議)에 의한 저항	88
3. 비밀결사운동에 의한 저항	93
4. 해방 후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귀환	94
5. 소결	99
VI. 결론	101
참고문헌	106

표 목 차

<표 1>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통제관련 칙령(조선적용)	24
<표 2> 노무과와 사회과의 주요 관장업무 내용	29
<표 3> 일본, 사할린, 남양(南洋)이입 조선인 노동자 도향 상황	36
<표 4> 1939년~1945년까지 전시노무동원수	41
<표 5> 전시노무동원자의 수	42
<표 6> 강제연행자수(1939~44,45)	43
<표 7> 식민지시대 국내외 인력동원의 추정	44
<표 8> 조선내 관 알선 노무자 및 도내동원수 추정치	44
<표 9>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보존현황,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현황표	46
<표 10> 1944.45년 학도근로동원 실시와 계획상황	53
<표 11> 조선농업보국청년대 파견 상황	66
<표 12> 사업장내 분쟁의 발생건수 참가인원	90
<표 13> 국외 지역별 귀환자 수(1945.8~1948.12)	95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concerning compulsory
mobilization of Korean labor under the occupation period by
Japanese force
(Focusing on the mobilization of labor force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Won-jun Jo

Major in Japanese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which Japan indiscriminately exploited Korean workers after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wartime period.

Japan, who invoked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and the Chinese-Japanese War in 1937 in sequence, assigned Korea with the role of a continent commissary base for secure monopolized market and the supply of food and resources while executing the continent invasion war. Additionally, Japan converted Korean economy in full scale to the control economic system of a war footing in order to foster military business for continent invasion war. However, Japan did not hold this stage and expanded it to the Pacific War with the surprise attack on Pearl Harbor of American navy base in December 1941. Japan came to realize the necessity of potent government control to provide consistently war supplies and labor with the prolonged and expanded

war. Therefore, Japan enacted and promulgated 'National mobilization law' and established Korea in the national totalitarian war system. Also, they emphasized 'to become servant or people of Japan' through 'to become a single body of Japan-Korea's a method to control thoroughly the spirit and make conscious in order to mobilize Koreans into war without any obstacle. The specific action plan of 'to become a single body of Japan-Korea' was national spirit mobilization campaign and national total strength movement. Japan expelled colonized Koreans onto battlefield through these movements and exerted all energy to the utmost in forced mobilization by installation of legitimate actions and institutions to exploit Korean labor force in through way. Japan enacted 'National mobilization law' and applied it irregularly depending on situation and condition and consolidated various laws and institutions to mobilize labor right before the defeat.

They regulated the labor force within Korea with 'passage management policy' and 'labor demand and supply management policy between regions' before 1939. But they made full conversion to settle down the lack of labor in the middle of executing continent invasion war with the labor of colonized Korea.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 labor was initiated in the earnest way with the release of the note, 'the internal migration of Korean laborer' under the name of both deputy ministers of internal affairs department and Public welfare department. This is compulsory mobilization and collection placing government ahead, what is called as 'man hunting'. The forced mobilization was made in 2 categories, which are one for within Korea and the other for outside Korea, and there is no data yet concerning how many number, from where, how and to where was mobilized. If taking a look at the documentary records and the research result till now, the number of mobilized persons is about 5.5 million including 'labor country protection team 'within Korea and about 2million outside Korea, most of whom got drafted to Japan. When the population of Korea might be 22million at that time, 7.5million Koreans corresponding to as much as one third of whole population were forcefully mobilized.

All low-leveled administrative offices including 'the Korea

government-general' to have strong impact were deeply involved in labor mobilization and 'Korea labor association' to have the character of private organization under strong support of 'the Korea government-general' took compulsive, suppressive and violent measure against Korean people. Though the labor mobilization outside Korea was extensively made over Japan, Sakhalin, Polynesia, Southeast Asia, China, Russia and etc, Japan occupied most part of them. The mobilization methods took the different types per times such as collection, government meditation, draft and etc, but this was differently appli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t that times. Since the draft order was made in earnest in September 1944, the mobilization has been composed of draft laborers. The Korean laborers were transferred to the spot in strong military organization from the beginning period of mobilization. Additionally, they got strictly isolated even on the way and were under control in the formation of military unit after transfer to the work place. Japan organized the labor structure of working place in military manner and selected staff with a career of military service to manage works, and administered labor with through discrimination over wage, meal, dormitory and working place in terms of colonized people. Especially, they pushed workers into very small room labeled as "Octopus Room" to get inhumane treatment and suffer from severe starving. Due to this kind of harsh life in working place, the Korean laborers made a variety of resistance on the spot. The most frequent one was fleeing as a passive type of resistance and there were dispute bonds and secret society campaign. The fact that Korean laborers, who came from rural community and did not get any kind of conscious education in regard to labor movement, had to make pure fleeing from the spot and face the present with dispute bonds is truly descriptive of how severe Japanese labor management was. This problem is verified by the fact that Japan did not take an immediate action of home-coming and even took an act of atrocity including massacre to forced mobilized persons even after defeat.

I. 서론

1. 문제제기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은 과거사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양국의 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되어 있는 현재에도 이런 갈등구조는 심화되어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일간의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교류에 있어서도 과거사문제는 장애물로 놓여져 있다. 특히 일본 강점기하에서 자행된 강제동원은 과거사문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양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강제동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근대 민족사를 복원하는 핵심과제이다. 강제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동원실태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 강점기하에서 조선인 노동력에 대한 강제동원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 아래 본고는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실태를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에 대한 분석이다. 노동력 동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원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원정책에 대한 고찰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노동력 동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주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개과정과 유형에 대한 고찰이다. 노동력 동원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모습과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즉 그 동원규모, 방법, 유형, 전개과정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 강제동원실태를 연구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와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노동력 동원문제의 핵심사항이다. 나아가 동원된 작업현장에서의 노동통제와 생활상을 부각시켜 냄으로써 강제동원 진상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넷째,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저항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일본의 노동력 강제동원에 맞서서 저항했던 저항상

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은 노동력 강제동원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어 줄 것이다.

2. 선행연구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선행연구는 그 동안 국내학계에서 한일관계나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¹⁾ 식민지 동원정책과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력 동원을 비롯해 병력동원, 여성동원, 조선내의 동원은 그 규모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패망과 함께 공식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소각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1차 자료가 부족한 것이 이 연구가 지체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놓고 실태를 파악할 길이 없게 되었고, 단편적인 자료들 속에서 강제동원의 실상을 재구성해야 하는 한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강점기 말기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체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기념비적인 활동과 역할을 했던 학자로는 재일사학자 박경식²⁾을 들 수 있다. 그는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조선인 강제동원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낸 획기적인 연구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서에는 1910년~1938년까지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1)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주요한 연구로서는 ①林えいだい, 1981. 『日帝의 朝鮮人勞動強制收奪史』, 現代史出版會 ; 1991.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明石書店. ②樋口 雄一, 2000. 『戰時下朝鮮人勞務動員基礎資料』 1-5. 綠蔭書房 ; 1986. 『協和会—戰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社會評論社. ③山田 昭次, 1981. 『九州朝鮮人強制連行の実態』, 筑豊と共闘する会. ④金英達·飛田雄一編, 1990-1994. 『朝鮮人·中国人強制連行·強制勞働資料集』,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⑤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1992四国編, 1993大阪編·兵庫編, 1997中部·東海編, 2001中國編, 2002關東編1),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の記録』, 柏書房. ⑥梁泰昊, 1993.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⑦金贊汀, 1975. 証言·朝鮮人強制連行, 新人物往来社. 등을 참조할 것.

2) 박경식은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미래사, 이외에도 방대한 양의 저서인 1980~1984, 『朝鮮問題資料叢書』 アジア問題研究所 ; 1975~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三一書房, 은 노동력 강제동원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고향을 버리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제일동포의 계층을 이루었던 생성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39년~1945까지의 역사를 강제동원정책과 함께 그때 당시의 상황, 노무관리, 훈련, 노무자 탄압정책, 유골문제 등 노동실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朴慶植 1965) 이것은 강제동원이 현재에 남긴 후유증과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고발하여 강제동원문제를 일본사학계에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강제 동원되었던 6명의 피해자 구술자료가 있고, 1963년부터 직접 현지 답사하여 조사한 ‘히타치(日立)광산, 조반(常磐)탄광의 노동자학대’, ‘기아와 흑한에서의 학살’, ‘홋카이도(北海道)탄광과 큐우슈우(九州)탄광, 우베(宇部)탄광에서의 학대’ 등 이밖에도 여러 형태로 조선노동자가 학대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들의 학살사건에 관계된 자료들을 수록하여 강점기하에 겪었던 참상들을 소개하는 한편 제일동포와 관련된 문헌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강제동원이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정책아래 이루어진 무모한 침략행위였다고 폭로하였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일본제국주의 시행법령을 근거로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으로 시기구분을 하면서 모집기와 관 알선기가 징용기보다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약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냄으로서 노동력 강제동원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김대상은 1970년대에 국내 학계에서 조차 거의 관심이 없었던 노동력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서를 내놓으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김대상 1975) 이 연구의 특징으로는 작은 문고판으로 발간되었는데도 포괄적인 면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총6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책은 제1장에서 확대하는 침략전쟁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침략전쟁 하의 수탈과 탄압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황국신민화에 광분하는 일본이 조선인을 체포, 고문, 투옥했던 상황을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노동력 동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즉 모집과 관 알선, 근로보국대, 징용 등의 유형과 형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으로 희생당했던 피해자들의 체험수기가 기록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여자정신근로대가 동

원과정에서 결국은 위안부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병력동원의 측면에서 육군과 해군으로 조선의 지원병을 동원해 갔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지원병중에서 학도지원병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6장에서는 학도병의 저항과 투쟁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구와 평양에서 학도병들이 민족적인 차별과 가혹한 교육에 맞서서 반란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어서 학도병들이 패색이 짙어가는 일본에게 저항의 방편으로 끊임없이 탈출을 감행하였던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 내용에 한계점이 있다면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모습이 없고 국내동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허수열은 노동력 동원과 조선 내의 동원에 관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논문을 발표하였다.(허수열 1985) 1930년대 조선의 상대적인 과잉인구는 그 동안 ‘노무수급 조정책’으로 조절해오던 노동정책이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총력전체제 하에서 일본의 노동정책은 확대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촌의 재편성 정책과 강제동원 전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총동원법 이후 노동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정책 사이에서 상호관계를 해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돋보인다. 또한 노동력 동원의 단계도 모집-관 알선-징용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특히 조선 내의 강제동원에 중점을 두고 동원실태를 분석해 냈다. 동원인력도 1939년 이후 700만 명으로 추산해 냈던 것은 2003년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추산한 794만 명과 큰 차이가 없다. 조선인의 인력수탈이라는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논문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또한 노동정책의 입안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책문서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노동정책이 조선인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조선 내의 동원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강제동원의 실상을 조선 외의 동원과 함께 연관시키지 못한 것이 미진한 부분으로 보인다.

김민영은 강제동원을 특히 강제적·집단적 대량동원 체제였다는 것을 들어 ‘전시노무동원’이라고 규정하였다.(김민영 1995) 그리고 일본자본주의의 관점

에서 조선의 노동력동원을 살피고 있다. 우선 1930년대 말 이전의 조선 내 노동력 동원정책으로서 ‘지역간 노무수급 조정책’과 일본으로 가는 ‘도항조정책(渡航調整策)’으로 조선의 노동력을 조절해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국가총동원법’의 조선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며, 이로 인한 강제동원의 잔학한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즉 강제동원의 실태, 그에 대한 조선노동자들의 대응 양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론으로 일본의 사가(佐賀)현 지역의 니시키(西木)탄광 및 사가(佐賀) 탄전지역의 조사연구 결과를 소개해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강제동원이 조선의 내재적인 발전을 억압하고 왜곡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여러 모순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런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조선의 농촌과 일본의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인력수탈의 배경과 전개과정, 실태,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다양하게 고찰함으로써 조선노동력 강제동원의 위치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력 동원을 조선 내의 동원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일본만을 한정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 중에서도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것에만 치중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혜경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진행형의 미청산과제라고 하였다.(정혜경 2003) 연구 성과가 일본에 비해 매우 부진한 국내의 사정을 강제동원의 기초적인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 있는 소장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더욱이 국내의 구술자료를 중요시하여 이 자료들을 관리하는 방안과 기록관의 설립을 강조하는 것은 특이하다. 또한 구술자료의 중요성과 함께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닌 현장답사 등에 관한 언급은 국내 연구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³⁾ 그러나 강제동원의

3) 구술자료란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로서 구술자가 면담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이다. 그리고 구술자료의 효용성은 첫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서술에 참여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혹은 ‘역사의 민주화’가능성을 열고 있다. 둘째, 문헌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 구술자료는 대체가 가능하다.(일제강점하강제동

연구방법에 있어서 구술자료를 통한 새로운 접근방법에도 불구하고 문헌자료와 구술자료의 접목을 통하여 강제동원이 우리나라에 미친 정치경제적인 영향, 강제동원시기에 조선근대의 역사적 의미부여를 통한 새로운 해결점을 찾는 방향제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는 일본 강점기 후반에 조선에서의 노동정책과 강제동원 체제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이상의 2003) 그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대공황기를 극복하고자 조선의 공업화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역별 산업별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경제적으로 농공병진책을 추진한 일본이 군수산업 확대와 함께 조선의 노동력을 조사, 파악하여 일본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과 노동자들의 대응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후 노동정책을 강화한 일본이 징용을 비롯한 여러 동원방식으로 강제동원해가는 동원실태와 강제동원에 맞서서 저항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정책차원에서 접근하여 당시, 사회구성의 성격과 노동력 수탈의 진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일민족문제학회가 발표한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라는 연구서에는 국내외의 강제동원에 관한 2003년까지의 연구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서는 그 동안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주요 자료에 대한 간단한 요지정리, 문헌해제, 학습 길라잡이 등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지침서이다. 나아가 이 연구서는 각 주제별로 연구의 초학자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분야별 지침의 역할도 하고 있다.(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2005) 그러나 이 연구서는 간단한 서지사항과 내용의 의의 등, 몇몇 주요 책자에 대해서만 설명이 있고 너무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강제동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관련 사료와 일본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 그리고 일본의 각 사업장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2001)

3. 강제동원의 개념 문제

본고의 강제동원에 대한 용어개념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일본 강점기하에서 인력동원 형태를 규정하는 용어개념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5년 재일사학자인 박경식이 『강제연행의 기록』을 발표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강제연행’의 범주를 들 수 있다.⁴⁾ 이 범위 속에는 노무동원·병력동원·준병력동원·여성동원⁵⁾이 ‘강제연행’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강창일, 김인덕, 정혜경, 노영종, 정인섭 등이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강제연행의 의미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폭력 말고도 황민화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와 설득, 본인의 임의결정·협박, 법적강제 등에 의한 인력동원을 의미하고 있다.(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2005:16) 둘째, ‘전시노무동원’으로서의 개념이다. 김민영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개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념이고, 조선인 노동력 동원은 강제적·집단적 대량 동원체제였으므로 집단적 개념인 ‘전시노무동원’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김민영 1995:23-24) 셋째, 강만길, 객건홍, 안자코 유카 등이 주장하는 ‘강제동원’으로서의 개념이다. ‘강제동원’은 ‘전시노무동원에서 간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노동력 이동이다.’라는 점이 강조된 개념이다.(정혜경 2003:7) 넷째, 기타 사항으로 김영달⁶⁾은 노무동원, 병력동원, 여성동원 등으로 분류하였다.(金英達 2003:41 정혜경 2003:7재인용) 또 한국정신문화연구원⁷⁾에서는 2003년 “일제하 피강제동원

4) 박경식은 당시 전시동원체제에서 강제연행을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목적아래 수년간 일본 전역에서 현지답사와 구술자료 수집 작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일본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는 사실로 확립됨으로서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상하였다.(정혜경 2003:6)

5) 정혜경은 여성동원에 관해서 ‘여성동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와 근로 정신대라는 용어 사이에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정신대는 노무동원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정혜경 2002/7)

6) 김영달은 강제동원의 분류를 노무동원(모집, 관 알선, 징용, 군요원), 병력동원(지원병, 징병, 준병사), 여성동원(여자정신대, 일본군위안부)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군속을 준병사(해군설영대와 포로감시원)와 군요원(기타 군속과 軍夫)로 구분하여 전자는 병력동원에 후자는 노무동원에 포함하였다.(정혜경 2003:7-8)

자 등 실태조사연구”에서 노무동원, 병력동원, 성동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특히 정혜경⁸⁾은 강제연행이란 용어와 함께 강제동원을 노무동원, 병력동원, 준병력동원, 성동원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조선인 강제동원을 구분할 때, 대부분이 노무동원·병력동원·준병력동원·여성동원이라는 기준을 통상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본강점기하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⁹⁾를 정부차원에서 발족하였다. ‘강제동원’이란 용어는 이 위원회의 명칭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4. 연구방법과 범위 및 구성

본고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연구방법은 1차 자료와 2차 문헌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과 실태를 분석 정리하여 문제제기의 목적이 분명해지도록 접근하는 것이다. 즉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수행이 조선인의 동원상황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범위는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과 노동력 강제동원 실태를 연구범위로 한다. 특히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정책에 중점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실태조사는 강제동원분류를 노무동원(기존의 노무동원에 여자근로정신대 포함), 병력동원(군인, 군속), 성동원(일본군위안부)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군속을 병력동원에 포함시키고, 여자근로정신대를 노무동원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정혜경 2003:8)

8) 정혜경은 동원구분의 방법을 동원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원주체 및 노동내용, 노동현장을 중시할 것인가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동원목적을 더 중시하는 관점으로 보고 노무동원(기존의 노무동원에 근로정신대 포함), 병력동원, 준병력동원(포로감시원, 군노무자 포함, 기타 군요원), 성동원(일본군위안부)으로 구분하였다.(정혜경 2003:9-10)

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설립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2월13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결을 거쳐서, 2004년3월5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법률 제7174호), 2004년5월3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준비기획단 설치, 2004년9월11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8544호), 2004년11월10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발족, 2005년2월1일~2005년6월31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신청 1차 완료, 2005년12월1일 현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신청 2차 접수 중에 있다.

두고 노동력 동원의 배경과 전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력 강제 동원 실태에 있어서는 동원유형과 과정, 노동구조와 생활실태, 노동력 강제 동원에 대한 저항과 귀환에 한정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본고의 구성은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노동력 강제동원 실태를 통하여 얻고자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문제로서 제기한다. 그리고 노동력 동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강제동원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을 실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의 입안, 기구의 정비, 그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신동원정책의 수행과 총력전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39년을 전후로 하여 진행된 노동정책과 전환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노동력 동원의 동원유형과 동원규모에 대해서 고찰한다. 또한 조선 내외로 노동력을 동원하였던 일본이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동원하였던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노무관리와 노동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강제동원 노동자가 겪었던 실태를 고찰한다. 식민지 민족으로서 받아야 했던 노동차별과 군대식 노동통제,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의 의·식·주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강제노동에 맞서서 저항하였던 상황을 살펴본다. 저항의 형태로서 도주와 분쟁의(紛爭議), 비밀결사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개해 간다. 그리고 해방 후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귀환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서 서론에서 문제제기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함으로서 결론을 맺는다. 본고의 구성은 이상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Ⅱ.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정책

이 장에서는 조선인의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던 시대적인 배경과 정신동원 정책을 살펴본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적용하면서 노동력 동원을 위해 어떤 기구와 제도, 법령을 제정하여 노동정책을 전개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노동력 강제동원으로 전면 전환하게 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의 배경

1) 조선의 대륙병참기지화와 전시통제경제

일본은 1910년대부터 철도와 교량건설을 중심으로 조선에서 군사 기지화를 착수하였다. 그런데 1929년에 경제 대공황(大恐慌)이 엄습하게 되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일본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31년 9월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킨 일본은 대륙침략으로 자국 내에서의 극심한 경제적 공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31년에 우가키 잇세이(宇垣一成 1931.6~1936.8)가 식민경제정책의 부흥이라는 책임을 안고 조선총독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일본을 정(精)공업지대, 만주를 농업지대, 조선을 조(粗)공업지대로 설정하는 ‘일만선(日滿鮮)블록경제체제’ 형성을 주장하였다. 즉 조선이 중심이 되어 직접 대륙에 진출하기 위한 군수공업화의 추진이었다.(이승렬, 1996)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륙침략전쟁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자국의 경제적인 공황극복의 돌파구였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은 임시 각료회의에서 중일전쟁을 국지전으로서 단기간에 마무리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예상외로 강한 저항을 보이면서 장기화되어 본격적인 ‘전시통제경제체제(戰時統制經濟體制)’로 전면 개편하였다. 일본은 전쟁수행 상 조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조선이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공업화의 역할과 군사기지로서

입지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조선에서 인적, 물적 자원조달을 위해 ‘전시통제경제체제(戰時統制經濟體制)’의 강화와 함께 ‘대륙전진병참기지화(大陸前進兵站基地化)¹⁰⁾’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에 중일전쟁을 마치 ‘성전(聖戰)’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일본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권력으로 ‘대륙병참기지화’와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를 강조하였다.¹¹⁾ 그러나 그런 의도 속에는 단순한 의미만이 내포되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의미가 내포된 총체적 개념의 ‘대륙전진병참기지’의 설정이었다. 공업, 농업, 광업 등 제반 산업이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 공급을 통한 철저한 식민지 수탈의 ‘전시통제 경제정책’이었던 것이다.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에 취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1936,8~1942,5)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조선 식민지 통치이념으로서 제시하고 대륙병참기지화의 역할달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1938년 4월 각 도지사 회의(各道知事會議)에서 “우리 조선의 위치가 오른손에 내선일체, 왼손에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열쇠를 쥐고서 일만연쇄(日滿連鎖) 관계의 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선총독관방문서과 편찬 1938, 권태억 2005:121재인용) 이어서 그는 1940년 8월 31일 산업부장회의훈시(道産業部長會議訓示)에서도 “제국의 대륙전진병참기지로써 조선의 사명을 명확히 파악 할 것”을 촉구하였다.¹²⁾ 즉, 조선은 침략전쟁을 위한 산업으로 육성시

10) 원래 군사용어인 ‘병참기지(兵站基地)’란 본국영토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가 본국의 군수(軍需)와 긴밀한 연계 하에 작전의 목적을 수행하고 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하는 시설과 물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병참을 담당하는 본부로서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병참기지’이고, 국외 작전부대에서 ‘병참기지’로부터 수송된 군수품의 축적, 정리, 진송, 후송, 분배, 등을 담당하는 것이 ‘병참주지’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국내에 있어야 할 ‘병참기지’가 조선 내에서 추진된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대륙침략을 하기위한 병참거리를 단축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전쟁무대인 대륙의 일각에 ‘병참기지’를 전진 배치하여 수송상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이상의 2003:87)

11) ‘대륙전진병참기지로써의 조선’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1938년8월 제1회 각도 산업부장회의 훈사(訓辭)에서 미나미 지로(南次郎 1936,8~1942,5)총독에 의해서이다.(鈴木武雄 1939, 이상의 2003:86 재인용)

12) 미나미 지로(南次郎)총독은 1940년8월31일 도 산업부장회의훈시(道産業部長會議訓示)에서 “현 사면에 있어 우리 조선은 대중국 작전군에 대해 식량, 잡화등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공출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오히려 불안하며, 장래 다시 중대사태에 당했을 때에는, 가령 일정한 기간 대륙 작전군에 대해서 내지(일본)로부터의 해상수송로를 차단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선의 능력만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조선의 산업분야를 다각화하고 특히 군수공

켜 독자적 군수물자를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미나미 총독은 그 실천방안으로 국체명징(國體明徵), 선만일여(鮮滿一如), 교학진작(敎學振作), 농공병진(農工竝進), 서정쇄신(庶政刷新)등으로 이루어진 5대 정강을 발표하였다.(朝鮮 1937/5, 이상의 2003:86 재인용) 그 중에 ‘농공병진책(農工竝進策)’은 공업에 의한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과 광업에서도 군수산업 발전을 강조한 것으로서 조선의 풍부한 자원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이처럼 조선에서의 ‘병참기지’는 대륙 침략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화학공업을 토대로 군수 공업화를 이루겠다는 속셈이 숨어있었다.(김은경 1999) 이런 농공병진책(農工竝進策)의 구체화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 원료, 노동력의 확충을 통한 ‘고도국방국가체제(高度國防國家體制)’¹³⁾의 확립인 것이다. 즉 대륙 침략의 실현이 경제적으로 조선을 철저히 이용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의 독점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중공업을 비롯하여 기계제 공장이 설립 가동되어 대대적으로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일본은 독점자본의 조선 진출을 보장해 주기위해서 1937년 ‘중요산업통제법(重要産業統制法)’을 개정하여 조선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독점재벌인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노구찌(野口)등이 방직, 식료품, 화학, 기계, 금속공업, 요업, 광업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유성희 외 1998)

‘전시통제경제체제’ 하에서 조선에게 강력하고도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이 생산력확충을 위한 노동력 공급이었다. 즉 생산력 확충의 근간이 자원, 자본, 노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실질적인 근간은 노동력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일본의 전시경제가 자금, 자재, 수송 등 여러 면에서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동원 가능한 유일한 자원은 노동력이었다.(이상의 2003:91-92)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노동 정책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중요 산업으로 분류되던 군수산

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조선총독관방문서과 편찬 1940, 권태억 2005:121 재인용)

13)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교육을 개선하고 국민의 정신을 국방목적으로 향하여 일체의 생활을 거기에 집결한 결과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일본도 고도국방국가 체제를 급속히 정비하여 중일전쟁을 치르고자 하였다.(國民總力朝鮮聯盟 編, 1941a:1-3. 이상의 2003:85 재인용)

업, 생산력 확충산업, 운수통신업, 생활 필수품산업, 국방 토목 건축업 부문 등에서 전시 노동력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당시 1938년에만 충당해야 할 노동력이 약60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東亞日報 1938/3/31, 이상의 2003:93 재인용)

이처럼 조선 내에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해 감에 따라¹⁴⁾ 조선인 노동력에 대한 공출요구가 각 산업 부문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노동력에 대한 동원 방식과 정책도 점차 변하여 가면서 조선의 노동력은 그 탄력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일본의 존망이 달려있는 전쟁 노동력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조선인의 노동력 동원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전기호 2000) 더구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청장년이 전쟁터로 동원됨에 따라 후방에서 국방산업을 담당해야 할 노동력 확보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¹⁵⁾ 일본은 이런 노동력 부족문제를 식민지 지역의 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조선을 ‘일본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충지’로서 재평가한 일본은 강제동원으로 노동 이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⁶⁾

2) 전시동원체제의 강화를 위한 국가총동원체제

일본은 총력전체제¹⁷⁾를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총동원법’

14) 조선 내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가는 필요노동력은 그 수요추세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1931년 말에 8만 명이었던 공장노동자가 1937년 말에는 16만 명으로 늘어났고, 1939년 말에는 2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당시에 탄광노동자는 1931년6월에는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37년에는 16만 명, 1940년에는 25만 명으로써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수요는 매년30만 명 정도씩 수요증가를 보였고, 이런 현상은 대부분 광공업산업은 부흥하고 있었으나 이 중공업산업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는 필요노동력이 부족한 서북부지역에서 집중되어 일어났다.(民族問題研究所15 2000b:304-317 이상의 2003:94 재인용)

15) 중일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자국민을 전쟁에 동원하였다. 1941년12월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후부터는 일본인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전쟁터로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육해군 수는 1937년 중일전쟁 당시 107만8천이었던 것이 1945년에는 71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木坂順一郎 1985:312-313, 이상의 2003:92 재인용)

16) 이는 당시 일본 정책입안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로서 일상적으로 강조되고 있다.(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1939:133-136), 조선총독부 간행물인 『朝鮮』에서도 조선인 노동력은 ‘통후의 산업 전사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동아 제지역의 건설에도 충용되어야하고 내지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森谷克己 1942/4:1-3, 이상의 2003 92-93 재인용)

을 제정하고 정신 사상적인 면에서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주장하였다. 중일전쟁 기에는 총력전을 펼치면서 조선민중을 길들이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國民精神總動員運動)’을 전개하였고, 태평양전쟁 때에는 ‘국민총력운동(國民總力運動)’을 전개하여 나갔다. 그러므로 이 운동의 배경에는 ‘황국신민화’의 기초아래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요하며, 침략 전쟁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하기 위한 강력한 식민지정책이 내재되어 있었다.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의한 국가총동원

일본은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7월 22일에 조선민중의 사상을 통제하고 전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도에는 ‘정보위원회’를 두고 종래의 농촌 진흥 운동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며 사상을 통제하고 있었다.(김영희 1996:160) ‘조선중앙정보위원회’의 구체적인 시책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물, 영화, 뉴스사진, 라디오, 종이연극, 친일명사의 좌담회 등을 통해 계몽 선전하는 것이다. 둘째, 애국일 행사제의 실시이다. 셋째, ‘황국신민의 서사(誓詞)’의 제창이다. 넷째, 국방헌금품, 전승축하행사, 일·독·이 삼국 방공협정 축하행사, 황거요배 등의 실시였다.(김운태 1996/12) 그리고 이것은 1년 후에 1938년 7월 7일 ‘조선중앙정보위원회’의 사업을 그대로 계승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國民精神總動員運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1937년 10월 12일 일본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이 결성됨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조선에서 실시된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38년 9월 22일에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강령’¹⁷⁾의 내용에는 이 운동의 목적과 이념이 나타나 있다.(최유리 1997:86)

17) 총동원체제는 원래 ‘국가총력전(國家總力戰)’이라는 사상에서 기원한다. 이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일반화된 근대 전쟁 관이었다. 그 특징은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모든 요소를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유사시에 이들 모든 요소를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는 것이다.(賴顯厚 1981:12-14)

18) 강령의 내용 : 황국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활의 혁신, 전시경제정책의 협력, 근로보국, 생업보국, 통후의 후원, 방공방첩, 실천망의 조직 및 지도의 철저.(國民總力朝鮮聯盟 1945c: 90-96. 최유리 :1997:86 재인용)

첫째, 황국신민화를 통한 내선일체이다. 일본에서의 지도 방침이 거국일치(擧國一致), 견인지구(堅忍持久), 진충보국(盡忠報國)의 3대 슬로건 하(下)에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에 기초하여 내선일체를 기조로 한 통치 방침의 철저,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화를 도모하는 것을 대안목(大眼目)으로 한다.”(朝鮮總督府 1940e:828. 최유리 1997:86-87 재인용)고 하여 4대 슬로건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일본의 전시 국책 사업의 협력이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수행하면서 ‘국가총력전(國家總力戰)’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1941c:38, 최유리 1997:88 재인용) 즉 “각 개인의 정신력, 경제력을 모두 종합하여 그것을 황국의 대아(大我)에 바치는 것이 병참기지인 조선반도의 특수사명을 수행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國民精神總動員忠淸南道聯盟 1939a:63, 최유리 1997:88재인용) 그 사명을 위한 총력전은 조선인의 정신력을 총동원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시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최유리 1997:88)

셋째, 조직과 훈련을 통한 전시체제의 확립이다. 출범 초기부터 이 운동은 철저한 조직 체계를 갖고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인에게는 최소한의 자발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철저하게 행정력으로만 작동되고 있었다.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일상생활은 훈련을 통하여 전시화(戰時化)를 꾀하고자 하였고, 전 조선인(全朝鮮人)을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최유리 1997:90)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주요 목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협조를 얻어 반발과 반항을 없애기 위한 길들이기 운동이었다. 즉, 조선의 완전한 일본인화를 통한 황국신민화였던 것이다. 따라서 황국신민화란 “조선민족 2천5백만 전부가 국체본의를 투철히 하여 철저하게 황국신민적 수양연성(修養練成)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것”이며, 내선일체란 “선조대의 혈연적 연계성에 기반을 둔 필연적 그리고 발전적 환원을 의미한다.”는 사상이었다.(朝鮮總督府 1924, 정창석 2005:89) 결국, 이 운동의 목적과 이념은 조선연맹의 강령에서 언급했듯이 황국신민화를 통한 내선일체화인 것이

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실시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1938년 9월 22일에 결성된 조선연맹의 ‘실천 요목 21개 항목’¹⁹⁾에 잘 나타나있다.(國民總力朝鮮聯盟 1945, 최유리 1997:107재인용) 21개의 실천요목을 분석해 보면 두 분야로 뜻이 나누어진다. 그 하나가 내선일체화를 통한 ‘정신 교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 침략전쟁의 경제적인 측면을 뒷받침하는 ‘전시 협력 운동’인 것이다.

첫째, 내선일체를 위한 ‘정신 교화 운동’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각종 주간 행사와 기념행사의 실시이다.²⁰⁾ 이것은 조선연맹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그 행사들 중에서 1939년 2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계속되었던 ‘일본정신 발양정신’의 행사는 주간 행사의 계획과 각 행사마다의 참가 인원, 행사 실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國民精神總動員忠清南道聯盟 1939b:163-171, 최유리 1997:110재인용) 일본은 각종 행사들을 통해 일본 국체에 대한 일체감과 전쟁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다. 다음은 애국일의 실시이다. 애국일은 처음에 1939년 8월에 일본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 내에서 사용했던 명칭인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²¹⁾로 바꾸어 실시하였다.(朝鮮總督府 1940e:831. 최유리 1997:110 재인용) 또한 후술하겠지만 ‘근로보국대’를 조직하여 노동력을 동

19) 실천요목 : 매일아침 皇居遙拜/神社參拜勵行/祖先의 祭祀 勵行/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국기의 존중, 계양의勵行/국어생활의 勵行/비상시 국민생활 기준양식의 실행/국산품 애용/철저한 소비절약과 저금의 勵行/국채 응모 장려/ 생산의 증가 및 군수품의 공출/ 자원의 애호/ 근로보국대의 활약 강화/ 1일1시간 이상 근로 증가의 勵行/농산어촌 갱생5개년계획의 완전실행/전 가족 근로/응소 군인의 환송연,傷病兵의 위문/출정군인 및 순국자 영령에 묵도/유언비어조심, 간첩 경계/방공방첩예의 협력(최유리 1997:107).

20) 주간행사와 기념행사 : 국민정신총동원 강조주간/ 국민정신 총후보국 강조주간/ 국민정신총동원 저축보국 주간/ 국민정신총동원 경제전 강조주간/ 국민정신총동원 총후후원 강화주간/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주간/ 일본정신 발양주간/ 보은감사일/ 근로보국주간/ 육군 기념일/ 愛馬의 날/ 天長節/ 支那事變 기념일/ 張鼓峯事件 기념일/ 軍馬際/ 결핵예방 국민운동/(國民總力朝鮮聯盟a 1945:39-40쪽, 최유리 1997:108 재인용).

21) 흥아봉공일의 실시하였던 취지는 ‘전 국민으로 하여금 당일 특히 전장을 생각하고 자숙 자성하여 그것을 적확하게 실제생활에 구현하며 일일일심 흥아의 대업을 익찬함으로써 국력의 증강을 꾀하고 강력한 일본 건설에 매진하는 날로서 그것을 항구실천의 원천으로 한다.’는 것이다.(朝鮮總督府 1940c:147,최유리 1997:110 재인용)

원했던 것이 주목할 만하다. 애국일 행사 가운데 하나인 근로보국운동은 단순한 집회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강제 근로를 교묘히 삼입시켜 조선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있었다.(최유리 1997:111) 근로보국운동의 목표²²⁾가 조선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하는 의도였다. 이런 반복적인 노동력 동원은 전쟁 말기 조선인에 대한 징용과 징병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최유리 1997:113) 특히 학생들에게는 ‘학교근로보국대(學校勤勞報國隊)’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 노동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다.(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 1938b, 최유리 1997:113 재인용) 이렇게 노동을 통한 정신 교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운동의 특징이다.

둘째,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시 협력 운동’이다. 이것은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전시 협력 운동의 예로서 1939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일본과 동시에 실시되었던 ‘백억저축강조주간’이 있었다. 전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이 행사의 요지였던 것이다.(朝鮮總督府 1940d:163-164. 최유리 1997:114 재인용) 또 다른 예는 1938년 8월에 결정되어 전 조선인의 생활을 통제한 ‘비상시 생활 기준양식’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의·식·주의 간단화, 물자의 애용과 소비절약, 허례폐지, 안회제한(宴會制限), 절주절연의 습관양성, 시간존중, 정시여행(定時勵行), 근로보국운동의 함양, 저축의 여행(勵行)등이 있다.(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 1938a:39-42, 최유리 1997:114 재인용) 이런 규율은 조선인의 생활을 통제하고 침략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국가 총동원 체제의 확립을 강화하려는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 운동의 최대 목적이었던 사상 통제와 정신동원은 중일전쟁이 점차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조선에서 방관, 반전분위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이런 방관, 반전분위기는 일본에게 상당한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게 했다.(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1941b:500. 최유리 1997:119 재인용) 따라서

22) 근로보국운동의 목표 : 국가 관념의 함양, 내선일체의 심화/ 근로애호, 인고단련, 희생봉공 정신의 함양/ 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 체력의 증진/ 지방의 개발/ 비상시국민의식의 철저.(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 1938a:33, 최유리 1997:112 재인용).

이 운동으로는 식민지 정책과 전쟁의 총력전에 더 이상 동원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판단 하에 ‘국민총력운동’으로 바뀌면서 국가총동원체제는 조선민중에게 더욱더 압박으로 다가왔다.

(2) 국민총력운동에 의한 국가총동원

일본 내에서는 침략 전쟁 확대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정치 신체제 수립을 위한 군부의 움직임과 이에 호응하는 우익 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체제운동(新體制運動)’²³⁾이 일어났다. 이는 1940년 10월 12일 출범한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조직으로 나타났다.(최유리 1997:124)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는 국체론과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건설을 위한 파쇼적 정치 체제의 중심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기존의 모든 정당은 해산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국 일당적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 때까지 활동해 오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조직은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에 의해 편입되었다.(최유리 1997:124-125) 국민 통합이 아래로부터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헌병의 엄중한 감시 아래, 위로부터 천황제와 관료제의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木坂順一郎 1981:306. 최유리 1997:125 재인용) 일본은 자국의 이런 변화에 맞추어 조선에서도 신체제 확립을 위해 1940년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전환시키면서 ‘국민총력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그들이 내세운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규약 제2조 속에서 말해주고 있다.

본 연맹은 국체의 본의(本義)에 기초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며 각기 그 직역(職域)에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성을 받들어 협심육력(協心戮力)으로 국방 국가 체제의 완성, 동아 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國民總力朝鮮聯盟b 1945:84, 최유리 1997:126 재인용)

‘국민총력운동’은 정신동원의 내선일체 정신도 물론 중요시 하였지만, 이에

23) 신체제란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데, 고도국방국가란 “일군만민의 국체”에 기초하여 세계에 “八紘을 一字로 한 率國의 大精神”을 펼칠 수 있는 국가체제라는 것이다.(김영희 1996:196)

못지않게 ‘고도국방체제확립(高度國防體制確立)’이라는 목적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조선민중의 직접적인 참여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었다. 즉 이 운동은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²⁴⁾의 완성을 통해 당면한 과제인 중일전쟁의 빠른 종식과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여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에 비해 ‘국민총력운동’은 일본의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라는 일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라는 명칭에서 풍기는 정치운동의 인상을 피해 비정치적인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명칭 속에는 ‘국민정신총동원’에서 강조하였던 정신운동보다 더 한층 전쟁 협력 체제를 강력하고도 철저하게 만들려는 생각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도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한 정신 교화 운동과 전시 협력 운동이었다. ‘국민총력운동’의 구체적인 기본목표는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이라는 3대 실천대강(實踐大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첫째, 일본 정신의 앙양(昂揚)과 내선일체의 중심으로 ‘사상의 통일’을 기하고자 했다. 둘째, 직역봉공(職域奉公)의 철저와 생활 신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민총력훈련’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는 종전의 개인주의 생활양식을 전체주의 것으로 개편하기 위한 단체 훈련과 공동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생산력확충(生産力擴充)’으로 전시 경제의 추진, 증산의 완수가 요구되었다.(김영희 1996:204) 그 중에서 실천사항으로 강조하였던 ‘국민총력운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의 실시이다. ②상회(常會)의 철저한 실시이다.²⁵⁾ ③실천철저사항을 정하여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일본어 보급을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한 관제 운동이다. 확전으로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시 병력으

24) 高度國防國家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의 정신력과 국내의 물자 경제력을 모두 합쳐서 어느 때 어떠한 강적이 나타나도 곧 그에 대응하여 그를 격멸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말하는 것이다.(國民總力朝鮮聯盟 1941b:16, 최유리 1997:127재인용)

25) 常會의 순서 : 1.개회인사 2.국기경례 3.궁성요배 4.목도(出征將兵 武運長久기원 및 전몰장병의 영령에 감사목도) 5.府의 通達 및 報告 6.협외 간담 의논 7.講話(국민총력 조선연맹 실천요항을 중심으로) 8.황국신민서사 9.폐회 인사. (肥塚正太述, 1941/5:123-124. 최유리 1997:142재인용)

로 동원해야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린 일본은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 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宮田節子 1985:51)을 공포하여 강제 징병을 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으로선 군대의 명령어조차도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의 보급은 군인으로 동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구비시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실시되었던 것이다.

2.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의 전개

1) 1939년 이전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일본이 본격적으로 노동력 동원을 시작했던 기점을 1939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은 1939년 7월 28일 내무·후생성 두 차관의 통첩(通牒)으로 ‘조선인 노무자 내지이주(朝鮮人 勞務者 内地移住)에 관한 건(件)’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조선인의 노동력 강제동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1939년 7월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동 정책을 펼쳐왔는지 보는 것이다. 우선 조선인이 일본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도항조정책(渡航調定策)’을 들 수 있다. 1910년대 일본은 군대와 헌병을 앞세워 무단 정치로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약탈하였다. 당시 대부분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여 빈사 상태에 빠져있었다. 생활 기반이 해체되면서 많은 조선인은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서 고향을 버려야 하는 처지였었다. 남부지방인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갔고, 그리고 북부지방 사람들은 만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²⁶⁾ 이처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항하는 조선인들이 점점 늘어나자 ‘도항조정책’으로 노동 정책을 펼쳐왔다. 이때 일본에서는 독점 자본이 형성되어 가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노동력의 부족을 독점 자본이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으로 충당하려 했던 것이다. 즉 일본은 노동력 수급에 대한 완급 조절을 ‘도항조정책(渡航調定策)’으로 해온 셈이다.

1920년대에 일본은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劃)’을 전개하며 조선에 대한

26) 이 때 중국동북부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으로 약 180만 명에 이른다. (福岡安則 1993/12:23)

식량 수탈을 강요하는 가운데 조선인들의 도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독점자본은 조선인 이입(移入)에 의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고, 1922년 12월에 총독부령 제153호에 의해 ‘도항제한령(渡航制限令)’이 폐지되고 ‘자유도항제(自由渡航制)’가 공포되자 조선인의 도항자수는 연간 2~3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김민영 1995:35)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일본 내에서 실업 문제와 사회 문제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1924년 2월 ‘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건’을 발표하여 도항 저지를 강화하였고 1925년 10월에는 부산항에서 ‘도항저지제(渡航沮止制)’를 실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기관이 ‘부산 직업소개소’이다. 전국에서 도일을 원하는 조선인이 부산으로 모여들면서 조선총독부는 직원을 상주시켜 조선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도항 저지에 나섰다.²⁷⁾(이상의 2003:59)

1928년 7월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각도 경찰서에 ‘도항허가기준’이라는 통첩(通牒)을 발령하여 엄격한 단속을 하였다. 그런데 1929년 세계 공황이 더욱 심화되자 일본 기업의 조선 노동자 단체 모집은 제한되고 도항은 ‘재도항 증명서제’로 더욱 통제되었다.²⁸⁾ 그러나 1930년대²⁹⁾ 군부 파쇼 체제가 형성되면서 확대 전쟁에 따른 막대한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 1925년 이후 실시되어 왔던 ‘조선 노동자 이입제한 방침’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입 방침의 폐지와 ‘조선인 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이 발표되면서 ‘자유도항제’가 아닌 강제적인 인력 동원이 자행되기에 이르렀다.(김민영 1995:36-37)

조선 내에서 또 하나의 노동력 이동은 ‘지역간 노무수급 조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노동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조선과 만주를 그 지배 하에 두고 북중국과 내몽고까지 세력을

27) 삶의 터전을 잃고 먹고살아야하는 조선인들이 전국각지에서 모여들자 이 대일 도항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여 서북부지역의 노동력이 부족한 곳으로 분산배치하려는 일본의 의도적인 도항저지였다.

28) 도항에 대한 수속이 복잡해지자 조선인들은 1.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사용하거나 2.저금통장을 위조하거나 3.서류를 가짜로 만드는 등이 방법을 감행했다.(김인덕 1996:30)

29) 직업소개소는 1930년대에 들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사회사업적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노동력을 공급, 조절하는 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여 갔다.(朝鮮總督府遞信局 1934:60, 이상의 2003:60 재인용)

확장하고자 하였다.(宇恒一成日記 1970, 이상의 2003:65 재인용)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2년~1946년에 이르는 15년 간 계획으로 ‘북선개척사업계획(北鮮開拓事業計劃)’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30년대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북부지방 일대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산림자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군수 물자로 조달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교통망을 확장하여 군사 전략적 역할을 높이려는 의도였다.(이상의 2003:68) ‘북선개척(北鮮開拓)’의 내용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중화학 군수 공업을 통한 침략 전쟁의 원활한 수행이었다. 1937년에 중일전쟁 발발은 중화학 공업 위주의 육성을 위해 일본의 독점 자본인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등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에 군수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인적 자원인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부지방은 남부지방에 비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당시 북부지방의 노동력만으로는 북선계획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노동력을 충당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내의 노무수급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총독부는 ‘지역간 노무수급 조정책’을 발표하여 노동력을 조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1927년부터 노동자들의 기차, 기선요금을 할인해 주었고, 부산 직업소개소에는 상시적으로 직원들을 주재시켜 일본으로 도향하려는 자들을 북부지방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업자 간에도 노동자들을 확보하려고 유혈참사까지 일어날 정도였다.³⁰⁾ 결국 일본은 남부지방의 잉여 노동자와 실업자를 북부지방으로 대량으로 이동시키는 ‘지역간 노무수급 조정책’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1934년 한 해 동안 북부지방의 주요 공사장에서 일일평균 4만2,700명의 노동력이 필요로 했는데, 그 중에 1만3,60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각도의 사회 주사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력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나진, 장진강 수전(水電)공사 현장에 경상도의 노동자를 이송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남부지방의 노동력을 북부지방

30) 북부지방의 군수산업을 가동하기위해서 상대적으로 남아도는 남부지방의 인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朝鮮日報』 1933/12/22; 『西鮮日報』 1934/5/11; 『平壤毎日新聞』 1936/10/30; 『京城日報』 1939/8/1. 이상의 2003:68 재인용)

으로 이송시켰다. 또 각도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활용하여 ‘노동자이동소개사업’을 추진하였고, 남부지방의 이재민(罹災民)을 광부가 부족한 서북부지방의 탄광으로 이주시켰다.(朝鮮總督府遞信局 1935:314, 이상의 2003:60-70 재인용) 이와 같은 일이 매일 언론을 통해서 선전광고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혈안이 되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이런 현상이 관 알선(官斡旋)정책의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¹⁾

2) ‘국가총동원법’의 제정과 강제동원을 위한 제도적 준비

1918년에 국가 비상시에 모든 산업 구조를 군수공업으로 전환하고자 제정된 ‘군수공업동원법(軍需工業動員法)’³²⁾이 193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나아가 태평양전쟁의 확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본 군부는 인적·물적 자원을 전시 체제 하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동원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초법적인 법률을 만들어 강력한 통제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이런 맥락에서 ‘국가총력전체제’를 구축하였고 또한 ‘고도국방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1938년 4월 1일에 제정하게 되었다. 한 달 후인 1938년 5월 5일에는 식민지 조선에도 ‘국가총동원법(칙령 제31호)’를 시행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연계하여 총력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절박성이 있었다. 이 ‘국가총동원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적·물적 모든 자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동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었다.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에는 대부분 조항이 ‘칙령(勅令)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있다. 즉 이 칙령이라는 것은 당시 천황의 명령으로서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의회의 입법과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다. 또 전쟁 수행에 따른 즉각적인 일처리와 의회의 반대를 피할 수

31) ‘노동자 이동 소개사업’에 의해서 부산과 대구 직업소개소가 중심이 되어 북부지방으로 이동시킨 노동자는 1934년 4,418명, 1935년 1,076명, 1936년 2,810명, 1937년 1만1,956명 등 4년간 2만260명에 달하고 있다.(朝鮮總督府內務局 1939:28-34, 이상의 2003:64 재인용)

32) 국가총동원법의 전초전의 성격을 갖은 것으로서 1918년에 제정된 법률이고 전시체제에 대비하여 모든 산업을 군수공업으로 전환하여 총력전을 만들고자 하였다.(小林英夫 1989:15-20, 이상의 2003:115 재인용)

있는 강력한 법률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모든 분야의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작용하였다.(이상의 2003:116) 다음 아래의 <표 1>에서 제시하는 것을 참조해 보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노동력 통제가 얼마나 많은 법률과 칙령이 공포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통제관련 칙령(조선적용)

법령	제정·공포	시행 일시	분 류	비고
국가총동원법	1938.4.1	1938.5.5	인적·물적 자원통제	법률
공장사업장관리령	1938.5		사업통제	
의료관계자직업신고령	1938.8.23	1938.9.21	노동력실태파악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1938.8.23	1938.9.8	노동력 통제	
군수품공장사업장검사령	1938.10		사업통제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일명 국민등록제)	1939.1.7	1939.6.1	노동력 실태파악	칙령
선원직업능력신고령	1939.1.28	1939.3.2	노동력 실태파악	
수의사직업능력신고령		1939.3.3	노동력 실태파악	
종업자고입제한령	1939.4	1939.8.1	노동력 통제	
공장취업시간제한령	1939.3	1939.8.1	노동력 통제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	1939.3	1939.8	노동력 통제	
회사이익배당급자금유통령	1939.4.1		자금 통제	
회사직원급여임시조치령	1939.1.10		노동력 통제	
국민징용령	1939.7		노동력 이동	
임금임시조치령	1939.10		노동력 통제	
전력조정령	1939.10		물자 통제	
소작령통제령	1939.10		물자 통제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1939.12		물자 통제	
토지공작물관리사용수용령	1939.12		물자 통제	
청소년고입제한령	1940.1.31	1940.9.1	노동력 통제	칙령
직업소개령	1940.1		노동력 통제	
육운통제령	1940.2		사업통제	
해운통제령	1940.2		사업통제	
임금통제령	1940.10		노동력 통제	
선원징용령	1940.10		노동력 이동	

지대가입통제령	1940.10		물자 통제	
은행등자금운용령	1940.10		자금 통제	
회사경리통제령	1940.10		자금 통제	
종업자이동방지령	1940.11	1940.12.5	노동력 통제	
임시농지가격통제령	1941.1		물자 통제	
신문지등게제제한령	1941.1		문화 통제	
노동기술통계조사령	1941.4.1		노동력 실태파악	칙령
임시농지등관리령	1941.2		물자 통제	
생활필수물자통제령	1941.4		물자 통제	
무역통제령	1941.5		사업 통제	
배전통제령	1941.8		물자 통제	
금속회수령	1941.8		물자 통제	
중요산업단체령	1941.8		사업 통제	
가격등통제령	1941.10		물자 통제	
청장년국민등록제	1941.10.15		노동력 실태파악	
국민직업능력신고령(개정)	1941.10.15		노동력 실태파악	
노무조정령	1941.12.6	1942.1.10	노동력 통제	
물자통제령	1941.12		물자 통제	
농업생산통제령	1941.12		물자 통제	
기업허가통제령	1941.12		사업 통제	
중요사업장노무관리령	1942.2		노동력 통제	
전시해운관리령	1942.3		사업 통제	
기업조정령	1942.3		사업 통제	
금융통제단체령	1942.3		사업 통제	
국민 직업능력신고령(재개정)	1944		노동력 실태파악	
국민등록제	1944		노동력 실태파악	

자료 : 정혜경, 2003:386~387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사료연구, 서울:景仁文化社.

위<표 1>에서도 나타나있듯이 ‘국가총동원법’ 안에는 인적 자원 동원을 위해서 징용, 일반인 동원, 노동력 통제, 노동 쟁의 통제, 노동력 등록, 기능자 양성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근거해서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노동자의 배치, 취업시간, 임금 등 노동의 전반적인 것에 개입하여 강

행해 나갔던 것이다.(이상의 2003:119)

‘국가총동원법’은 식민지 조선의 노동력과 노동정책에 어떤 규정을 정(定)하여 통제해 왔는지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에서는 징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배치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제5조에서는 일본이 다양한 형태로 강제 동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 강제동원의 여러 동원유형에 빠져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원하려는 규정이다. 이것은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의 형식으로 노동할 능력이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였다. 1938년에 ‘학도근로보국대실시요강(學徒勤勞報國隊實施要綱)’의 발표를 기점으로 1941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國民勤勞報國協力令)’, 그리고 1944년 8월에 ‘학도근로령(學徒勤勞令)’과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을 칙령으로 발표하게 되었다.(이상의 2003:119)

제6조에서는 노동력 동원에 있어서 각종 노동 강화와 이동에 언급하고 있다. 대륙병참기지화에 따른 군수 공업의 팽창으로 일본으로부터 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어가는 상황에서 조선으로의 유입이 격감되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은 숙련 노동자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1938년 8월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學校卒業者使用制限令)’을 공포하여 기술자 확보에 나섰고, 1939년 6월에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을 공포하여 ‘국민직업능력등록제도(國民職業能力登錄制度)’를 실시하였고, 군수 산업에서 인력 이동을 막기 위해서 ‘종업자고입제한령(從業者雇入制限令)’,³³⁾ ‘청소년고입제한령(靑少年雇入制限令)’³⁴⁾을 차례로 시행하였다. 그

33) 종업자고입제한령은 대상 나이가 16세~50세 미만 남자로서 3월 이상 조선총독이 지정한 직업에 종사한 現業者. 고용 종료 후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졸업자는 1년, 기타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前歷者, 계속해서 3월 이상 공장사업장의 기능자 양성공인 양성공 現業者 또는 그 만둔 후 6월을 경과하지 않는 양성공 前歷者이다.(京城日報 1939/8/1. 이상의 2003:122재인용)

34) 청소년고입제한령은 만12세~30세 미만의 남자로서 1940년7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청소년수가 7할 이하일 경우 7월에 달할 때까지만 고입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비해 조선총독이 지정한 공·광업 등의 사업에서는 이들 청소년을 인원에 제한 없이 자유로이 고입하게 한 것이다.(이상의 2003:122)

후 노동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자이동방지령(從業者移動防止令)³⁵⁾’을 시행하여 노동자 이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각종 법령을 공포하고 시행하여도 노동력 이탈방지는 막지 못하였다. 1939년 8월에는 ‘공장취업시간제한령(工場就業時間制限令)’과 ‘임금통제령(賃金統制令)’을 통해 중일전쟁 이후 군수 물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무 강화로 취업 시간이 무제한 연장되고 공장과 광산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미경험 노동자의 초급 임금도 억제하였다.(이상의 2003:125)

제7조에서는 노동쟁의 금지 조항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력 저하를 방지하려는 구상으로 노동 운동을 철저히 막고자하는 일본의 의도가 들어있다.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많은 법률을 칙령으로 제정하며 노동력 강화를 도모했던 것은 노동 운동에 의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고 침략 전쟁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제21조에서는 1939년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³⁶⁾’을 공포하여 국민 등록제로 전환 실시함으로써 기술자와 젊은 노동자를 강제동원하여 군수 산업과 생산력 확충 산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제22조에서는 숙련 노동자의 이입 급감으로 인해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939년 4월에는 ‘학교기능자양성령(學校技能者養成令)’과 6월에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工場事業場技能者養成令)’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각 사업장과 회사에 의무적으로 부담시켜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려 하였다.(이상의 2003:125)

이런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대부분의 법령은 1945년 3월 ‘학도근로령(學徒勤勞令)’을 제외하고 ‘국민근로동원령(國民勤勞動員令)’으로 통합되어 더

35) 종업자이동방지령에 대해서 당시 내무국장 大竹十郎은 “노무자원의 감소에 따라 종업자고임제한령 외의 일반직공, 광부 등에서도 이동이 두드러지고, 기능을 가진 노무자의 이동방법이 한층 교묘해져, 근본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종업자이동방지령을 제정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樋口雄一 2000:346-365, 이상의 2003:123 재인용)

36) 국민직업능력신고령(제2조)은 16세 이상 50세 미만자로서 계속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위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그만둔 지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지정학과를 마친 자,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능자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합격자, 면허취득자,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정혜경 2003:17)

욱 강도높은 동원 체제를 만들었다. 더구나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본 뿐만 아니라 조선에게까지 “국민으로 하여금 총을 잡지 않는 자는 총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억압하였고, 이는 조선을 고통과 희생으로 휘몰아갔던 것이다.

3) 노동정책의 강화와 전개

전시체제 하에서 병력과 전투력을 뒷받침하고 군수품 조달을 생산하는 노동력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전기호 2000) 이런 노동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일본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노동력과 관계된 법적·행정적 준비를 갖추고 양적·질적인 면에서 최대한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도 속에는 노동 전담 부서와 기구 개편을 하고 강제동원을 목적으로 조선에서 철저한 노무 관리와 노동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노동력 동원 업무를 맡고 있었던 노동 정책 전담 부서와 노동력 동원을 위한 민간 전담 기구의 구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본은 대륙 침략 전쟁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의회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받을 묶었다. 이는 군부가 직속 행정 기구를 통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려는 계획이었다. 노동력 동원 정책도 행정 기구를 통해서 일관되게 수행하는 형태였다. 1938년 11월 조선총독부는 경무국 학무과에 경제경찰계를 설치하였고, 각 도에는 보안과에 경제경찰계를 두었다. 이후에 1940년 2월 조선총독부는 경무국 내에 경제경찰과로 승격하여 노동력 확보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들 경제경찰은 중일전쟁 이전에도 노동쟁의 단속, 도향, 도주, 부정 모집 단속 등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서 관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전시통제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제경찰의 임무는 더욱 늘어났었다. 기존의 임무 외에도 지원병 제도, 방공 경비, 금 밀수 단속, 외칩 단속 등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경찰 조직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구나 ‘물자동원계획(物資動員計劃)’이 수립되어 경제경찰의 필요성은 커져갔고, 주요 단속이 물가 단속과 각종 경제 통제, 경제 정보의

수집, 민심 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각종 법령이 차례차례 공포하면서 경제경찰의 단속 대상은 광범하고 복잡다기해져만 갔다.(이상의 2003:128) 특히 노동자 이동 방지의 업무는 강제징용자, 알선노동자, 근로보국대원들의 취로 기피나 전·퇴직, 탈주 등 노동자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또 ‘노동통제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략 생산 증강에 지장을 주는 사범이라 하여 단속을 강화하였고, 임금 인상억제를 통해서 군수 산업 부문의 노동력을 충족시키고, 또 사업장의 협력 요청에도 적극 개입하기도 하였다.(朝鮮勞務4(3)1944:2-3. 이상의 2003:129재인용)

그리고 노무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 기구의 개편 과정은 조선에서 노무 전담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이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통합 관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1939년 2월 7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7호에 의해 내무국 사회과 노무계로 출발을 하였다. 행정 부서가 본격적으로 전면에서 나서서 노동 문제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 1941년 3월 13일 훈령 제23호로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노무과로 승격 설치되고 나서부터였다. 노무과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노동력 정책을 집행하면서 국민직업능력신고령³⁷⁾, 공장취업시간제한령, 국민징용령, 임금임시조치령, 청소년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의 법령을 운용하였다. 또한 주요 업무도 ‘노무동원계획’의 실시에 의한 노동력 충족, ‘조선직업소개령(朝鮮職業紹介令)’에 의한 노동력 배치의 규제 혹은 희생 산업, 노동자의 전직알선(轉職斡旋) 등 노무과의 활동은 노동 전담 업무로 전환되었다. 태평양전쟁이 가열되어 감에 따라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 동원을 위한 노무과의 노동 통제는 법적, 행정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이다. 다음 <표 2>의 사회과와 노무과의 담당 업무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듯이 노무과로 승격되기 전의 사회과와 노무과로 승격된 후의 담당 업무 성격은 너무나 뚜렷하게 대별되어진다.

<표 2> 노무과와 사회과의 주요 관장 업무 내용

37) 1939년1월7일에 공포되어 한반도에는 6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시 1941년10월15일에 개정되고 1944년에 재개정되어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정혜경 2003:17)

노무과 관장 업무	사회과 관장 업무
1.직업소개 기타 노무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2.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노동력의 보지(保持)증강에 관한 업무 4.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노동보호에 관한 사항 6.국민직업능력의 등록 및 국민징용에 관한 사항 7.기타 노무에 관한 사항	1.구호 및 구료에 관한 사항 2.이재구조에 관한 사항 3.사회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4.주택에 관한 사항 5.군사보호에 관한 사항 6.재생원 및 감화원에 관한 사항 7.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자료 : 정혜경 2003:80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사료연구, 서울:景仁文化社.

노무과는 다시 1941년 11월 19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03호에 의해 내무국에서 후생국으로 배속되었다. 노무과는 이듬해인 1942년 11월 1일에 다시 지방과, 외사과, 사회과, 토목과와 함께 사정국으로 이속되었다. 이렇게 이속하면서 위<표 2>에 나타나있는 노무과 관장 업무에서 ‘기술자의 할당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긴박한 시국 변화에 노동력 동원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였고, 지방 행정 사무와 노동력 동원 문제를 일체화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이런 기구 개편의 변화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시 체제에서 노동력 확보와 처리 문제가 그 만큼 중요했던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43년 12월 총독부는 전면적인 행정 개혁을 단행하여 사정국에 소속되어 있던 노무과를 다시 신설된 광공국으로 옮겼다. 광공국은 군수 물자 생산 증강을 위한 ‘물자동원계획’과 기획, 생산 관련 사무를 통합하고 여기에 노무, 토목 등의 사무를 더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게 총동원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1944년 10월 15일에는 총독부 훈령 제89호에 따라 노동 업무를 더욱 세분화해서 노무과를 폐지하고 근로조정과, 근로동원과, 근로지도과로 체제 정비를 갖추었다.(정혜경 2003:56) 그 중 근로조정과가 담당했던 것은 ‘국민동원계획’과 ‘기능자동원계획’, 국민과 기능자등록과 과학기술자 부조 및

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근로동원과(勤勞動員課)에서는 노동력 동원 사무와 훈련, 노동자 등록 업무를 관장하였다. 근로지도과에서는 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급여·후생시설, 노동자의 부조와 원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의 흐름에 따라 노동 행정 기구를 계속적으로 개편하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갔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간 기구의 성격이 가미된 노동 통제 기구를 살펴보겠다. 비록 형식은 민간 기구의 성격이었지만 일본 군부와 행정 기구의 강력한 뒷받침과 후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먼저 ‘직업소개소(職業紹介所)’는 1913년 ‘경성구호회’가 석방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세운 것이 효시가 되어 1920년 이래 점차 주요도시에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이상의 2003:59) 주로 일용노동자의 노동력 수급을 담당해 오던 ‘직업소개소’는 전시 체제 하에 노동자를 이동·배치하는 행정의 말단 기관이 되어 노동력 강제동원의 실질적인 추진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0년에 기존의 직업소개소는 총독부 관할 국영으로 바꾸고 ‘조선직업소개령(朝鮮職業紹介令)’을 발표한 후 각도마다 1개소씩 설치해 나갔다.(勞務關係法令集 1944:273-274; 毎日新報 1939/12/15; 이상의 2003:130-131재인용). 1940년 1월 ‘조선직업소개령’은 공포되면서 노무자 모집 규정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부영(府營)직업소개소’로 운영되던 경성, 대구, 부산, 평양 등 6개 도시의 직업소개소는 총독부 소속으로 바뀌어 ‘국영(國營)’으로 운영하였다. 이어서 직업소개소는 대전, 광주, 청진 등에 ‘국영직업소개소’를 신설하고 이듬해도 신의주, 함흥 등 7개소에 직업소개소를 신설 혹은 이관하였다.(毎日新報 1940/12/5) ‘국영직업소개소’의 설치 이유를 보면 ‘군수노무 및 생산력 확충에 필요한 노무의 충족, 물자 통제에 의한 이산자의 취직, 귀환 혹은 상이군인의 직업 알선 등 노무의 적정한 배치’를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가 조선총독부의 소속 하에 움직였다는 것은 조선인 노동력 동원의 중심 기구로 변질되어 갔다는 증거인 것이다.

당시 민간기구 단체는 노동력 동원 과정에서 행정 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의 단체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조선총독부 산하 기구의 하나와 같은 관변 단체를 의미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와 ‘조선토목건축협회(朝鮮土木建築協會)’이다. 조선총독부 노무과 내에 설립한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는 노동력 수급과 노동력의 유지, 증강에 관한 사업의 수행, 발전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조선노무협회는 설립 성격과는 달리 보조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노동력 동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단체로 바뀌어 버렸다.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의 구성은 회장을 정무총감으로 부회장을 내무, 경무국장으로 하고, 그 하부조직도 조선총독부내의 각 구성원들이 요직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는 조선총독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전국적인 방대한 조직 기관이었다. 또한 그 본부는 조선총독부에 두고 각 도청에는 지부를 두었고, 각 군에는 분회를 두어 노무 자원의 확보와 노동자의 알선과 모집 협력을 주 사업으로 하는 조선인 노동자 공출기관이었다. 또한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의 활동 목적과 범주는 회칙에 나타나 있다. ① 노무자의 교양훈련에 관한 사항. ②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보급선전. ③ 노무자원의 개척. ④ 노무관리의 지도, ⑤ 노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지도, ⑥ 관청 및 기관과의 연락. ⑦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른 중견 노동자의 연성(鍊成)³⁸⁾, 노무 관리의 지도, 노동자 공출에 관한 협력, 노동사정과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직접적인 노동행정을 담당하였다. 또한 근로의 ‘신 정신(新精神)’을 확립하고 보편화하는 것과 노자일체의 풍조를 만들며 조선의 노동력을 조직 훈련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 임무로 되어있었다.(朝鮮勞務1(1) 1941/10:1, 이상의 2003:135재인용)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적용한 이후 민간단체를 이용한 노동력 동원 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즉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노동정책도 단순하고 응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전시 체제에 들어오면서 끊임없는 노동력

38) 연성이라는 말은 원래 1935년11월 일본문부성에서 ‘교학쇄신(敎學刷新)’을 목표로 창출한 조어였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1년3월 ‘국민학교령’에서 규정된 이수 패전 때까지 줄곧 전시하 교육의 최고 목표로 쓰여졌다. 이 말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총력전체제’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인간형’을 양성하기 위해 강조되었다.(寺崎昌男 1987:2-20, 변은진 2002:37재인용)

공급을 전제로 노동력 동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노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정비도 완료하고, 노동 행정기구도 정비하여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된 변질된 관변단체들이 등장하여 노동력 동원에 적극 활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국민등록제(國民登錄制)’를 통해 인력 동원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에 의해 실행된 노동 조사 정책이었다. 여기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신고하는 ‘국민등록(國民登錄)’과 기능이 없는 사람이 등록하는 ‘청장년등록(靑長年登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이상의 2003:143) ‘국민등록(國民登錄)’은 1939년 6월 1일 16세~50세 미만의 남자 중에서 137종의 기술·기능을 가진 자가 등록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기능자를 군수산업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사람도 있었고³⁹⁾ 위의<표1>에서 보았던 것처럼 법률 개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등록법률이 변형되어 갔다.

조선의 기술자 훈련 양성에서는 여러 특징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군수 산업의 확대와 기술자 수요 증대, 대량의 병력동원으로 일본인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여 군수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은 조선인 미숙련 노무자에게 양성훈련을 시켜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하려고 했다. 그래서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工場事業場技能者養成令)’을 공포하여 공장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1941년 5월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실행규칙’을 공포하여 1941년 8월 10일 조선의 노동자와 기술자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⁴⁰⁾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진행된

39)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서 제외된 자 1. 육해군 군인으로 현역중인 자(귀휴하사관병은 제외) 및 전시 혹은 사변에 임하여 또는 병역법 제55조 2항의 규정(지원에 의해 병역에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칙령의 규정을 포함)에 의해 소집 중인 자. 2. 병적에 편입된 육해군 학생생도(해군 예비 연습생 및 해군 예비 보습생 포함) 3. 육해군 군속. 4. 국가총동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징용중인 자. 5.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령에 의해 신고해야하는 자. 6. 수의사법에 의해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은 수의사. 7. 조선선원령의 선원. (김성례 외 1995:9)

40) 1924년 제1회 조사를 시행한 후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면서 점차 노동사정 전반에 걸친 통계조사로 대상의 범위를 넓혀갔다. 일본에서의 초기의 실시목적은 제1차 대전 후의 불경기에 따른 실업대책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료를 얻는데 있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이 조사의 목적은 노동력의 동원계획과 노동자의 배치, 임금의 표준을 정할 때에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 노동 자료와 마찬가지로 극비로 취급하였다. 이 통계 조사표에는 사업표, 노무표, 기술표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었다. 이런 다양한 노동력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농촌과 도시의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모든 노동력의 분포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능력, 동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행정 기관의 직원을 총동원해서 노동력을 조사·등록하였고, 이것은 나중에 강제징용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다.(이상의 2003:148)

3.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환

조선인의 노동력 강제동원 전환 과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다. 군수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은 강제동원 이전까지는 필요 노동력을 농촌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것이다. 숙련 광부가 징집되거나 군수 산업으로 이동하고 난 뒤 그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탄광으로서의 큰 문제였다. 이런 노동력 조달 문제를 타개하고자 탄광협회에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노무과 직원을 증원하여 농촌지방으로 직접 파견해서 노동자를 모집한다든가 광부 모집 포스터를 붙이거나 좌담회와 영사회를 개최하여 권유했지만 탄광의 위험성과 도시 공장의 높은 임금 때문에 인원 확보 모집은 어려웠다. 둘째, 농촌 출신 광부를 일시 귀향시켜 연고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려 했지만 빈번히 발생한 탄광사고로 탄광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오게 하여 성과가 없었다.(林えいだい 1982:75-76) 당시 탄광으로 오는 사람보다 탄광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인 석탄수요를 맞추지 못해 군수산업은 큰 차질이 생겼다. 이런 현안 문제를 타개해보려고 일본의 ‘치쿠호 석탄광업회’에서는 1937년 8월 9일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노동자 부족 대책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①광부노역 부조규칙(扶助

자금지족경제의 확립이 시급해지면서 일본은 노동력의 소재를 파악하고 동원의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지역으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渡邊肆郎 1942/6:44-48, 이상의 2003:146재인용)

規則)의 적용 완화, ②조선인 노동자의 유치, ③일본 본토 노동력의 유치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것을 시발로 일본의 탄광협회인 ‘석탄광업연합회’, ‘전국 산업단체연합회’, ‘광산 간담회’ 등 3단체가 연합으로 노동력 보충 대책수립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3단체 연합은 필요 노동자에 대한 광부 부족율을 대(大)탄광에서는 10%, 중(中)탄광에서 20%, 소(小)탄광에서 26%로서 노동력 부족문제로 인해서 탄광의 존폐가 걸려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석탄광업연합회’는 결정적인 노동력 보충 대책으로서 1937년 9월 “탄광 종사자 보충 증원에 관한 진정서”를 상공대신에게 제출했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석탄 광업이 지상 노동과 비교하여 종사자 유치 상심히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양찰하시고 비상 시국중이나 특별히 매년 상당 인원의 조선인 도입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林えいだい 1982:78)라고 하며 조선인 대량 이입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마침내 조선인 집단적인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침략 전쟁으로 인한 군수 산업의 확장은 노동력 급증과 부족이라는 현상을 보임으로서 조선인 노동력 일본 이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각의 안에서는 의견이 나뉘었고, 조선인을 집단으로 이입할 경우 일본의 치안 문제와 전쟁 종료 후의 실업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내무성과 후생성은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척무성(拓務省)은 적극적이었다. 당시 일본 내의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치안 문제는 제일조선인 통제기구였던 협화회(協和會)⁴¹⁾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해결하기로 의견을 일치시켰다.(한혜인 2003/6:72)

조선총독부는 제1차 ‘노무동원계획’에 의해서 필요 노동력을 109만5천명으로 책정하고 113만9천명을 할당 계획하였다. 드디어 내무·후생 두 차관의 명의로 통첩을 내어 조선에서 석탄업자, 금속업자, 토건업자들에게 처음으로 조선인 노무자를 집단으로 동원할 것을 인가하였다. 동원 방법은 모집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사실상은 행정 기관이 강제동원 형식으로 조선인

41) 일본 전시체제기에 제일조선인들의 강력한 통제조직이었던 협화회에 관한 사항은 桶口雄一, 1992. 『戰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高麗書林, 을 참조 할 것.

노동력을 도입한 것이다. 탄광, 토목공사에서 부족 노동자수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처음 일차적으로 일본에 도입된 노동력은 85,000명이 할당되었다.(김민영 1995:45) 이것은 1939년 7월 이전까지의 개별적 모집과는 전혀 다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진 노동력 동원이라는 점에서 노동 정책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각 고용주가 조선 총독에게 노동자 모집을 허가받음으로서 가능하게 된 형식이었다.(김민영 1995:45) 일본은 전시 하 총동원체제에서 조선 노동력을 일본으로 끊임없이 지속 공급하는 정책의 기조아래 1941년 9월에는 각료회의에서 ‘1941년도 노무동원실시 계획요강’을 통해 중요 군수산업에 노동력의 중점 배치라는 종래 목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민개로를 위해 노동력이 있는 모든 조선인을 총동원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1942년부터는 ‘노무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의 명칭을 ‘국민동원계획(國民動員計劃)’으로 바꾸고 그 규모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河棕文 1996, 이상의 2003:177재인용)

193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대부분은 일본 지역으로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 3>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3> 일본, 사할린, 남양(南洋) 이입 조선인 노동자 도향 상황 (단위 : 명)

연 도	지 역	동 원 계획수	도 향 수					도향 비율
			석 탄	금 속	토 건	공장기타	계	
1939	일본	85,000	32,081	5,597	12,141		49,819	58.6
	사할린		2,578	190	533		3,301	
	남양					560	560	
	계	85,000	34,659	5,787	12,674	560	53,680	63.2
1940	일본	88,800	36,865	9,081	7,955	2,078	55,979	63.0
	사할린	8,500	1,311		1,294		2,605	30.6
	남양					1,023	1,023	
	계	97,300	38,176	9,081	9,249	3,101	59,607	61.3
1941	일본	81,000	39,019	9,416	10,314	5,117	63,866	78.8
	사할린	1,200	800		651		1,451	120
	남양	17,800				7,908	7,908	44.4
	계	100,000	39,819	9,416	10,965	13,025	73,225	73.2
1942	일본	120,000	74,098	7,632	16,969	13,124	111,823	93.2

	사할린	6,500	3,985		1,960		5,945	91.5
	남양	3,500				2,083	2,083	59.5
	계	130,000	78,083	7,632	18,929	15,207	11,9851	92.2
1943	일본	150,000	66,535	13,763	30,639	13,353	124,290	82.9
	사할린	3,300	1,835		976		2,811	85.2
	남양	1,700				1,253	1,253	73.7
	계	155,000	68,370	13,763	31,611	14,606	128,354	82.8
1944	일본	390,000	71,550	15,920	51,650	89,200	228,320	78.7
	사할린							
	남양							
	계	390,000	71,550	15,920	51,650	89,200	228,320	78.7
총계	일본	814,800	320,148	61,409	129,668	122,872	634,097	77.8
	사할린	19,500	10,509	190	5,414		16,113	82.6
	남양	23,000				12,827	12,827	55.8
	계	957,300	330,657	61,599	135,082	135,699	663,037	69.2

자료)近藤劔一編.『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朝鮮史料編纂會,1961,153~154

쪽;近藤劔一編.「最近の於ける朝鮮の勞務事情」.『太平洋戰下の朝鮮(5)』,友邦協會,1964,167~169쪽;「内地要望朝鮮人勞務者ノ供出ニ關スル情況」.『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民族問題研究所 編)15.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2000d. 264~265쪽.(이상의 2003:179 재인용)

위<표 3>에서 보듯이 동원된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대대적인 집단 이주 첫해인 1939년에는 8만5천명을 계획하였으나 5만3천명만이 동원되었고, 1944년에는 22만8,320명에 달하였고, 이 후로 10만 명을 추가로 더 요구하였다. 1939년~44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95만 여명을 동원할 계획이었는데, 그 중 총 66만 여명이 동원되었고, 그 대부분은 일본으로서 63만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반수 이상은 탄광으로 동원되었고 약20%는 토건부문, 20%는 공장·기타부문에 동원되었고, 나머지10%는 금속부문에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였다.(民族問題研究所15 2000d:264-265. 이상의 2003:178재인용)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처음 동원계획 인원내 동원 인원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이 조선인들의 동원 기피로 인해서 처음 계획 인원의 69%에 불과한 인원만 동원되었다. 즉 ‘노무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에 조선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빚어진 현상인 것이다.(이상의 2003:178)

4. 소결

이상과 같이 일본이 조선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의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을 수립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자국의 경제 공황을 침략 전쟁으로 극복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조선을 ‘병참기지(兵站基地)’로 설정하고 ‘전시통제경제체제(戰時統制經濟體制)’로 전환하여 대륙 침략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신동원정책은 침략 전쟁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정신 사상을 통제하였다. 즉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하며 내선일체를 통한 황국신민화가 강조된 것이다.

두 번째의 노동력 강제동원을 위해 다양한 기구와 제도 및 법령을 제정하며 노동정책이 전개된 것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노동력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다양한 노동정책 법안이 만들어져서 노동력 동원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발령하여 노동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 ‘노동자이동방지령(勞働者移動防止令)’을 내렸던 것도 노동정책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처럼 패전 때까지 조선의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을 보아가면서 다양하게 노동력 통제를 위해 법률과 제도가 제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민간단체인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나 ‘직업소개소(職業紹介所)’를 비롯한 관변 단체가 조선총독부와 밀접한 연계 속에서 노동력 강제동원을 자행하였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의 노동력 강제동원으로 전면 전환하게 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중일전쟁으로 노동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에 원인이 있었다. 당시 군수 산업 사업주들은 전쟁 노동력 수요를 조선에서 공급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부응해 조선총독부는 ‘노무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을 세워 1939년 7월을 기점으로 노동력 강제동원으로 전면 전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Ⅲ.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개과정과 유형

이 장에서는 일본이 노동력을 강제동원하는 전개과정과 동원규모, 그리고 여러 동원유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력 강제동원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동원형태가 변형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동원숫자가 밝혀지지 않는 동원규모와 동원현황을 파악해 본다. 셋째, 조선 내의 동원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넷째, 조선외의 동원은 어떤 형태로 동원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강제동원의 시기적 단계구분과 동원규모

일본은 노동력을 동원해가는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 모집단계, 관 알선단계, 징용단계 등으로 구분해서 동원하였다. 그러나 세 단계 모두 관이 앞장서서 노동력을 강제 수탈하였던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정혜경 2003:19)

① 1단계(모집방식 : 1939년9월~1942년1월),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한 노동력 강제동원 방식은 1939년 7월 28일 내무성·후생성의 두 차관 통첩(通牒)으로 시작되었다. 그 관계 법령을 보면 ‘조선인 노무자 모집요강’, ‘조선인 노무자 이주에 관한 사무취급수속’, ‘조선직업소개령(朝鮮職業紹介令)’등이다. 특히 9월 1일에 발효된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향취체요강’에 의하면 전 시 산업과 관계가 있는 사업주는 특히 석탄, 광산, 토건이었고, 당시 군수 산업주는 일본의 본국에서 고용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총독부가 지정해 주는 지역에 가서 모집 책임자의 책임 아래 노동자를 모집하고 신체검사, 신원조사, 명부작성을 하여 고용주나 고용 대리자가 인솔하여 집단적으로 노동 현장까지 이동하는 방식이었다.(정혜경 2003:19) 모집지역은 주로 남부 지역에 한정되어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조선 남부의 7개도가 주요 지역이었다.(김인덕 2002:29)

② 2단계(관 알선방식 : 1942년2월~1944년8월), 관 알선방식은 1942년 2월 13일 각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근거 법령이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정책’, ‘조선인 내지 이주 알선 요강’을 근거로 한다.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고 조선노무협회가 앞장서서 사업주로부터 알선 신청서를 받아 각도에 통보하면 각도는 부·읍·면에 할당하여 노무자를 확보하는 형식이었다. 노동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군대식으로 1조를 5명으로 구성하고 4조를 1반으로 5반 내외를 1대로 구성하였고, 대장과 간부를 정하여 도주자 없이 완벽하게 이동시키고자 하였다.(정혜경 2003:20) 그러나 계획했던 것보다 동원이 못 미치자 대상 연령을 20~35세에서 13~15세와 50세까지 동원이 확대되기도 하였다.(김인덕 2002:29) 관 알선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도 모집방식의 문제점⁴²⁾을 보완하고 노동력 수급 조절을 강력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또 관 알선에 의한 동원지역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뺀 조선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③ 3단계(강제징용 : 1944년9월~1945년8월), 강제징용은 패전이 가까이 오자 조선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노동력 동원을 자행했던 시기이다. 1943년 말까지 40만 여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동원되어 갔으나 일본이 요구하는 수요량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성이 동반된 상황 아래⁴³⁾ 조선에서도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과 1944년 9월부터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에 근거하여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은 원래 1939년 7월에 각의에서 결정되어 공포되었다. 그해 10월 1일에는 조선에서도 공포하였지만 전면 적용은 조선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보류하고 있었다. 전쟁 말기에 오면서 병력과 노동력은 일본 본국과 식민지 전체를 상대로 동원하여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패전 위기에까지 몰리면서 다른 여건을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강제징용이 발동되기에 이르렀다.(이상의 2003:224)

42) 모집방식에서 발생한 노동력수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였고, 모집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주가 경쟁적으로 모집함에 따라 모집상의 여러 폐해를 낳았고, 노동력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정혜경 2003:20)

43) 강제징용으로 소집을 받은 자가 연행을 거부하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징용기간은 1년은 이었으나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기간연장이 된 것이 일반적이었다.(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 분과 2005:19)

이런 단계적인 동원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력을 수탈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것은 1939~1945년까지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의 방식이 때에 따라 혼용되면서 노동력을 동원해 갔던 것이다.(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2005:19) 더욱이 전쟁 말기에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조선인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동원되었고, 동원형식과 방법도 모집, 관 알선, 징용 외에 다양하게 동원하였다. 또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라는 형식으로 ‘학도근로대(學徒勤勞隊)’, ‘가정근로보국대’, ‘도청근로보국대’ 등의 이름으로 조선내로 동원⁴⁴⁾되었고, ‘여자근로정신대’, ‘여성종군간호부’, ‘조선농업보국청년대’, ‘남양군도 농업 이민 형식’으로 조선 외로 동원해 갔던 것이다.(정혜경 2003:22)

그러면 일본에 의해 자행된 노동력 강제동원 인원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노동력 동원은 크게 조선 내·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조선 밖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은 일본 지역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 만주, 남양 군도, 남방 지역으로 강제 동원되어 갔다. 조선 내의 동원은 ‘근로보국대’의 형태로 전국에 걸쳐서 자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강제동원 숫자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 강제동원 관계 자료를 모두 소각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분명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단지 단편적인 여러 자료와 조사에 의해 추정하고 있고,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추정치만 잡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강제동원 연구단체나 각 개인 연구자의 조사발표 등을 참조하여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자료를 나열해 보겠다. 먼저 김민영(1995:77-78)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4> 1939년~1945년까지 전시노무동원수

추 정 자	전시노무동원수	출 전	비 고
吉田清治	조선내→480만 명, 일본 남양군도→153만		당시 강

44) 근로보국대의 주요사업장은 수력발전소나 토목공사장이고 한사람이 2~3회 정도 그리고 매회 당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원되어 노역하였고, 도내동원 이후에는 다시 노동자나 군인으로서 도외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았다.(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2005:20)

	명, 중 군위안부→10만 명		제 동 원 부 동 장
박경식	조선내→450만 명, 조선외→150만 명(석탄광산60 만, 군수공장40만, 토건30만, 항만운수관계5만), 군인군속→37만 명, 중군위안부→10만 명	「在日朝鮮人關係集成」	재 일 역 사 학 자
윤정옥	조선외→151만142명	한 겨 레 신 문 1990/1/4,12,19, 24.	정 신 대 협 대 회 한 대 국 측 표
허수열	조선내→456만8,517명(총독부알선422,399명, 도알선4,146,118명)	「朝鮮人 勞動力 強制動員의 實 態」	
강성은	조선내→480만 명, 조선외→152만 명, 군요원→ 20~30만 명, 군위안부→14만 명, 합계: 700만 명	「戰時下日本帝國主義의 朝鮮農村勞動力收奪政策」	
후생성 노무과	조선외→66만7,684명		
공산조사 청	조선외→72만4,287명		
조선경제 통계요람	조선외→1,129,812명. <표 5>참조	조선경 제 통 계 요 람,134쪽	
長崎조선 인의 인권을지 키는모임	조선외→111만9,032명	조선인 피해자와 감추어진 진실 ,22-28	

자료 : 김민영, 1995:77-78.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

위 <표 4>의 ‘조선경제통계요람’에서 밝히고 있는 항목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인원수가 1,129,812명으로 나타나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표 5>에서 세부적으로 나타내 보았다. 즉 1939~1945년 사이에 각종 공사장과 광산, 기타 부문에서 어느 만큼의 인원이 동원되어 갔는지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5> 전시노무동원자의 수

구 분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합 계
석탄광산	24,279	35,441	32,415	78,663	77,850	108,350	136,810	493,005

금속광산	5,042	8,069	8,942	9,240	17,075	30,900	34,060	113,258
토 건	9,479	9,898	9,563	18,130	35,350	64,827	29,642	176,889
항만하역						23,820	15,333	39,153
공장기타		1,546	2,672	15,290	19,455	151,850	114,044	304,857
합 계	38,800	54,954	53,592	121,320	149,730	379,747	329,889	1,129,812

자료 : 『조선경제통계요람』 134쪽.(김민영 1995:78 재인용)

위의 <표 5>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조선에서 강제 동원되어 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탄광에 가서 혹사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토건의 176,889명이나 금속광산의 113,258명에 비해 석탄광산이 493,00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김인덕의 『강제연행사 연구』에서 일본의 압제로 강제동원 숫자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자료가 있다. 강제동원 노동자를 여러 자료와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것을 다음 <표 6>에서 정리하였다.⁴⁵⁾

<표 6> 강제연행자수(1939~44,45)

연 도	주 장 자	연 행 자 수	출 전
1939~1944	원용덕	661,684	「요시다 정부에 보내는 공개장」(『민주조선』 1950,5)
1939~1944	일본대장성 관리국	724,787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제9분책
1939~1944	일본후생성	798,143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1939~1945	琴秉洞	1,519,142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동포 강제연행과 학살의 실태에 대하여」(상), 『月刊朝鮮資料』 1974,8
1939~1945	山田昭次	1,199,875	「조선인 강제연행」, 『근대사속의 한국과 일본』, 돌베개, 1992.
1939~1945	『朝鮮時報』	1,518,806	『特高月報』

자료 : 김인덕 2002:21.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위 <표 6>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조사 기관이나 연구자마다 각

45) 이것은 일본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노동자만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조선내부의 관 알선, 징용 등으로 해서 광산, 공장 등지로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여성위안부,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내에서의 동원과 병력, 준병력동원, 여성동원등도 있다.(김인덕 2002:21)

각의 총동원자수가 다르게 나타나 있다. 당시의 이런 현상은 동원 상황을 정확히 밝혀줄만한 일괄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조사 과정과 자료 수집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1939년 7월~1945년까지의 전체 강제동원 노동자는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다음 <표 7>을 보면 조선 내외의 동원과 노동력, 병력을 포함한 강제동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각 동원 분야별로 세부적인 형태로 나타나있는 강제동원 노동자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국내동원 분야는 <표 8>을 보면 대강의 추정치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7> 식민지시대 국내외 인력동원의 추정 (단위 : 명)

노무동원	계	병력·준병력동원	계
(조선내 도내징용)	5,782,581	육군특별지원병	20,723
(조선내 관 알선)	382,537	육군	186,980
(조선내 현원징용)	260,145	해군	22,299
(조선내 국민징용)	43,679	군속(육군)	70,724
소계	6,468,942	군속(해군)	84,483
		조선내 군요원	55,404
해외징용	724,727	남방 군요원	36,535
일본 국민징용	132,781	일본 군요원	132,781
남방 국민징용	135	중국 군요원	4,587
합 계	7,326,585	합 계	614,516
총 계	7,941,101		

비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업위안부피해자 등 성동원자들은 제외, 중국의 집단농장 이주자 제외, 원폭 피해자 제외

자료 : 김민영, 「강제동원피해자의 대한 조사 및 인원추정」, 『2003년도 일제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 보고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일 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2005:32 재인용)

<표 8> 조선내 관 알선 노무자 및 도내동원수 추정치 (단위 : 명)

연도별	군 수	광 업	교 통	공 업	토 건	계	도내동원
1934년		1,088			3,330	4,418	
1935년					1,151	1,151	
1936년		96			2,714	2,810	
1937년					11,965	11,965	

1938년		41	34		19,441	19,516	74,194
1939년		2,735	647		41,907	45,289	113,096
1940년		2,714	901		57,912	61,527	170,644
1941년	1,085	1,494	646		43,662	46,887	313,731
1942년	1,723	4,943	287		42,066	79,030	333,976
1943년	1,328	11,944	186	5,316	40,150	58,924	685,733
1944년	4,020	14,989		3,214	54,394	76,617	2,454,724
1945년	4,312	2,071	252		37,628	44,263	1,636,483
계	12,468	42,115	2,944	8,530	356,340	422,397	5,782,581

주 : 도내동원 1945년도 분은 추정치임

자료 :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통권 제10책. 朝鮮 編 제9분책.1947.p71. ; 허수.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식민통치』.정음사.1985.(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2005:33 재인용)

위의 <표 7과 8>에서 보았듯이 조선에서의 노동력 강제동원 인원은 그 어떤 것도 정확한 노동력 강제동원 인원을 제시한 것이 없다. 당시의 관계된 여러 자료들과 조사 단체들의 조사, 또는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추정치에 불과 할 뿐이다. 일본 당국이 밝힌 조선인 노동력동원 숫자는 72만 명이라고 하였다. 1974년에 민간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관련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동원숫자는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정혜경 2003:22)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조선인 강제동원자는 2002년도 현재 조선 외의 강제동원이 200만 여명, 조선 내 의 강제동원이 550만 여명이었다. 또 위<표 7>에 나타나있듯이 2003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동원숫자는 7,941,101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태이다.(정혜경 2003: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95년에 조선 외로 동원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강제동원 기간 중에 사망한 숫자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동안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성과와 각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이다. 이것은 『해외희생자 유해현황조사 사업보고서』인데, 여기에 강제동원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사망한 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약 30만 명 정도의 조선 노동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혜경 2003:22) 또한 후

술하겠지만 일본의 가혹한 노동력 착취와 비인간적인 대우에 맞섰던 조선 노동자가 탈주나 도주, 작업거부, 파업과 폭동,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하여 저항한 노동자가 많이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의 조사에는 1939~1942년까지 가혹한 착취에 못 이겨 탈주를 시도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는 257,907명 이나 된다고 하였다.(정혜경 2003:22)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 명부를 보존하고 있다. 이 명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정부기록보존소와 국회도서관과 독립기념관 등 3개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 중에 정부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조선인 강제동원 명부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2002년 8월에 전산화 작업을 거치면서 완료되었는데 명부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입수한 48만 여명의 명부이고, 다른 하나는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로서 1957~1958년에 국내에서 신고에 의해 작성된 28만 여명의 강제동원자 명부이다. 이것을 다음<표 9>에서 나타냈는데 여기에는 전산화 현황과 동원인원수와 관련된 것도 기록되어있다.(정혜경 2003:41)

<표 9>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보존현황,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현황표⁴⁶⁾

구분	명 부 명	수량	이관기관	인수일자	인원(명)
1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등	21권	외무부	'91,11,8	97,715
2	『피징용사망자연명부』	10권	재무부 (외무부)	'92,3,9	21,692
3	『일제하 피징용자명부』	3권	외무부	'93,2,12	14,410
4	『자유한인보』	1권	외무부	'93,3,25	2,623
5	『임시군인군속계』, 『유수명부』 등	509권	외무부	'93,10,29	243,475
6	『구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등	M/F26롤	외무부	,93,10,29	100,778
계		544권26 롤			480,693
	『왜정시 피징용자명부』 ⁴⁷⁾	20권	노동청	1972	285,464

자료 : 정혜경 2003:42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사료연구, 서울:景仁文化社.

46) 외무부가 일본후생성에서 입수한 사본 544권M/F26롤(약 48만 여명)을 1991~1993년도 인수받아 보존중인 명부이다.(정혜경 2003:42)

47) 1957~1958년 피징용자와 유족 등의 자진신고에 의해 읍, 면, 동에서 작성된 후 시,도별로 취합한 것

위의 <표 9>에 기록된 것은 전체적인 강제동원자와 강제동원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다. 즉 명부에 나타나있는 개인의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군인·군속의 구분 없이 혼용되어 있고, 다른 자료와 중복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혜경 2003:41-42) 그러므로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부와 비교 분석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서로 중복된 강제동원자를 가려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소장 자료와 각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장 자료들을 넘겨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작업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의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본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보상은 이런 작업들이 진행됨으로서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이다.

2.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형태와 유형

1) 조선 내의 노동력 강제동원의 형태

일본이 노동력 동원을 강행하면서 조선 내외로 나누어서 동원하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국외로 동원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동원에 관한 실태연구는 아직도 많은 것이 미진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조선 내의 동원은 대부분이 관 알선과 근로보국대의 형태로 동원되어 노동력을 수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 내의 동원은 처음 관 알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조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공업과 토건사업과 탄광을 개발하면서 남부의 여유 인력을 북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노동자이동소개사업(勞働者移動紹介事業)’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 인구 분포의 완화조절과 내지 도항 노동자의 저지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시작 단계인 동원 초기에는 1934년~1935년 약 9,300명에 달하는 남부지방의 인원을 북부지역으로 이주시켰다.⁴⁸⁾(朝鮮鐵道協會會報15(4)

48) 조선 내에서의 공장, 광산, 토건노동자수의 동원수를 보면 공장노동자가 1920~29년 사이에 55279명에서 93765명으로 증가했으나 1930~39년 사이에는 101943명에서 270439명으로 168496명이나 증가하였다. 토건노동자도 1933년의 43588명에서 1938년에는 193237명으로 6년 동안에 149649

1936/4:10-5. 김운태 1996:53재인용) 이것은 1937년부터 조선 내에서 개시된 조선총독부 관 알선 정책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다.(김운태 1996:53) 1937년 2월 25일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노동조정사무타합회(勞務調整事務打合會)’을 개최하고 총독부, 각 도청, 노무협회가 일체되어 관 알선 계획을 입안 추진하였다. 이어 1937년 4월부터 ‘노동자알선에 관한 강령’에 근거하여 토건업자들의 도 내외의 관 알선이 시작된 것이다.(김운태 1996:54) 또한 1938년 11월 28일에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이 공포되어 각도 사회과장 회의에서 광산 노동자의 관 알선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으로 도외 알선은 남부지방에서 약 5,000명을 북부로 송출할 것을 결정하였다.(殉銀罰査月報7 1938:89, 김운태 1996:54 재인용) 그리고 1940년 1월에는 노동력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조선직업소개령’, ‘종업원이동방지령’을 공포하고, 1930년 말에는 전문38조로 이루어진 ‘조선총독부 노동자알선요강 및 세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동원대상을 확대 적용하였다.(김성례 외 1995:25)

이런 지침을 토대로 조선의 노동자 알선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한해의 사용계획서를 전년 11월말까지 관할 도(道)에 제출하였다. 도는 이에 의거 예상소요 노동력수 조서와 노무자원 조사결과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12월 20일까지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면 총독부는 ‘본부 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각도로 시달하고, 각 도는 도내·외 알선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에 시달하고 각사업주에게도 지시한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알선 노동자를 할당하여 도로, 도는 부·군·도에 군·도는 읍·면에 순차적으로 할당하였다. 할당을 받은 읍·면은 출가 희망자, 출가 가능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민총력읍면연맹’ 또는 ‘부락연맹’의 협력을 받아 노동자를 공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노동자 공출 과정에서 경찰 관헌과의 긴밀한 연락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다.(허수열 1985:321-322. 김성례 외 1995:25재인용)

일본은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관 알선으로는 조선에서 더 이상 노동력을 원활하게 충족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관 알선방식은 1944년 3

명이나 증가하였다.(허수열 1985:293, 김운태 1996:53재인용)

월 26일에 ‘노동자의 처우개선 노동자의 충족과 실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요강’을 일부 개정하여 동년 4월 1일에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김운태 1996:55) 그런데도 노동력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충족되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 내외의 노동력 동원은 민족 말살과 생활해체를 당해야 했던 조선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김운태 1996:56)

일본이 조선의 노동력을 수적(數的)으로 가장 많이 동원했던 형태는 국내의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국민근로보국대(國民勤勞報國隊)’에 의해서였다. 이 ‘국민근로보국대(國民勤勞報國隊)’는 흔히 ‘근로보국대’로 약칭해서 쓰였는데, 노약자, 불구자, 환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 능력을 가진 전 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천 운동의 한 방책으로서 1939년 후반부터 토목건축 분야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비록 단기적이기는 했지만 점차 무작위적으로 동원하는 ‘근로봉사대(勤勞奉仕隊)’성격이 배어있었다.(이상의 2003:150) 1938년 7월부터 애국반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 봉사를 해오던 ‘근로보국운동’⁴⁹⁾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전국적인 조직망이 완성되면서 개로운동(皆勞運動)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부역제도(賦役制度)에서 실시했던 것을 이름만 바꾸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다.

다행히 조선에는 예로부터 부역의 제도에 의해 민중일반에게 공역봉사의 습관이 있는데 이제 부역이 관념을 봉사의 관념으로 전환하고 본 시설에 새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애국심의 함양을 도모하여 한편으로는 국력의 증강에 이바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 애호의 습관을 조장하여 더욱 황군부익의 길에 매진하도록 한다.(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 1938a:32. 최유리 1997:111재인용)

이런 근원적인 취지에서 출발한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는 처음에 경기도에서 조직되었다. 1939년 조선총독부의 소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근로보국

49) 근로보국운동의 목표 1. 국가 관념의 함양, 내선일체의 심화, 2. 근로애호, 인고단련, 희생봉공 정신의 함양, 3. 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 4.체력의 증진, 5.지방의 개발, 6.비상시국인식의 철저 등이다.

대(勤勞報國隊)’를 조직하여 시험적으로 철도공사에 동원하여 투입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일이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자 1940년에 이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⁵⁰⁾(이상의 2003:149)

이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의 법령 시행은 ‘국가총동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41년 11월 21일에 공포하고 그 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국민근로보국협력령(國民勤勞報國協力令)⁵¹⁾’을 발령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비롯하여 일본의 본토와 대만, 사할린, 남양군도 등에서도 실시되었지만 그 중에 조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김대상 1975:89) ‘국민근로보국협력령(國民勤勞報國協力令)’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보국정신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개로(國民皆勞)의 실효로 총동원체제를 확립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요 산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사태를 완화하고 노동력 동원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셋째, 각종 근로 봉사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노동력 활용을 하는 것이었다.(이상의 2003:215)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의 편성은 각 부·읍·면의 학교, 청년단, 정·동·리(町·洞·里)부락연맹 등 각 단체마다 필요성에 따라 편성되었다. 동원분야는 총동원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에 관한 업무, 총동원 상 필요한 운수, 통신, 위생, 구호에 관한 업무, 군사작전에 필요한 토목건축 업무에 주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비교적 숙련을 요하지 않고 작업기간이 짧은 사업이 주 대상 동원분야였던 것이다.(이상의 2003:214-215) 그러나 일본은 1943년 5월 29일이 사정국장(司政局長)이 각 도지사에게 ‘근로보국대의 출동에 관한 건’이라는

50) 근로보국대의 동원인원 중에 1940년대의 각 도별 동원내역을 보면 경기도3만2446명, 충청북도 3561명, 전라남도6만4078명, 경상북도1만6583명, 황해도6만7797명 평안남도1만7380명, 평안북도 25만6480명, 강원도11만6962명, 함경남도1054명, 함경북도7만6740명, 합계65만2481명에 달했다. (宮孝一 1942:13-17, 이상의 2003:149재인용)

51) 근로보국협력령(國民勤勞報國協力令)에 의한 근로보국대는 제국신민의 근로보국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으로서 대조직에 의한 것, 또 대상자는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및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자였다. 1943년에는 근로보국협력령을 개정하여 남자의 연령을 50세로 높이고 일년에 30일로 이내로 하였던 근로기간도 60일로 연장하고 1944년11월17일에 다시 재개정하여 남자를 60세미만으로 25세 미만의 여성을 40세 미만의 여자로 고치는 등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다. (김성례 외 1995:30)

통첩(通牒)에서 노동의 기피나 여러 사태를 엄히 단속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원 기간을 변경하기도 하였다.⁵²⁾ 즉 도외(道外)동원의 경우 알선과 마찬가지로 토목 건축사업에는 그 해 12월 말까지로 하고, 기타 사업은 1년~2년 이내로 하였고, 고용기간 만료 후 갱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도내동원은 2개월 이상이었고, 구내동원은 1개월 이상으로 하였다.(이상의 2003:216)

동원절차를 보면 근로보국대의 협력이나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조선총독이나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였다. 신청을 받은 총독이나 도지사는 시·군·읍·면장(학교장)에게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 명령을 받은 시·군·읍·면장(학교장)은 동원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김대상 1975:90) 이렇게 근로보국대에 의해서 동원이 실시되면 이에 소요되는 경비⁵³⁾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는 협력을 받는 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있었다.(김성례 외 1995:31)

특히 도외(道外)로 동원되는 보국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근로특별대(勤勞特別隊)’라고 불렀다. ‘근로특별대(勤勞特別隊)’의 동원은 조선총독부와 함게 도에서 작성한 ‘노무동원계획’에 따라 1942년부터 ‘근로특별대(勤勞特別隊)’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각 부·군의 실정에 따라서 동원수를 할당하였고, 거주지 외로 출근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해서 관 알선의 동원기관에 준해서 실시되었다.(안자코 유카 2003:335)

‘근로보국운동’은 학생들에게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1938년 6월 13일에 총독부는‘학도 근로보국대 실시 요강⁵⁴⁾’을 발표하여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학교근로보국대(學校勤勞報國隊)’을 조직하고 동원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학생들을 전력으로 보고 동원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1941년 5월 경기도 학무

52) 근로보국대를 단기간으로 동원할 경우 계속해서 인원이 교체되면서 노동에 대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수송의 어려움과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이상의 2003:216)

53) 동원에 대한 보수는 무보수형태의 동원이었고, 경비는 왕복여비, 수당, 숙박료, 식비, 기타 총독,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54) 주요 내용은 1. 총독부에 학도 근로 보국대 지도 총본부를 설치하며 이 총본부는 학교에 대한 사업 배당 기타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2. 각도에는 ‘지도본부’를 설치하며 지도본부는 구체적인 실시계획 및 동원량 등을 총본부에 보고한다. 3.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근로보국대 대장이 되고, 20명 단위의 반을 조직, 지휘계통은 군대식으로 한다. 학생은 원칙상 재학 중 2회 이상 근로보국대에 동원되어야한다.(김대상 1975:84)

국에서는 도내의 중등학교, 초등학교마다 ‘학교근로보국대(學校勤勞報國隊)’를 조직하여 30일씩 근로 봉사에 종사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1938년에 교육령을 개정하고 다시 1943년 3월에 제4차 교육령을 개정하여 전시체제로 전환시켰다. 1944년에는 ‘전시교육비상조치’를 발동하여 전쟁을 위한 교육으로 전진 배치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노동력 공급처를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은 이루어졌다.(이상의 2003:217) 일부에서는 조선학생을 전시에 내몰아 질적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이전의 교육은 편지주의(偏知主義)의 교육과 교단중심의 교육이라고 평가하였다. 학생의 노동력 동원은 학행일치(學行一致)교육의 본지를 구현할 교육 방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렇게 조선총독부는 전시동원에 초점을 맞춰 교육 이념을 세웠다. 1944년 6월 ‘학도근로출동요령(學徒勤勞出動要領)’을 발표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계획적이고 강제적인 노동 배치가 강행하였다. 종전의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 강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1944년의 ‘학도근로령(學徒勤勞令)⁵⁵⁾’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학도근로령(學徒勤勞令)’은 학교 이름만 내걸고 교육 제도나 내용을 전쟁 수행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동원기간도 근로보국대가 해오던 1년에 60일보다 동원기간이 길어 일년 내내 동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학도근로령(學徒勤勞令)’은 실제로 징용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였고, 1944년 9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징용의 방법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어 ‘일반징용’ 이전에 ‘학도징용’⁵⁶⁾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⁵⁷⁾

55) 학도근로령의 학도의 근로협력 및 이에 관련한 교직원의 근로협력에 관한 명령과 학도근로를 하는 자의 사용 또는 종업조건에 관한 명령으로서 학도근로는 원칙적으로 교직원 및 학도로 하는 대조직에 의하여 총동원업무에 대해 하는 것으로 하였다.(김성례 외 1995:32)

56) 징용제 시행과 함께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학도에 대해 근로를 통해 일본국민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장래의 만도 중견분자로 되게 하기 위해 총후 응소의 정신으로서 조선내 중요공장에 대해서 학도징용을 실시하고 징용의 국민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학도징용에 대해서는 그 징용령 발동의 동기가 학병문제에 배태하여 노동하면 징벌적 의미로 해석된 것, 징용학도에 대한 사업장 측의 이해불철저에 기인하는 처우의 불충분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소기한 것과 같은 징용의 국가성이 그들 징용학도에 의해 ... 얻기 어려운 상태 ... 학도징용과 동시에 일반노무에 대해서도 같은 징용실시의 요청...(大藏省管理局 1947:67-68, 김성례 외 1995:33재인용)

결국 학생동원은 1945년 3월 ‘결전교육조치요강(決戰敎育措置要綱)’을 공포하여 같은 해 4월 1일부터 ‘국민근로동원령(國民勤勞動員令)’에 맞추어 동원하였다. 국민학교 고등과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상급학년은 통년제(通年制), 하급학년은 긴급한 경우에만 기동한다는 명목으로 총동원하였다. 1944년~45년에 실시한 ‘학도근로동원(學徒勤勞動員)’을 <표 10>에서는 각각 15만8천여 명과 16만4천여 명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1년~6개월간 강제노동이 실시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⁵⁸⁾

<표 10> 1944,45년 학도근로동원 실시와 계획상황

학교		동원	1944		1945	
			동원학생수	동원일수	동원수	동원일수
대학		전문학교	7,262	통년 또는 임시	1,400	180
					7,700	360
사범학교			1,278	2-6개월	13,700	180
			10,820	임시		
중등학교	고학년	138,592	통년 또는 임시	74,100	360	
	저학년			67,200	180	
국민학교 고학년				32,500	180	
계		157,952		164,100		

자료 : 「學徒動員ノ狀況及將來ノ方針如何」,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民族問題研究所 編22,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2000, 162-165. (이상의 2003:219 재인용)

비고 1. 1944년도는 8월1일 현재의 실시수치.
2. 1945년도는 6월30일에 작성된 계획수

전쟁의 확전과 함께 조선 내의 증가하는 노동력은 관 알선에 의해서만 충

57) 실제로 학도징용이 학생들에게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학도근로령(學徒勤勞令)’이 변형되어 징용령처럼 활용되었는지 이것을 밝힐만한 자료가 빈약하고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김성례 외 1995:33)

58) 대학과 전문학교의 농공관계학생은 항공대와 교통국 공장, 광산 등에 배치하고, 농수산관계 학생은 농축산지도, 어로 수산가공장에 의약관계학생은 도립병원과 교통국 병원 등에 문과관계학생은 조병항공대 비행장등에 배치하고 사범학교학생은 국민학교로 교육동원, 식량증산, 국방시설, 토목공사, 운모가공작업, 군 피복수선으로 동원 중등학교학생들 중에 공업학교학생은 공장, 사업장으로 농수산물교학생은 식량증산, 토건공사로 중학교와 상급학교학생은 식량증산과 국방시설, 토건공사로 여자중등학교학생은 식량증산과 군 피복보수 등에 배치 동원되었다.(이상의 2003:218)

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노동력 동원이 부족한 부분은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의 역할을 이용하였다. 일반인, 여성, 학생, 심지어 어린 아동에 이르기까지 근로보국이라는 사슬을 매어 동원하였다. 이처럼 조선 내의 동원은 국민 총동원체제 하에서 국민개로(國民皆勞)가 강조된 동원이었던 것이다.

2) 조선 외의 노동력 강제동원과 유형

(1) 모집에 의한 강제동원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석탄업계는 노동력 부족으로 절박한 상황까지 몰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 조선 노동자 집단 이입이 결정된 것이다. 일본 사업장에서는 시찰단이 파견되어 모집지역의 상황 시찰을 실시하였다. 또 이들은 조선총독부와 각 도청을 상대로 인사하고, 역(逆)으로 이들을 탄광 지역에 초대해서 접대 안내를 했던 것이다. 모집방법은 일본의 창구 역할을 후생성에서 하였고, 이것은 일정의 수속 절차가 있었다. 먼저 이 절차는 ‘사업소의 신청자 수 결정→부·현 장관 앞으로 모집신청→후생성사정→총독부가 모집지역의 할당인가→후생성→부·현장관→사업소허가증수령(이 기간은 5개월~7개월을 요(要)한다)→모집인 조선에 도항→총독부→지정지역의 도청→군청→면사무소’ 등을 거쳐 면 주재소나 면 유지에 의해서 모집되었다.(林えいだい 1991a:20) 모집방식 초기에는 조선에서 모집 할당이 된 지역에 회사의 홍보 포스터를 붙여 언제 어디로 신청하라는 광고를 하였다. 그 동안 일본 도항에 제한을 받아온 실직자나 1939년 대한해(大旱害)로 먹고살기 힘들었던 조선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왔다. 노무 담당자는 채탄에 적합해 보이는 농촌 출신의 건장한 남자만 선발했다.⁵⁹⁾ 그러나 이것은 모집동원을 취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났다. 그 후에는 면사무소의 서기와 주재소의 순사가 함께 할당된 부락에 가서 강제적으로 모집을 강행하는 형태

59) 노무담당자가 숙박하고 있는 여관에 모집소문을 들은 조선인들이 전날부터 모여들어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잇는 모습이 각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담당자는 모집 대상자를 손바닥이 점검하여 살이 부드러운 자는 인텔리로 분류하고 교육을 받는 자는 일은 하지 않고 군소리만 하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취급하였다.(林えいだい 1982:80)

로 변질되어 갔다.(林えいだい 1991a:20-21) 이처럼 변질되어진 것은 모집 초기와 달리 먼저 모집되어 갔던 조선 노동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게 되었다. 조선에서 군수공장과 광산개발로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여 노동력이 국내동원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모집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모집방식의 동원은 겉으로 자유행식을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모집하는 강제 형식이였다.⁶⁰⁾ 이처럼 강제성을 띤 동원에 대해서 제일 사학자인 박경식(朴慶植)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요강’의 내용을 들어 지적하고 있다. 이 모집요강의 내용 중에 ①시국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할 것, ②내지도향 후에는 소정의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것, ③직장을 바꾸지 말 것, ④협화사업 단체에 가입하여 그 회원증을 소지할 것, ⑤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5일 이내에 협화사업 단체에 신고할 것, ⑥내지의 생활풍습에 순응하고 내지인이 혐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⑦언어는 국어를 사용할 것, ⑧기타 협화사업 단체 간부, 경찰관 및 직업소개소원의 지시에 복종할 것, 등의 사항이 자유 모집에 서는 있을 수 없는 권력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전기호 2001:4) 야마다 쇼오지(山田昭次)⁶¹⁾도 노동력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임금은 생활비에 필요한 액수 이외에는 모두 저축해야 한다.”는 사항과 “직장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 것”의 규정을 들었다. 동원 노동자에게는 용돈 정도만 주고 강제 저축을 시켜 도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제 노동의 성격을 증거 한 것이라고 하였다.(야마다 쇼오지(山田昭次)외 1992:194, 강인덕

60) 총독부의 지시대로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사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모집했는데 1940년에 경상남도 사천군에서는 도로에 걸여가고 있는 사람을 고성경찰서로 순사가 체포하여 트럭에 태워갔던 일도 있었다.(林えいだい 1991a:20)

61) 야마다 쇼오지(山田昭次)는 전체적으로 조선인의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해서 첫째 신체의 구속이나 폭력과 더불어 조선인 강제동원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경제적 궁핍에 의한 모집지원과 경관, 면직원의 말이 가진 위압감과 진로의 선택 폭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에서의 모집과 전시 하 식민지조선에서 강화된 황민화정책에 의한 정신적 영향이고, 둘째 신체의 구속이나 폭력과 더불어 조선인 강제노동을 보장해 주었던 면에서 보면 군수회사법의 현원징용에 의한 강제노동의 보장과 다수의 담임지도원에 의한 조선노동자의 감시, 황민화정책에 의한 정신적 숙박, 조선인의 숙련노동자화 정책, 강화된 치안대책을 들어 일본의 노동력 강제동원을 말하고 있다.(전기호 2001:7-12)

2002:29 재인용) 이처럼 형식은 자유 모집이었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모집한 강제동원이었다.

모집 동원되었던 노동자는 사업주와 정식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두로 2년 만기라고 알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희망자에 한해서 계약 연장을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정작 계약만료 시에는 조선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41년에는 총독부가 허가한 수의 약 7할에 불과한 인원만 모집동원에 그쳤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사업주는 기간 연장을 강제적으로 종용한 것이다. 또한 중앙협화회(中央協和會)가 나서서 현지 이탈을 예방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재계약체결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모집된 노동자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식량은 한사람 당 쌀2합5작이었다. 수송과정 중에서 도시락 배급은 관계된 역(驛)으로 쌀을 특별 배급해 주었고, 이것은 동아 여행사의 알선에 의해서 주도되었다.(林えいだい 1991c:1246) 이렇게 현지에 도착한 노동자는 약 6개월간의 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석탄 증산이 급해지면서 최초 3일간만 기초 훈련을 시킨 뒤에 채탄 작업이 이루어졌다.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에 따른 모집 비용이 사업소마다 점차 늘어만 갔다. 소탄광의 모집 경비는 모두 본인의 빚이 되어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였기 때문에 경영자의 부담은 전혀 없었다. 노동자 모집이 경쟁적으로 심화되면서 재력과 힘이 있는 대기업이 유리하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관 알선에 의한 강제동원

모집에 의해 동원된 자의 계약 기간 만료가 돌아오자 재계약을 하려는 조선인이 거의 없었다.⁶²⁾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던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과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확전과 전쟁의 장기화로 일본과 사할린, 남양(南洋) 등에서 노동력 수요는 더욱더 필요하였지만,

62) 1942년 관 알선방식으로 일본에 동원된 조선노동자의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나 일본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귀국에 따른 문제점을 이유로 일본인 노동자와 같이 3년으로 연장하였다. 노동계약의 연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 계약기간 연장을 독려하기 위한 다과회와 오락회를 개최하거나 식권을 무료로 지급하는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다.(곽건홍 2002:17)

모집 노동력은 점차 줄어들기만 하였다. 1940년에 9만7천명 목표에 6만 명에 그쳤고, 1941년에는 10만 명 목표에 9월말까지 9천명에 머물렀다. 이에 노동력 공출을 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모집방식에서 관 알선방식으로 강제적 집단 노동력 동원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1942년 2월 13일 각료 회의에서 ‘반도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어서 2월 24일에는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요강’을 발표하고 3월부터 실시하였다. 이 알선 요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모집 운행의 주체를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로 할 것. ②유료 모집으로서 일인당 정액을 노무협회 앞으로 납부할 것. ③모집허가 신청서의 제출과 접수 대상을 각도로 하여 수속을 간이화할 것. ④새로이 부·읍·면 직업소개소의 이용을 인식할 것. ⑤노무자의 편성을 대조직(隊組織)으로 하고, 간부와 대원의 전형 등은 모두 일본에서의 근로보국대 공출에 준거할 것. ⑥일본 도항 후의 훈련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것. ⑦노동자 공출에 협력시키기 위해 사업주 중에서 보도원을 선출할 것. ⑧전형을 마친 노동자는 출신지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할 것을 말하고 있다.(前田 — 1943:46-47, 이상의 2003:220-221재인용). 이처럼 모집 방식보다 강제성이 강화된 직업소개소를 통한 동원과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모집 방식을 조선총독부가 행정조직과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를 일원화하여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이상의 2003:221)

관 알선은 1937년부터 국내 동원과 노동자 수급 조정책을 하기위해서 이미 실시해왔던 방식이었다. 1930년 말부터 ‘총독부 노동자 알선요강 및 세칙’을 제정하여 관 알선의 집단공출이 계획되었던 것이다. 이 세칙에는 알선 절차가 나오는데 먼저 사업주 → 노동자 사용계획서를 도에 제출 → 도는 노무조정계획수립 →총독부에 제출하면 총독부는 본부 노무조정 계획 수립 → 다시 도에 전달하면 도는 도내·외 알선실시계획 → 각 군과 읍·면·사업주에 지시 → 노동자공출로 이어진다.(김운태 1996:41) 이런 알선 절차는 모집 수속을 간소화하고 조선의 ‘직업소개소’와 ‘조선노무협회’의 협력을 얻어 활용하고자 하였다. 관 알선 동원이 진척되면서 조선의 노동력은 고갈되어갔고, 이런 관 알선동원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총독부의 말

단 행정 기관인 면·읍·군에서는 도(道)로부터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다. 면서기의 재량에 의해서 인원을 채우는 모집방식 때의 상황이 아니었다. 사실상 면서기와 순사가 관 알선에서는 공동합작으로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면에 나섰다. 어떤 경우에는 논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연령을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트럭에 태워 싣고 가는 참혹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읍·면사무소가 최 일선에 나섰던 관 알선의 동원업무를 하였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면사무소에서 모집 대상자에게 선전과 안내 그리고 호별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포스터나 전단지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다. 또 면사무소에서는 관내의 유력자를 초청해서 ‘권유 좌담회(勸誘座談會)’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영화 상영을 하기도 하였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에서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전도금을 50엔~100엔 정도 지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들의 선발은 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전형은 관찰, 선별, 체격검사를 실시하며 의사를 입회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전형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본에 도착하면 노동자가 건강하지 못해도 잡역부로 쓰거나 다른 일을 시켰던 것이다. 집결할 때는 호적초본을 지참케 하였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승낙서와 경찰서의 사증을 받아서 군청 소재지에 모이게 하고, 미리 준비한 복장을 입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던 것이다.(김민영 1995:88-89)

관 알선 동원자의 수송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 관 알선 이전에는 노동자가 수송 도중 도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송 기관을 재편성하였다. 시모노세키(下關)에서 1942년 5월에 ‘수송협의회’⁶³⁾가 개최되어 7월부터 진행될 새로운 수송 방법에 대해서 논의·결정하였다. 즉 수송과 신청수속은 4통제 단체에서 직접 철도 당국과 교섭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아여행사’(조선지부)를 양자간에 개입케 했다.⁶⁴⁾ 다만 신청

63) 이 수송협의회는 석탄통제회, 광산통제회, 철강통제회, 토목공업회 등 4개 통제회가 주체가 되어 기획원, 상공성, 후생성, 내무성, 해무성,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김운태 1996:254)

64) 동아여행사의 본사는 동경에 두고 조선에는 지부(경성부 용산 철도국 운수과내)를 두고 있었다. 총

수송은 조선총독부 노무과를 통해서만 시행하였다. 이 같은 취지는 일본 현지까지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수송하려는 의도였고, 동아 여행사라는 전문 수송 기관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송하려는 것이었다.(김운태 1996:254)

관 알선은 동원 노동자를 편성하는 것도 군대식으로 대조직(隊組織)으로 편성하였고 관리와 교육도 군대식으로 훈련하였다. 관 알선으로 동원된 조직은 1조(組)를 5명~10명으로 하고, 2조~4조를 하나의 반(班)으로 조직하고, 5개 반을 1대(隊)로 조직하였다. 또 읍·면사무소에는 노동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대조직(隊組織)의 중요 대원과 간부의 임명을 보면 일반 대원의 경우는 사상과 신원이 확실하고 건강한 자로 하였고, 가능하면 일본어의 해독 능력을 구비케 하였다. 대장의 경우는 일반 대원의 구비 조건에다가 인망, 지도력, 국졸 이상의 학력, 30세 이상의 연령을 조건으로 달았다. 반장의 경우는 일정조건에 맞는 자로 선정하여 임명하였다. 조장의 경우는 일반 대원 중에서 자질이 양호한 자를 선택하여 부, 군, 도에서 임명하였다. 대장과 반장은 부, 군, 도와 알선 소개책임 직업소개소에서 각각 임명하였다.(김민영 1995:93) 동원 노동자를 작업장에 배치할 때에도 이런 대조직(隊組織)을 그대로 활용하여 관리 통제가 편리하게 하였다.

일본이 조직과 군대식 규율로 강화하면 할수록 이에 맞서 동원 노동자들의 반일의식과 저항도 커져갔다. 결국 이것은 수송 도중 또는 현지에서 도주나 탈출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대개 노동시간, 임금, 식사, 대우 등 노동 조건이 가혹할수록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 때 심하게 나타났다. 도주와 탈주로 인해 노동 능률이 저하되고 노동력 공출에 어려움을 겪자 일본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결국 후생성 노동국장, 내무성 경보국장 등 4개 국장이름으로 ‘이입 조선 노무자 훈련 및 취급요강’이

독부의 후생국 노무과와 논의하여 수송하였고, 수송에 앞서 단체명, 출발월일, 발착역, 인원, 숙박, 식사 등 여행과 관련하여 ‘단체수송신고서’를 작성하였다.(이 경우 승차 운임은 5할로 할인) 이것을 철도국에 송달하면 거기서 결정된 수송열차와 선박을 기초로 그 여행사는 숙박, 도시락, 식사 등의 알선을 기입하여 ‘단체수송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각 회사의 노무보도원에 보낸다. 특히 숙박과 식사는 여행사의 각 지부에서 맡았는데 일본 내에 서부(히로시마)와 큐우슈우지부(모지항)를 두고 있었고, 기타 안내소는 부산, 시노모세키, 오사카, 동경, 아오모리역에 위치해 있었다.(김민영 2003:60)

시달된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훈련에 중점을 두고 강요와 협박으로 세뇌하였던 것이다.⁶⁵⁾ 이 훈련 중에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첫째, ‘현지훈련’이 있다. 둘째, ‘취로지 도착훈련’이다. 셋째, ‘황민화훈련’이다. 넷째, ‘생활훈련’이다. 다섯째, ‘불량자 훈련’이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의 성격이나 노무관리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김대상 1975:81-82) 훈련은 명목상의 훈련이었고 노무관리와 동원 과정의 조직과 이동은 완전한 군대식이었다.⁶⁶⁾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으로 계약 만료를 고대하고 고국에 돌아갈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계약 만료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재계약이 강요되었다. 조선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강제 관 알선에 의한 동원이 외면을 당하고 도주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중요 사업장에서는 계획 인원을 충당하지 못하여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동원 노동자들도 가혹한 노동과 시달림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관 알선방식보다 더 강력하고 무차별적인 동원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징용에 의한 강제동원

관 알선동원 노동자들의 저항과 동원 기피는 노동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서 군수 물자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노동력 강제동원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1943년에 이미 4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1944년에만 29만 명을 송출할 계획이었다가 추가로 10만 명을 더 요구한 상황이었다.(이상의 2003:224)

그러나 당시 조선 내에서도 광산 개발과 공장의 확대 가동으로 노동 사정

65) 훈련의 종류 : 현지훈련, 취로지 도착훈련, 황민화훈련, 국어훈련, 작업훈련, 생활훈련, 체련, 취로후의 재훈련, 불량자 특별훈련 등 9종류이다.(김대상 1975:81)

66) 1942년에 관 알선 강제동원으로 일본강관 가와사키(川崎)공장에 동원되었던 경우는 조선에서 대조직으로 편성한 다음, 1주일간의 군대식 훈련을 거쳐 ‘제3차 훈련공’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끌려갔다. 처음 3개월간은 사내 청년학교에 넣어 새벽4시부터 깨워 엄한 군대식 훈련을 시켰다. 한겨울에도 물속에 집어넣고 또 장거리 구보를 시키는 등 훈련기간 중에는 일체 외출금지, 무급으로 일을 하고 훈련이 끝난 뒤에야 각 기숙사에 배치되었다.(김대상 1975:82)

은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전시 하의 국방 사업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더구나 그때까지 동원 노동자들이 도주나 탈주, 노동 저항으로 인해서 계획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당시 일본으로선 조선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법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이 유력한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즉 동원방식은 전 조선인을 상대로 ‘노동의무제(勞動義務制)’를 실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전 동원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강제 징용 방식이었던 것이다.

원래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은 1939년 10월 1일에 조선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곧 바로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하여 연기되었다. 그 이유는 공장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불충분한 것과 조선의 정서상 저항을 부를 염려가 있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단지 1941년에 군 관계에 대해서만 징병을 실시하고 1943년 10월부터는 일본에 있던 조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군속(軍屬)으로만 징용을 실시하였던 것이다.(김대상 1975:94)

한편 ‘학도징용(學徒徵用)’이 실시되면서 노동력을 애타게 갈망하던 자본가와 사업주들을 자극하였다. 그들은 이동 방지책이나 노동력 충족 방책으로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징용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즉 그 요구 속에는 농촌의 부녀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농촌 노동을 유지하게 하고 남은 노동력은 징용 실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 노동자를 쓰려면 모집비를 내야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강제징용으로 전환하면 모집비를 안내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주들은 강력하게 징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朝鮮勞務2(5) 1942:53, 이상의 2003:225재인용) 마침내 징용령이 1944년에 발동하여 ‘현원징용(現員徵用)’과 ‘일반징용(一般徵用)’의 형태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징용의 실시 목적이 체력과 노동력이 우수한 일반 노동자를 신속하게 전쟁 중점 산업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강제징용을 징병과 같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조선인의 입과 귀를 막아 무차별적 희생과 강요를 요구하며 죽음과 고통의 사업장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현원징용(現員徵用)’은 국가의 중점 사업과 국방 산업에 종사하는 특수 기

술자와 기능 소유자에 대해 이동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즉 현원을 유지하려고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그대로 징용하는 조치를 말한다.(김대상 1975:94) 1944년 2월 8일에 전국의 주요 공장과 광산에서는 전 종업원에 대해 제1차 현원징용을 실시하였다. 이는 외부 유입 인력이나 이전부터 있는 인력을 모두 징용으로 통일하려는 목적이었다.(이상의 2003:226) 이들은 ‘응징사(應徵士)’라고 하여 특별히 ‘응징사 복무규율(應徵士服務規律)’을 정해서 관리하였다. 1944년 4월 8일에는 제2차 현원징용을 실시하였는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12개도에서 실시되었다. 그 뒤에도 조선에서는 현원징용이 계속 이어졌고, 1944년 8월 20일 현재 공장 73개소, 광산 56개소, 계 1백29개소의 사업장에서 기업주 이하 14만7천80명의 조선인들을 현원징용으로 강제노역을 시켰다.(김대상 1975:95) 1944년 11월 말에는 공장 73개소, 광산 71개소, 계 144개소로 징용자는 153,580명에 달하였다.(김성례 외 1995:37) ‘일반징용(一般徵用)’이 시작된 뒤에도 상당한 수가 현원징용으로 징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김대상 1975:95)

조선총독부가 노동자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실시하자 노동자 이동이 격감하였다. 이런 현상이 가동률에도 미쳐서 징용 실시 이전 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많게는 24%까지 증가하였다. 1944년에는 30개의 공장과 광산을 대상으로 여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용자는 6배나 증가하고 해고자는 34%가 감소하는 등 사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공권력을 앞세워서 강제적인 징용에 의한 노동력 공급을 주로 희망하였다.(이상의 2003:230) 1944년~패전까지의 노동력 동원은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징용에 의해 진행되었다.⁶⁷⁾

1944년 8월에 ‘일반징용(一般徵用)’의 실시를 발표하여 9월부터 ‘국민징용(國民徵用)’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징용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징용 대상은 만 16세~40세까지의 남자로서 현재 동원되지 않는 청·장년 전원이 해당되었던

67) 총독부도 법적인 강제를 통해 노동자를 장기간에 걸쳐 동원하게 되면서, 행정절차의 면에서 또 비용의 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징용은 전쟁수용상 절대로 필요한 생산력을 확보하고 그 확충증강을 피하고자 하는 경제적 내용을 가진 하나의 정치적 강행 수단이었다.(이상의 2003:230)

것이다.⁶⁸⁾ 즉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에 의해 청·장년등록을 한 일반인들이 주 대상이었고, 기능·기술은 없으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외에 기능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특별 조사하여 등록하게 하였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징용하였다.(이상의 2003:227) 그리고 징용 영장의 내용을 몰라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쉬운 말로 징용 해설서를 만들어 보급하였던 상황도 연출되었다.⁶⁹⁾

일반징용(一般徵用)의 직접적인 필요성은 도주나 모집 인원 미달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복합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대량으로 징용을 실시한 것이었다. 또 일반징용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해제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⁷⁰⁾ 그래서 징용을 피해 도망하거나 ‘응징사복무규율(應徵士服務規律)’을 어겨서 도주하면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징역1년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일반징용의 동원 절차는 동원 인력을 받고자하는 업체가 인원 신청서를 제출 → 소관대신 → 조선 총독 → 도지사의 출두 명령서 → 국민 징용관의 검사 → 도지사의 징용영장 발부 → 읍·면장 → 영장 수령 → 일정장소에 집합 → 인솔자에 의해 취역장에 도착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김대상 1975:96)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징용에 끌려가는 사람은 영장을 받고 1주일 이내 징용되어 출발하였다. 작업 현장에 도착하면 약 2주일은 중견 노무자 연성 도장에서 연성(鍊成)을 받았다.⁷¹⁾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의 질과 양의 저하 방지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연성을 통한 정책들을 강구해 내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①국민등록제도를 강화하여 근로 자원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할 것, ②근

68) 대상은 16세~40세에 이르는 대상자 중에 20세~30세까지의 연령층을 일반 징용하였다.(김대상 1975:95)

69) 총독부의 어느 한 기사가 청장년들이지만 일본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반 정도에 불과하여서 쉬운 말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이상의 2003:227)

70) 징용이 해제된 경우는 본인이 병이나 기타 일할 수 없을 때 혹은 그 사람을 총동원업무에 종사시킬 필요가 없을 때로 국한하였다.(이상의 2003:227)

71) 연성으로는 군대식 정렬, 행진, 경례 등의 규율훈련을 실시하고 단체생활에 대한 훈련으로 식사예절, 용변 보는 일, 취침기상 규율 등을 가르쳤다.(宮孝一 1944:19-26,47-49, 이상의 2003:228 재인용)

로 동원의 대상이 될 만한 청장년층을 망라하여 단기적인 연성을 실시하여 근로 의욕을 앙양시킬 것, ③사찰제도를 강화하고 능률의 증진, 근로의 적정 배치, 수입 체제의 급속한 정비 등 근로 관리를 쇄신하여 징용의 국가성을 명확히 할 것 ④피징용자와 그 가족, 유가족 등의 부조 원호를 강화하여 응징사(應徵士)에게 우려가 없도록 할 것.(近藤 劔一 1964:173-174, 이상의 2003:231재인용)등을 방침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즉 연성의 목적은 징용을 통해 노동력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또한 징용자는 황국신민화에 입각한 강제징용을 의무로서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 의무 내용은 “국가에 대해 종업의 의무를 지고 직접 성업을 익찬하고 받드는 것”이라며 ‘응징사(應徵士)’⁷²⁾라는 별칭으로 불렸다.(이상의 2003:231) 더욱이 징용으로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응징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영예가 된다는 것을 선전하였다. 선전의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직장을 사직하고 응징한 경우, 결혼을 앞두고 응징한 경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응징한 경우, 국방헌금을 낸 경우, 절식의 예 등으로 징용자의 선전 광고가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이상의 2003:232)

지옥과 같은 징용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선인들은 생활이 파탄나고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다. 그들이 징용되어가더라도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 생계와 생이별로 인한 이산의 아픔은 더 큰 고통이었다.

(4) 조선농업보국청년대에 의한 강제동원

노동력 동원이 1,2,3단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전술한 대로이다. 그런데 소규모적으로 국내외에 동원되어 갔던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농업보국청년대(朝鮮農業報國青年隊)’⁷³⁾라는 동원 유형일 것이다. 이것은 1940년~1944년까지 총 15

72) 응징사란 민간공장 중 관리공장 혹은 지정공장으로 징용된 사람을 지칭하였다. 군에 징용당한 사람을 군속이라고 하듯 징용은 국가가 행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징용당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신분 관계를 정한 것이다. 또한 응징사의 신분을 표시하고 영예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휘장을 만들어 원편 가슴에 부착하게 하였다.(宮孝一 1944:57-59. 이상의 2003:231 재인용)

73) 한국사 연구자인 樋口雄一가 1998년에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라는 책에 의해 간략히 조선농업청년보국대가 소개되어 알려지게 되었고, 정혜경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

회에 걸쳐 약3,000명의 조선청년들이 일본의 농가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을 말한다.

조선총독부가 직접 관여했던 이 동원 방식은 일본의 청장년이 전쟁터로 빠져나가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의 농가에 가서 노력 봉사하고, 내선일체의 정신을 체득하게 한다는 취지로 조직되었다.(東亞日報 1940/5/12) 즉 일본의 선진 영농법을 습득해서 조선에 적용하여 증산에 힘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체는 일본 농가에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고, 나아가 토목건축의 노동 현장에까지 동원되었던 것이다.(정혜경 2002:2)

이 선발 대상은 각도의 ‘농민도장’과 ‘농민훈련소’의 수료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중견청년들이었다. 일본의 출정 병사 농가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내선일체를 이룬다는 선전은 허구적인 것이었다. 즉 ‘증산을 위한 영농 기술’이라는 선전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동아일보 1940/5/12) 1943년 5월에 이시카와(石川)현을 비롯해 4개현에 약 403명이 농업청년대로 다녀온 적이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것을 홍보하기위해 『皇民으로의 길』⁷⁴⁾이라 책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도 신 영농 기술을 습득했다거나 구체적인 영농 기술을 배웠다는 것은 없었다. 즉 홍보적인 감상문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책에서조차 “일본인의 근면성을 배웠다”는 것과 “비료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것과 “영농 습관을 배웠다”는 것뿐이었다.(정혜경 2002:5)

조선농업보국청년대를 처음 파견했던 시기는 1940년 6월 4일~7월 7일까지 34일 간을 예정으로 2대 11개 반으로 나누어 파견하였다. ‘도 농민훈련소’에서는 약 5일 간의 훈련을 받은 후 규우슈우(九州)지역에 제1차 조선농

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구술자료 수집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정혜경 2002:2-3)

74) 『皇農으로의 길』이라는 책에 농업청년보국대가 다녀온 종합감상문을 실고 있다. 1.경신숭배의 신념이 강한 것, 2.총후 농촌에서 전 가족 근로가 철저하고 보국정신이 왕성한 것, 3.인정이 돈후하고 친절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 4.일가단결의 기풍이 강한 것, 5.여성의 근로가 특히 현저한 것, 6.교육이 철저한 것, 7.작업과 휴양이 구별되어 이루어지는 것, 8.계량적인 작업을 하는 것, 9.농구를 소중히 여길 것, 10.개량농구의 보급, 특히 동력농구의 이용이 활발한 것, 11.합리적인 시비의 관념과 기술의 보급, 12.공동작업이 활발한 점, 13.가축의 이용이 철저하고 농경이 신속한 것, 14.(해독 불능) 15.농가의수지가 크다는 점, 16.임상이 양호하다는 점 등이다.(조선행정학회 1943:46-51, 정혜경 2002:5재인용)

업보국청년대가 파견되었다. 파견 초기에는 100여명이 조금 넘었지만 횟수가 지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 1944년에는 663명이나 되는 인원이 파견되기도 하였다.(정혜경 2002:7) 구체적인 파견 내용은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 조선농업보국청년대 파견 상황

횟수	파견연월일	기간	인원수	명칭	파견지역	주최
1	1940,6	30일	136	조선농업보국청년대	大分縣,熊本縣,佐賀縣,宮崎縣	조선총독부
2	1940,10	30일	20		鹿兒島縣	강릉군
3	1941,5	10일	160	조선농업보국부인지도대	岩手縣六原農民道場	조선총독부
4	1941,6	30일	313	조선농업보국청년대	山口縣,島根縣,廣島縣,岡山縣	조선총독부
5	1942,6	30일	313	조선농업보국청년대	奈良縣,滋賀縣,岐阜縣,三重縣	조선총독부
6	1942,5	11일	81	조선농업보국부인지도대	岩手縣六原農民道場	조선총독부
7	1942,10	60일	100	조선홍농청년대	熊本縣,佐賀縣	조선홍농회
8	1942,10	40일	44	강원도농업보국청년대	熊本縣玉明郡滑石村	강원도농회
9	1943,5	30일	403	조선농업보국청년대	石川縣富山縣,福井縣,長野縣	조선총독부
10	1943,5	30일	200	조선농촌중견청년연성대	長野縣八岳中央鍊成農場	조선총독부
11	1942,7	30일	100	조선중견청년연성대	岩手縣六原農民道場	조선총독부
12	1943,11	40일	40	조선중견청년연성대	愛知縣岡崎市追進農民道場	매일신보사
13	1943,10	40일	350	조선농업보국청년대	岡山縣,廣島縣,島根縣,鳥取縣	매일신보사
14	1943,11	40일	70	강원도여자농촌보국대	宮崎縣宮崎郡浦武村	강원도청
15	1944,5	30일	663	조선농업보국청년대	枋木縣,崎玉縣,茨城縣,郡馬縣	조선총독부

자료 :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社會評論社, 1998. 240.(정혜경 2002:6재인용)

위의 <표 11>에서 보면 특히 제3차와 제14차에는 여자들도 동원하여 파견했던 것은 특이한 점으로 보인다. 즉 남여를 불문하고 모집하여 일본의 농

촌 일손을 돕는 형식이었던 것이다. 1941년의 경우에는 313명을 모집하였는데, 각도마다 20~30명 정도씩 모아서 남성 노동력이 없는 집에 한집 당 한 명씩을 파견 배치하였다.(정혜경 2002:7)

또한 파견 대원들을 선발하는 데도 자격에 제한이 있었다. 자격 조건을 보면 선발하는 횟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42년 5월에 제 4차로 파견한 농업청년대의 자격 조건은 첫째, 공립농민도장 및 농업보습학교 수료생으로서 재소 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이다. 둘째, 귀향 후 농업보국 운동에 진력하고 현재 부락의 중견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셋째, 자신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상당의 시험을 가진 자이다. 넷째, 연령 18세~30세 미만으로서 품행 방정하고 신체 강건한 자이다.(每日新報 1943/4/26) 이것은 조직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은 조선총독부의 농촌 통제 정책과 청년 정책이었다.⁷⁵⁾ 이렇게 선발된 자가 도일 직전에 단기 훈련 시설인 농민도장, 농업보습학교, 농민훈련소 등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런 기본 훈련을 받은 기관 중에 농민훈련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다.(정혜경 2002:12) 즉 농민훈련소가 농업청년대로 선발된 자들의 단기 훈련의 장소로 사용된 것이다. 농촌진흥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청년단과 농민훈련소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정책적인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즉 그 관계는 영농법의 습득과 농가 갱생의 구현을 외치면서 좀더 많은 양곡을 일본으로 공출하고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농업청년대는 일본이 일관되게 ‘내선일체’와 ‘총후보국(總後報國)’이라는 명분과 선전 속에서 무임금 노동력의 착취였을 뿐이다.(정혜경 2002:14) 노동력 동원의 범주에 해당하는 농업보국청년대는 농촌 통제 정책의 하나의 산물이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와 명분으로 조선의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단지 농업보국청년대의 파견은 조선 청년들의

75) 농촌통제정책인 농촌진흥운동의 전개과정이 자력갱생과 중견인물양성이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농민훈련소(농민도장, 농촌중견부인양성소, 농촌청년훈련소)건설이었고, 중견인물양성정책은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졸업생지도가 중심이었다가 중반부터는 농촌청년층의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정혜경 2002:11)

노동력 수탈로 이어졌던 것이다.

(5) 기타방법에 의한 강제동원

노동력 동원은 대규모적으로 모집과 관 알선, 징용으로 나누어지고, 소규모적으로는 조선농업보국청년대, 군속(軍要員), 남양농업이민(南洋農業移民),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 여성 종군간호부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건설 현장에 동원된 산업위안부의 실태는 아직 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양한 형태로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지금 현재에도 동원 방법은 계속 밝혀지는 과정 중에 있다.

군속(軍屬)또는 준 병력⁷⁶⁾으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육해군 문관, 고원(雇員), 용인(傭人)의 형태로 동원되었다. 처음에는 모집 방식으로 동원되어 군 관할 하의 공장이나 토목 건설 사업 등에 군노무자로서 착취를 당하였다. 1943년 7월 20일 ‘국민징용령’이 개정되어 군 요원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군속이 배속된 곳은 일본의 각 항구와 동남아 지역, 철도건설현장, 비행장, 군 관할의 군수공장, 운수요원, 포로수용소의 감시 요원으로서 사역을 하였다.(강창일 1997:300) 이렇게 배속된 군속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민족적인 차별로 일본인 상관들과 잦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대개 군속은 2년 계약으로 동원되어 갔고, 또 급료로 30원~50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 약속대로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군속들은 계약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강제사역을 당하였다.(이상의 2003:233) 특히 군속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은 자신을 지킬 무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 때문에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로 강요당하였고, 식량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죽거나 주력 부대가 후퇴한 이후에도 전방에 남아 폭격당한 경우가 있었다.(정혜경 2003:34) 현재 조사 단체에서는 해방이 될 때까지의 군속, 군인들은 무려 36만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 중에 일본 당국에 의해 귀환이 확인된 수는 16만1천명에 지나지 않았고, 20만4천여 명은 그 생사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

76) 일본의 일반자료에는 軍夫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군부는 포로감시원과 군노무자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대부분이 군노무자였다.(정혜경 2003:32)

이다.(朴慶植 1965:36-38, 이상의 2003:233)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는 그 동원 규모조차도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수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조선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조선 여성이 모집방식으로 일본의 고무공장, 직물공장 등으로 동원되어 갔다. 관 알선과 모집 및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동원이었지만, 그 중에 관 알선이 적극성이 있었다. 모집과 지원은 신문광고나 기사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선전하였다. 또 노동 조건이 좋고 국가에 충성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독려하면서 모집하였다.(정혜경 2003:23) 더구나 1943년부터는 수만 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이 일본의 각 군수 공장에 강제 동원되었다. 1944년 8월에는 ‘여자 근로 정신대 근무령’이 발령되었다. 그리고 ‘여자 정신대(女子挺身隊)’의 대상은 12세~40세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군수 공장과 전방의 작업장에 투입하였다. 해당 여성에게는 ‘정신근로영서(挺身勤勞令書)’가 발부되었고, 이를 거부하여 응하지 않을 때에는 ‘취직영서(就職令書)’를 발부하여 특정 직업에 강제 취직을 시켰던 것이다.⁷⁷⁾

전쟁 확대로 군수 생산 확장이 되어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필요성의 충족은 수만 명의 조선 여성을 모집과 정신대라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흡사시켰다.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일 것이다. 즉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로 동원하여 위안부라는 의무를 주면서 중국이나 남방의 전선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더구나 기업체 위안부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재 조선 여성 위안부의 문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김대상 1975:115-117)

남양농업이민(南洋農業移民)은 일본의 계획적이고 강제적인 가족 단위의 동원형태였다.⁷⁸⁾ 남양농업이민(南洋農業移民)은 1938년 8월~1940년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수행되었고, 인원도 1,266명으로 285호의 조선인이 농업

77) 정신근로영서(挺身勤勞令書)와 취직영서(就職令書)마저 불응하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천원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김대상 1975:115)

78) 남양군도는 일본이 사용한 용어이고 현재의 명칭은 미크로네시아이다.(정혜경 2003:161)

이민을 떠났다. 총 13회 중에 2회는 풍남산업 주식회사가 수행하였고, 11회는 남양홍발주식회사가 남양청으로부터 대여 받았던 토지에 조선인 노동력을 집중 투입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카사바나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일본의 오오사카(大阪)에 보내 전쟁을 위한 전분이나 방적풀, 무수알콜을 생산하여 공업 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 남양농업이민(南洋農業移民)의 이주는 모두가 가족을 동반한 이민이었다.(정혜경 2003:192-194)

이 외에도 조선의 노동력 동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 노동력 동원 조사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파악과 학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일본이 노동력 동원을 전개하는 과정과 동원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조선 내외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해서 동원하였던 것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노동력 동원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동원형태가 변형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제1단계가 모집방식이었고, 제2단계가 관 알선이었고, 제3단계가 징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일본은 처음 ‘노무동원계획’에 따라 동원정책 수행이 의도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의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동원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무리한 노동력 강제동원에 따른 조선인들의 반발과 반전을 억제하고자 동원 방법과 형태를 바꾸어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제기하였던 것이 동원규모와 동원현황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지금도 많은 연구단체나 연구자마다 각각 다른 수치의 동원숫자를 내놓고 있다. 이것은 동원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큰 원인이었다. 또 동원주체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원규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조선 내외로 강제동원된 숫자가 2003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7,941,101명이라고 발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원현황에 대해서는 <표 8>로 대신해도 될 것 같다. 세 번째로 조선

내의 동원형태와 특징에 관해서는 먼저 관 알선방식에 의해서 동원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지자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라는 이름으로 학생에서부터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동원하여 갔다. 즉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전 조선인이 동원되어 인력 수탈을 하였던 것이다. 조선 내동원의 특징적인 것은 ‘근로특별대’라고 하여 도외(道外)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고, 학도징용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조선 외의 동원은 어떤 형태로 동원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였다. 모집방식은 자유 모집 형식을 취한 기만적인 동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관 알선방식은 차츰 모집방식으로 인력 동원이 어려워지자 관이 직접 알선하는 형태로 동원을 강화하였다. 징용방식은 관 알선마저도 인력 동원이 어려워지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민징용령’을 발령하여 무차별적으로 징용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조선농업보국청년대’를 비롯하여 군속(軍要員), 남양농업이민(南洋農業移民),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 여성 종군간호부등으로 동원되어 갔던 것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전쟁으로 징집되어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 농가에 가서 노력 봉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동원 방식 모두는 조선총독부가 앞장서서 말단 행정기구인 읍·면사무소와 경찰서를 총동원한 총체적 강제 동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IV.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실태와 노동구조

이 장에서는 강제동원해 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무관리와 노동력 동원 실태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군수산업의 생산력 확충을 위한 노무관리 체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노동력 강제동원의 동원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①식민지 민족으로서의 노동차별은 어떠했는가? ②군대식 노동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③노동 수탈에 대한 생활상은 어떠했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1.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노무관리와 노동구조

일본은 조선인 노동력을 침략 전쟁 수행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무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 그런데 계속되는 강제동원으로 조선의 노동력은 점차 양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즉 노동 질적 향상은 정신훈련과 연성(鍊成)을 통하여 생산성을 올리고자 노무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각 사업장은 군대식 규율로 강화하고 노동조직도 군대식으로 바꾸어 산업군단의 모습으로 개편하였다. 이처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규율이 노동 현장에 적용되었고, 나아가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정신까지도 생산력증강을 위해 변경해 나갔다.

노무관리의 조직과 배치 인원은 각 사업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서무(통계 포함), 복리(통제품 관계), 채용·해고계, 건강보험 등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과장, 노무계장, 노무계원, 잡역부, 료장(寮長), 관리, 통역 등 기타로 자료계(임금, 계산, 통계), 산업보험계, 노무수첩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노무보도원(勞務輔導員)’이 있었다. 특히 노무계는 생산력 확충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조선인 폭력의 원인이 되었다. 조선어를 구사하는 조선순사 또는 일본어를 하는 조선인을 노무 보조로서 채용하여 노무관리를 하였던 것이다.(林えいだい 1991c:1250)

그리고 ‘조선인 노무관리의 요령’⁷⁹⁾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의 노무관

79) 박경식 편 의 조선문제자료총서에 실려있는 것으로 조선인은 일본인과 역사, 풍속, 관습,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본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선인 노무관리의 특이성

리 형태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강압주의적 노무관리로서 조선인의 단점을 고치는데 급급해서 그들의 특성을 제대로 되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온정주의적 노무관리로서 민족정책 상의 위험을 내포하는 일은 적지만 그들의 특성을 보지 않아서 산업능률이 저해되어 노무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朴慶植 編 조선문제자료총서 1980) 특히 효과적인 노동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선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놓고 관리하였다.⁸⁰⁾ 더구나 ‘조선인 노무관리5칙’을 만들어 철저한 노동통제로 조선 노동자는 생산 도구화 역할을 담당하였다.⁸¹⁾ 즉 노무관리가 민족적인 차별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노동기관인 ‘노동과학연구소’에서는 ‘보고서’를 내어 조선인 노동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 사업장이 ‘생산보국 부대조직’의 형성으로 군대식 규율을 가진 사업장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명칭이 부대장(部隊長)-중대장(中隊長)-소대장(小隊長)-분대장(分隊長)-반장(班長), 또는 소대(小隊)-구대(區隊)-지대(支隊)-부대(部隊), 또는 지부장(支部長)-분회장(分會長)-반장(班長)-부반장(副班長)-조장(組長)-조원(組員), 또는 소장(所長)-과장(課長)-계장(係長)-계원(係員) 등 한결같이 강압적

과 조선인의 특성에서 본 노무관리, 조선인노무관리의 요점 등이 기록되어있다.(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1980)

80) ①장점 : 효심이 깊고 부모에 대해 절대복종한다. 조상숭배의 미풍이 있다. 친척·동료에 대해 동정심이 깊다. 남녀관계가 바르다. 예의가 바르고 어린아이의 질서가 있다. 남에게 관용하고 의연함이 있다. 소박하고 검소하다. 돈에 의해 일의 난이도를 가리지 않는다. 체력과 체격이 우수하나 근면성은 떨어진다. 단순 반복 작업에 적합하다. 일본에 비해 가동률이 좋다. ②단점 : 지능이 낮고 향상심이 결려된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다. 생활이 자기중심적이고 시국인식이 부족하다. 사대사상이 강하다. 민족단결이 강하다. 사려 천박하여 부화내동 한다. 허언이 많고 표리행동이 후안무취이다. 적극성이 부족하고 기력이 약하여 의외심이 강하다. 온정주의가 강하고 쉬게 은혜를 잊는다. 과장성이 많다.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인정이 없고 의협심적다. 허영이 많다. 저축심이 부족하다. 부인들은 경제관념이 부족하다. 손익에 민감하다. 도박을 좋아한다. 위생관념이 부족하다. 밀주를 만드는 습관이 있다. 찬밥을 싫어한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지구성이 부족하다. 일본어를 할 수 없어 작업상 부적합하다. 의심이 많고 회사를 믿지 못 한다. 연구심이 부족하여 창의성이 떨어진다. 행동이 느려서 신속성을 요하는 작업에 부적합하다. 조금한 상처에도 피병이 많고 휴업이 많다. 무저항주의의 경향이 있다.(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1980)

81) 조선인 노무관리의 5원칙 ①유능한 산업노무자의 육성과 황국신민의 자질을 연성하고 ②일시동인, 내선일체를 기본정신으로 하여 ③우월감을 버리고 신뢰와 부촉을 해야 하고 ④사랑의 채찍 눈물의 호소를 잊지 말 것. ⑤한사람의 마음은 만인의 마음이고 따라서 관리의 요체는 인간성을 아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김민영 1995:128)

이고 군사적인 위계구조로 되어있었다.(김민영 1995:128) 이런 구조 속에 조선 노동자가 거처하는 기숙사에는 조선인 전문 주임계원을 배치하였고, 숙소를 정비하여 직영 합숙사로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①전원 합숙시키고, ②30명에 한 명꼴로 지도원을 배치하고, ③지도원의 수입은 노무자보다 많게 할 것, ④사감은 일본인으로 하고 조선인 국어 해독자로 하여금 부사감직을 갖도록 할 것, ⑤합숙에 노무계를 배치하여 책임을 지게 함, ⑥도주자 속출을 막기 위해 훈련기간 중에 사감이나 지도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도주자가 발생시마다 수당 중에서 일정액을 차감하게 했던 것이다.(김민영 1995:129)

일본의 이데올로기적인 훈련과 노동 통제는 협화사업(協和事業)⁸²⁾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협화사업의 실천요목인 ‘황민화 정신의 함양’이 구체적인 사상으로서 조선 노동자들에게 강요되었다. 협화회(協和會)는 각종 훈련을 통한 정신교화를 강조하고, 기본방침으로 효과적 작업에 대한 교육과 일본어습득, 신사참배, 황국신민화교육이 강요된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 된 자는 의무적으로 협화회원(協和會員)이 되어 회원증을 지참하고 다녀야했다. 협화회원증이 없으면 경찰에 체포당했다. 이것은 협화회원으로 등록하면 경찰의 관리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협화회 업무는 경찰의 수족이 되어 도주자의 적발과 황민화교육이었다. 황민화운동의 실천은 조선 노동자를 유능한 산업 노무자로 육성하여 황국신민의 자질을 연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주 노무자 훈련 및 취급 요강’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훈련은 ‘도장훈련(道場訓練)’과 ‘일반훈련’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도장훈련은 첫째, 취로 예비훈련이다.⁸³⁾ 둘째, 생활훈련이다.⁸⁴⁾ 셋째, 작업훈련이다.⁸⁵⁾ 넷

82) 협화사업은 ‘일시동인의 성지를 봉체하고 일본에 재주하는 외지 동포의 내지동화를 기조로 이를 보호선도하여 생활의 안정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봉공의 성을 온전히 함과 동시에 내지동포의 상애의 정의를 촉진하고 국민개화의 실을 거둠으로 요지로 실천요목은 황국정신의 함양, 교풍교화, 복지증진, 보호구제, 협화사업의 조사연구, 협화사업 취지의 보급선전등이다.(김민영 1995:132)

83) 취로예비훈련 : 직역봉공 관념의 환기, 직장이해, 기계 및 기구, 작업의 기본조작, 작업상 필요한 용어, 작업복장, 재해방지, 직장위생, 직장의례, 기타 취로에 필요한사항등이다.(김민영1995:135-136)

84) 생활훈련 : 단체생활, 규율훈련, 일상의례, 식사, 입욕, 위생, 정리청소, 휴양오락, 저금, 금 및 수지 계산, 서간의 왕복, 생활개선, 여가지도, 기타 생활훈련 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김민영 1995:136)

째, 황민훈련이다.⁸⁶⁾ 다섯째, 체련(體鍊)이이었다.⁸⁷⁾ 특히 여기에서 도장훈련은 6개월간으로서 3기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제1기에는 입대(入隊)부터 2개월로 작업장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작업개시와 단계적 강화, 기술훈련, 황민훈련, 체련을 실시하였다. 제2기에는 약 2개월간으로 1기 훈련의 강화와 훈련성과를 도모하였다. 제3기에는 약 2개월간으로 성과를 확보하고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으로서 매주 12시간 이상이 정해져 있었다. 일반훈련은 도장훈련을 종료한 자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이는 도장훈련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생활훈련, 작업훈련, 황민훈련, 체련을 실시하였다. 매주 1회 이상은 단체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에 대한 성과를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력 확충을 위한 조선 노동자의 황민화교육은 협화회의 주도로 실시되었다. 노동력이 바닥이 나면서 대처방안으로 실시된 노동력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노동강도의 강화로 조선 노동자를 괴롭혔던 것이다.

2.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1) 식민지민족으로서의 노동차별

조선인들은 식민지 민족으로서 강제동원되어 낯선 이국에서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강제노동자는 민족적인 차별과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노동자들을 사용하여 낮은 임금으로 최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이점이 있었다. 또 침략국으로서 일본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조선을 차별하였다. 그리고 내지인(日本人)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두기 위해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작업환경을 차별하여 철저하게 이용하였던 것이다.(김민영 1995:152) 결국 일본

85) 작업훈련 : 작업조직, 작업규율, 직장보안, 작업지식 및 기술, 작업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김민영 1995:136)

86) 황민훈련 : 황민행사, 수신공민, 일본어습득, 사교의례, 시국인식 및 전시생활, 경신사상 및 종교심의 계배, 정조도야의 관한 사항 등이다.(김민영 1995:136)

87) 체련 : 평이한 훈련, 기초교련, 씨름, 공놀이, 줄다리기 기타 적당한 유희, 기타 계절에 맞는 체련 등이다.(김민영 1995:136)

은 조선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기초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작성하며 노동통제를 하고 있었다.⁸⁸⁾

이처럼 조선 노동자는 민족적인 차별을 받으며 노예처럼 혹사당했다. 이런 민족적 차별에 대한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조선 노동자들의 작업장 배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1939년에 강제동원되어 온 노동자가 1944년에는 약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일본 내에서 조선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시기에 13%~53%로 급증하였는데, 대부분이 석탄광산에 집중 배치되고 있었다. 탄광에서의 민족적인 차별은 위험성이 가장 높은 갱내 작업에 대부분 투입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⁸⁹⁾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을 요하는 막장이나 가스발생, 낙반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집중 배치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김민영 1995:114) 여기에 몇 개의 사업장을 살펴보면 명치광업적지탄광(明治鑛業赤地炭鑛)에서는 1943년 11월에 조선노동자가 1,522명이었다. 이 가운데 갱내 조선 노동자 비율은 1942년 6월에 92.4%이었고, 1943년 11월에 일본노동자의 갱외는 80%이고 조선인은 20%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상반탄광(常磐炭鑛)의 경우는 갱내 노동에 종사하는 채굴공수(採掘工修), 채굴보수가 89.8%를 차지하였다. 일본 노동자는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갱외에서 작업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석장광업소(夕張鑛業所)등 북해도탄광기선주식화사의 경우 채탄부가 72%, 갱내부가 60%를 조선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황국신민화 훈련을 실시하며 군대식으로 노동규율을 시행한 목적은 ‘산업전사(産業戰士)’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하 갱내의 전쟁터로 동원하려는 것이었다.(곽건홍 2002:24) 이런 민족적인 차별은 탈주와 도주로 저항하는 원인이 되었던

88) 일본은 광산과 여러 생산현장에서 광부월보, 노동자임금월보, 광산노무자 총족 상황보, 이주상황조(調), 사상병자월보(私傷病者月報), 재해사상자월보, 노무자 이동상황 속보 등 월보와 반연보(半年報)로 종업원연령조, 연보로 기술자조사표, 광부저축금연보,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기초통계자료로 삼았다.(곽건홍 2002:22)

89) 석탄을 심은 차가 탈선했을 때 고치지 못하면 허리가 휘도록 매를 맞는 것은 일상의 다반사였다. 문자 그대로 군사감옥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시달리면서 임금은 일본인의 반액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인은 일본인이 기피하는 갱내부의 비율이 60~70%정도였고 실제로는 90%이상이었다. 그 절대수에 있어서도 조선인 갱내부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었고, 1943년 초에는 갱내의 경우 조선인·일본인 비중도 적게는 0.5:1, 크게는 1.5:1 정도였다.(김민영 1995:114)

것이다.

둘째, 임금의 민족적인 차별이다. 표면상으로 회사 측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들 사이에 임금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났다. 일본인들의 절반수준이었다는 것이 증언자들의 말이다.⁹⁰⁾ 조선인은 동원되기 전에 월급을 120원 안팎으로 준다고 선전하여 일본에 도착한 후에는 계약과 다르게 50원미만으로 책정해 주었다.⁹¹⁾ 그러나 이것마저도 조선 노동자들에게 강제저축, 보험, 이불대금 등의 물품구입대, 식비, 송금, 고사포헌납금, 협화회 회비, 의료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임금에서 원천 징수 당하였고,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10~20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갱내의 노동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것도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감독이 석탄의 무게를 속이거나, 품질을 낮게 매기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일본인들과 많은 차이가 났었다.⁹²⁾

셋째, 노동강도(勞動強度)에서의 차별이다. 조선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24시간 감시체제 하의 강제노동이었다. 즉 군대식 조직과 규율에 따라 작업장, 작업시간, 기숙사의 노동통제는 자유시간이 전혀 없이 계속 이어졌다. 가시내광업소(歌志内鑛業所)채탄부의 노동시간은 교대하지 않을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이었다. 2교대일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오후 3시에서 오전 1시까지 각각 10시간이었다. 3교대인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각각 9시간이었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었던 것이다.⁹³⁾ 갱내의 경우는 오전 6시에 입갱하면 오후

90) 임금액의 절대액 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임금차이가 별로 없다하더라도 조선인들의 노동 강도가 높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91) 월수입 50엔 이하 노동자는 조선인이 약 75%, 일본인은 약 18%이었고, 70엔 이하 조선인 노동자는 88%, 일본인노동자는 40%이다.(김민영 1995:141)

92) 1943년 홋카이도(北海道)의 어느 탄광에서는 월수입이 50엔 이하를 받는 조선인이 75%이고, 일본 사람은 18%였다. 70엔 이하를 받는 조선인은 88%이고, 일본인은 48%로 조사되었다.(한일문제연구원 1995:159)

93) 작업책임량이 각 노동자에게 부과되어 1일 작업량을 채울 때까지 노동시간은 연장되었다. 북해도의 어느 탄광에서는 두 명의 조선노동자의 1일 작업량은 $4 \times 1.5 \times 1.7\text{m}$ 이었는데 이 작업시간은 17시간이었다. 심지어 20시간이 걸린 것이 있다.(곽건홍 2002:28)

8시나 10시에 밖으로 나왔다. 하루 14~15시간 정도의 작업과 약 5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다.(곽건홍 2002:28)

넷째, 작업환경에 의한 차별이다. 조선 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일본인들로부터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다. 특히 갱내에서 자행된 구타와 작업 중의 사상(死傷)등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노동 재해가 증가하였다. 1944년 삼릉미현탄광(三稜美峴炭鑛)의 사고를 보면 사상자 617명 가운데 낙반사고가 138명(22.3%), 탄차(炭車)에 의한 사고 129명(20.9%), 가스 탄진(炭塵)폭발 132명(21.4%), 가스중독질식 6명(1.0%), 기타 212명(34.4%)이었다. 대부분이 탄광사고는 갱내에서 작업을 하던 조선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죽음과 부상의 위협 속에서 노동을 강요받으며 식민지 민족으로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곽건홍 2002:29) 조선 노동자가 일본인에게 당하는 모욕과 차별 대우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다. 민족 차별로 인한 조선 노동자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일본 노동자와 갈등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은 침략 전쟁이 패전에 가까이 오면서 조선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과 위기의식이 갈수록 고조되었고, 사회 분위기는 더욱더 식민지 민족의 차별 정책으로 나타났다.

2) 군대식 노동통제와 생활

일본은 노동력 강제동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황국근로관(皇國勤勞觀)’을 주장하였다. ‘황국근로관’이란 노동을 통해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상을 내세워 노동통제가 군대식 규율로 이루어졌고, 파시즘적인 이데올로기를 부추기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동원 초기부터 군대식으로 조직을 편제하여 군수산업 생산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동원 전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력 강제동원 모집단계에서 이미 군대식 편제에 따라 훈련이 이루어졌다. 즉 강제동원 노동자가 모집되면 조직을 편성하였는데 훈련대-훈련부대-훈련반-훈련조 등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훈련소의 생활은 기숙사에서 총 6개월을 생활하였고, 1개월은 조선에서 5개월은 일본에서 훈련하였다. 훈련의 내용은 일본어 습득과 정신교육이었다. 한편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에서도 10명

단위로 반을 조직하여 교련하여 그 대부분이 일본의 토목공사장으로 동원되었다.⁹⁴⁾ 둘째, 동원되는 과정에서도 조직은 ‘대(隊)-반(班)-조(組)로 편제되었다. 대의 구성은 5~10명이 1조이고, 2-4조를 1반으로 하고 5개 반의 50~200명의 인원을 1대로 조직하였다. 동원 노동자에게는 단복(團服)이 지급되어 군대식 규율을 강조하는 복장으로 통일하였다.⁹⁵⁾ 셋째, 현지에서 생산현장에 배치되는 기간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다. 훈련 조직은 군대식이고 훈련의 내용은 황국신민화 교육이었다. 훈련대에서 훈련은 지도원이 배치되어 자문위원회를 두었던 곳도 있었다. 또한 훈련 경비는 사업주 측에서 부담하였다. 훈련 사항은 취업 예비훈련, 생활훈련, 작업훈련, 황민훈련, 체련 등으로 구성되었다.⁹⁶⁾ 이것은 조선 노동자가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군대식 훈련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양산하고자 했던 것이다. 넷째, 공장, 광산 등 생산현장 자체를 군사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노동자가 3,000~10,000명을 고용하는 공장은 소장-직장장-계장-조장-반등의 위계질서를 갖는 군대식 조직이었다. (곽건홍 2002:18-21)

조선 노동자에 대한 군대식 노무관리의 책임자는 군인이나 경찰관 출신으로 채용하였다. 특히 노무과장은 군경험자로서 관리능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장교나 하사관 출신이었다. 노무계에는 재향군인 중에서 젊고 완력이 있는 자나 제대한지 얼마 안 되는 활기찬 광부 출신으로 채용하였다.(김민영 1995:130)

이처럼 군대식으로 노동을 통제하는 곳은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기숙사(寮)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약 100명 정도가 합숙하는 기숙사를 정비하여 병영체제로 만들고 료장(寮長)-료계원(寮係員)-보조원(補助員)-실장(室長)-료

94) 1942년 철강 통제회 조선지부는 일철 검이포제철소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조선노동자를 훈련했다. (곽건홍 2002:18)

95) 복장을 단복으로 통일한 것은 도망을 방지하고 이동 중에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였다. 나중에 단복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동 중에 정신훈련, 행동훈련을 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군대식이었다.(노영중 2000:25)

96) 취업예비훈련은 직역봉공(직역봉공) 관념의 환기, 작업상 필요한 용어습득, 직장의례 등이었고 생활 훈련은 단체생활, 규율생활을 강조하였다. 황민훈련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하고 황민행사, 수신봉공, 일본어습득, 시국인식 등의 훈련이었다.(곽건홍 2002:19-20)

원(寮員)등으로 구성하였다.(勞動科學研究所 1943) 또 노무자들은 오전 5시 30분에 기상하여 일을 하고, 오후 5시반에 식사하고 나서 약 2시간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 후에 밤에는 오후 8시에 점호를 취하였다. 군 출신자를 노무 관리자로 채용한 일본은 하루 일과도 군대식으로 만들어 온갖 린치와 폭압을 하며 차별과 억압으로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던 것이다.(김민영 1995:131)

3) 노동력 강제수탈과 생활상

①임금 : 강제동원 노동자가 일본인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탄광에서의 갱외부는 시간급과 성과급제로 임금을 받았다. 시간급제는 작업 시간이 10~12시간을 기준으로 정액일급제로서 ‘임금통제령’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보증 받고 있었다. 성과급제는 작업마다 청부단가(請負單價)가 달랐기 때문에 작업 일수와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였다. 또한 갱내부의 기계, 운전, 궤도, 보안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시간급제로 임금을 받았고, 반면에 전차운전수, 발전소화부, 선탄부는 시간급과 청부를 병행해서 임금으로 받았다. 증산 기간이 있는 기간은 정부의 별도수당이 있었다. 또 상여금이 연2회가 주어지고 하였다.(김민영 1995:139) 또 일당 형태로 지급받는 갱내부는 7원50전을 받았고, 갱외부는 3원50전~4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사 값, 담배 값, 목욕비등을 빼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불과2~3원 정도였다.⁹⁷⁾(김인덕 2002:50) 일본인의 평균일당은 약 4엔이었고 조선인은 그 절반인 2엔 또는 그 이하였다. 이것도 현지에서 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급료는 용돈 정도만 지급되었고, 현금을 주면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노무담당자 회의에서 임금 통제를 강력히 지시하였다.(林えいだい 1982:179-180)

임금 결정은 탄광의 경우 20세 기준으로 한달식비가 13원80전, 건강·단체보험이 1원20전으로 15전을 공제하였다. 10시간 근무자는 이것을 공제하면

97) 임금은 다양했다. 월20원~80원 전후가 가장 많았던 같다. 숙련도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임금의 격차는 있었다. 어떤 때는 9개월 동안 월급을 한번도 직접 받지 못했다.(김인덕 2002:50)

33원이 되고, 12시간 근무자는 42원이 월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적립금, 저금 등으로 월32원 정도가 공제된다. 이렇게 이것저것을 공제하면 혼돈 정도만 남게 되는 것이다.⁹⁸⁾(김민영 1995:142)

②음식 : 강제동원 기간 조선 노동자들을 가장 괴롭게 하였던 것이 굶주림이었다. 또한 동원 노동자가 일본의 강제동원에 저항했던 원인중의 하나도 배고픔일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의 밥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식사량은 절대 식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조차 있었다. 노동자가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채탄을 못 하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주지 않았다. 밥의 상태는 불면 날아갈 정도로 진기 없는 안남미와 잡곡이 전부였다. 차림표가 있었지만 그것도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다.(김인덕 2002:53) 식사량이 처음에는 쌀 5홑2·3작이었는데, 점차 3홑6작8리 로 줄어 생존의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되었다. 탄광 일은 매일 중노동이었기 때문에 적은 분량과 영양가 없는 식사는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었다. 그래서 먹고 자는 것이 하루의 큰 고민거리였던 것이다. 아침밥은 콩깻묵이고 부식은 매실 두개와 소금물에 해초를 약간 넣은 국물이 전부였다. 점심은 도시락을 먹기도 했는데, 두개정도는 먹어야 시장기를 면할 수가 있었다. 북해도탄광에서는 쌀이 6홑까지도 지급되는 곳도 있었지만, 이것이 해방 직전에는 3홑으로 줄어 지급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일본인과 차별하여 배식을 하였다. 또한 북해도에서는 날씨가 추워서 1주일에 정종이 한잔씩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월급을 가지고 술과 담배를 사먹은 경우도 있었다.(김인덕 2002:69) 치쿠호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정삼성(鄭三省)은 극심한 배고픔으로 영양실조까지 걸렸다고 증언하고 있다.⁹⁹⁾ 그는 배가 고파

98) 강인근(姜仁根)은 서울 창전동에서 징용을 당하여 후쿠오카(福岡)의 사이토사키(西戸崎)광업소에 작업장을 배정받고 기숙사생활을 하였는데 1개방에 7~10명이 함께 생활을 하였다. 오전6시에 기상하여 식사와 간단한 운동을 하고 7시30분에 탄광으로 향했다. 위험한 막장일을 하다가 오후 5시30분경에 일을 마치고 점호를 받았고, 근무형태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갱내부에서 작업을 하면 하루일당이 7원50전이고 갱외부는 3원50전~4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것을 식사값, 담배값, 목욕비 등을 제하고 나면 본인에게는 2원~3원50전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일체의 자유도 없었고 항의할 수도 없이 그저 일만 할 뿐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는 거의 일을 시키지 않아서 기숙사에서만 생활을 하였다.(김인덕 2002:73)

99) 정삼성의 증언 “아침밥은 바닷물로 끓인 국과 김치, 반찬이라고는 그것뿐이지요. 도시락은 아침밥

서 식당에 몰래 들어가 밥을 훔쳐 먹다가 들켜 유치장에 가서 가혹행위를 당하기 하였다. 어떤 때는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숙사 주변의 고구마 밭에 가서 몰래 고구마를 캐먹기도 했었다.(林えいだい 1982:90) 조선 노동자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식사량이 적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급 과정에서 중간착취가 심했던 것이다.¹⁰⁰⁾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급품을 노무계에서 갈취하고, 또 중간에 경찰이 개입하여 가로채는 일이 다반사였다.(김인덕 2002:54)

③기숙사 : 노동자 생활은 대부분이 료(寮)라 하는 기숙사에서 이루어졌다. 베니어판이나 나무로 지붕을 만들어 조잡하게 지은 건물이었다. 이런 건물의 대부분은 군사용 가건물, 바라크, 나가야, 함바라고 하는 곳으로 바닥이 마루로 되어있었다. 1개방에 7~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밤에는 빈대가 들어오거나 쥐가 들어와서 옆 사람의 바지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다.(林えいだい 1992:82) 특히 바라크로 만든 판잣집에는 2단 침대를 사용한 곳도 있었고, 바라크 막사에서는 가마니를 깔 마루에서 지내거나 운동장 주변의 막사형태에서 기거하기도 하였다.¹⁰¹⁾ 조선 노동자의 기숙사는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한 수용 시설이나 다름없었다. 기숙사의 구조는 관리 통제가 편하게 건물 한쪽을 통로로 만들거나 중앙을 통로로 만들어 양쪽에 방을 만들었다. 감옥과 같은 형태의 숙소에는 형제나 친척 및 동향인을 같이 두지 않았으며, 방과 방 사이를 차단하여 옆방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였다.(김민영 1995:145-146) 기숙사 생활은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을 따로 나누었고, 일반 노동자와 강제동원 노동자를 나누어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였다. 난방은 일본의 전통 방식인 다다미방이었고, 온돌사용은

남은 것으로 손수 담았는데 안남미와 보리쌀이 반씩 섞인 전혀 끈기가 없는 밥이지만, 먹을 도시락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점심 휴식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탄가루가 마구 날리는 곳에서 먹으니 밥은 순식간에 검정깨를 뿌린 것처럼 새까맣게 되었죠, 저녁밥은 땀땀이 새끼 한 마리가 접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강압적인 탄광이라서 식사는 형편없는데다가 심한 노동으로 반년 쯤 지나니 영양실조로 각기병에 걸렸다.”라고 증언했다.(林えいだい 1982:112-113)

100) 실제로 탄광의 현장소장이 쌀과 콩을 가지고 가서 팔아먹다가 조선인 광부들에게 들켜서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다.(김인덕 2002:54)

101) 창녕군의 노동력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서는 『채인돌-태평양 전쟁 중 창녕군에서 강제연행당한 생존자증언집-』, 강제연행생존자증언집편집위원회, 2000/7을 참조.

절대 금지되어 있었다.¹⁰²⁾ 다다미방 8조크기의 방 하나에 6~12명이 함께 생활하고, 10자 크기의 방에는 20명이 함께 있어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고, 침구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인덕 2002:51)

기숙사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노무계가 정기적으로 감시 순찰하였고, 아사부 아카사까 탄광이나 호오슈우 탄광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건물에 10m정도 높이로 감시탑을 만들어 감시하기도 하였다.(林えいだい 1982:93) 기숙사 생활하는 조선 노동자의 편성은 생산반, 후생반, 연성반, 체육반, 비상 경비반 등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일본은 이런 조직을 이용하여 황민화교육을 시키면서 조금이라도 짬을 주지 않았다. 즉 “단체훈련교화 및 신민의무를 함양한다.”는 구호 아래 노무계원이 전속되어 기상에서 취침까지 일과를 철저히 통제하였다. 아침에 기상하면 옥내의 청소-국기계양-궁성요배-신궁요배-식사-출근-퇴근-식사-일본어교수-작법 및 일본 풍습교수-취침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일정은 자유시간이 전혀 없었다. (김민영 1995:146) 기숙사 생활은 사감이 모든 통제와 감시를 하며 일요일의 세탁시간 외에는 틈이 거의 없었다.¹⁰³⁾

3. 소결

이상과 같이 강제동원 노동자의 노무관리와 노동실태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로 노무관리체제에 관해서는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을 파악해 놓고 노무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동구조는 군대식으로 편성하여 철저히 군대식 규율로 관리하였다. 또한 생산력 확충은 협화회를 통한 통제와 훈련으로 노동력 부족을 만회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노동력 강제동원의 동원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다. ①식민지 민족으로

102) 김민영은 자기의 저서에서 합숙소의 크기가 3평 남짓한 방에 16명을 수용하여 힘든 생활을 했고 집단 숙소의 경우 20평 남짓의 방에 80명이 수용된 곳도 있다고 밝혔다.(김민영 1995:147)

103) 탄광측은 일본말을 할 줄 아는 광부를 선발해서 기숙사 사감 또는 지도원으로서 채용했다. 노동자의 파이프역할을 했던 사감은 린치를 집행하기도 했다. 사감과 지도원이라는 관리체제는 기숙사 생활과 채탄양면에 걸쳐서 동포의 분단지배에 이용하였다. “동포인 조선인 사감과 지도원에게 얻어맞을 때만큼 분한 때가 없었다.”고 증언할 정도로 조선노동자들을 철저히 관리하였다.(林えいだい 1982:93)

서의 노동 차별 측면에서는 작업 배치 과정에서부터 일본 노동자들과 민족적 차별을 하였고,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두며 그마저도 각종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당하였다. 작업 환경과 노동 강도 면에서도 차별을 두고 관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②군대식 노동 통제 측면에서는 노동력 강제동원 전·후 과정을 통해서 군대식으로 편제하여 통제하였다. 그리고 노무계에는 군인이나 경찰관 출신을 채용하여 강압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③노동력 수탈에 대한 생활상은 어떠했는가에 관해서였다. 먼저 급료 측면에서는 현금을 주면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푼돈만을 지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식과 식량이 배고픔으로 인해 강제동원 기간 가장 힘들게 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일본에 저항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음식의 질적 저하와 노동강도에 비해 절대량이 부족한 식사는 생존하기 위한 사투였던 것이다. 기숙사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베니어판으로 조잡하게 만든 기숙사에서 다다미를 깔고 단체 숙식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노무계가 정기적으로 감시하거나 순찰하면서 일과를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처럼 노동력을 수탈당하는 조선인들은 무모한 침략 전쟁에 희생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V. 일본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저항과 귀환

이 장에서는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일본의 강제동원에 맞서서 저항했던 실태와 해방 후의 귀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도주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분쟁의에 의한 저항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셋째, 비밀결사운동에 의한 저항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넷째, 해방 후 조선 노동자의 귀환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도주에 의한 저항

강제동원 노동자의 가장 일상적인 저항 형태는 이탈이나 도주였다. 소극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주(逃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저항했던 태업이나 파업도 저항수단이었지만 도주는 손쉽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도주는 동원 초기 과정에서부터 징용명령을 받고도 출두하지 않고 ‘기피(忌避)’하는 형태가 많았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등 남부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다. 일본은 징용기피자의 검거율이 30%대에 머무르자 전국에 수배령이 내리기도 하였다. (변은진 2002:46) 이런 징용 기피현상은 동원과정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도주하여 징용을 거부하였던 것이다.¹⁰⁴⁾ 이처럼 도주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본의 징용명령에 정면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그러면 동원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도주하였는지 살펴본다. 첫째, 강제동원되는 현지에서의 도주이다. 이 형태는 고향의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는 것이다. 또 지리적 상황을 이용해 산세가 험한 깊은 산속에 숨어있거나 다른 지방으로 피하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노영중 2000:34) 둘째, 기차로 강제동원되는 과정에서 도주이다. 이 형태는 기차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또는 정차 중일 때 기회를 엿보다가 플랫폼의 반대쪽으로 도주하였고, 물을 마신다는 핑계나 용변을 보겠다는 구실로 기회가 생기면 도주하였다. 목숨을 건 위험한

104) 동원과정 중에서 도주하는 형태는 첫째 : 선도(鮮逃)는 조선내로 도주한자, 둘째 : 내도(內逃)는 일본으로 건너자마자 도주한 자가 있었다.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은 달리는 열차에서 창문을 이용해 뛰어 내리기도 하였다.¹⁰⁵⁾ (노영중 2000:35) 셋째, 기숙사에서 도주하는 경우이다. 이방법은 가장 흔한 형태로서 숙박 중에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도주하는 것이다.¹⁰⁶⁾ 넷째, 주위상황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이다.¹⁰⁷⁾

이렇게 동원 과정에서 도주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실제로 징용 현장에 도착한 조선 노동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943년도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광업소가 61%, 헤이와(平和)광업소가 64%, 호로나이(幌内)광업소가 54%, 가라치(空知)광업소가 72%, 신희로나이(新幌内)광업소가 52%로서 대체적으로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변은진 2002:46) 수송 과정에서 많은 도주자가 발생하자 일본은 1944년 9월에 일본 석탄통제회 경성출장소에서 ‘별도 협의사항’을 만들어 도주 방지책을 만들었다.¹⁰⁸⁾ 그런데 도주율이 60%대였다는 것은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거부와 기피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지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도 도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일본으로 징용당한 후에도 도주는 저항이라는 의사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105) 1944년6월28일 정읍군에서 노동력 강제동원되어 가던 32명이 창문을 이용해 뛰어내리기도 하였다.(釜山往復 1944:0169, 노영중 2000:35재인용), 김촌광선(金村光善44세)은 황해도 벽성군에서 강제동원되어 가다가 수원 역 부근에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오른쪽다리에 부상을 입었다.(釜山往復 1944:0648, 노영중 2000:35재인용)

106) 정선군에서 강제동원되어 체천에서 숙박할 때 16명이 도주하였다.(釜山往復 1944:0190, 노영중 2000:35재인용) 장수군에서는 여수에서 숙박할 때 11명 집단 도주하였다.(釜山往復 1944:0167-0168, 노영중 2000:35재인용) 진도군에서 강제동원되어 목포에서 숙박 중 16명이 도주하였다.(釜山往復 1944:0170, 노영중 2000:35재인용)

107) 완주군에서 강제동원되어 가는 중 공습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이용해서 20명이 집단 도주하였다.(釜山往復 1944:0169, 노영중 2000:35재인용) 고흥군에서는 북선행으로 진행되는 160명의 조선인과 같은 날 수송되는 혼잡을 이용하여 9명이 도주하였다.(釜山往復 1944:0190-191, 노영중 2000:35재인용)

108) 협의사항 1)차내 도주방지 : 열차 진행 중 또는 정차중 도주방지를 위해 다음에 유의하여 감시에 충분히 협력할 것, 명령 없이 정차 중 하차를 금지할 것, 차의 보급은 인솔자가 실시할 것, 탄광노동 체험자 또는 재도항자를 조사 할 것, 거동이 의심스러운 자를 조사할 것, 진행 중 차창을 여는 자, 용변 등에 주의할 것, 승강구에 서있는 것을 금할 것, 정차 중 흡 반대 측에 주의 할 것, 2)인제지에서 도주방지 첫째, 차내에서 용변을 보지 못해 하차 직후 용변자에 주의할 것, 둘째, 인제사중, 검역, 숙소로의 행진, 인솔, 외출 등 단체행동의 경우 인솔자 중 1인이 반드시 그 대를 벗어나 근거리에서 따라오면서 전면적 감시를 할 것, 셋째, 일용품 및 담배 등은 일괄 구입 지급할 것, 넷째, 숙소에 교대제로 감시원을 배치할 것, 등이다.(石炭統制會 京城出張所 1944, 변은진 2002:47 재인용)

었다. 도주는 개인적인 차원보다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도주율이 점차 높아져서 최고 66%까지 오르자 일본은 깊은 우려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변은진 2002:48) 그래서 제일조선인을 단속 감시하기 위해 만들었던 협화회를 통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즉 협화회원장(協和會員章)을 소지하지 않는 노동자는 어느 곳에서도 취업을 못하게 하는 ‘협화회원장제도(協和會員章制度)’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비슷한 노동, 생활 조건이었다. 협화회는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가혹한 노동과 훈시, 훈련, 황민화 교육, 사업장 내의 삼엄한 감시체제, 도주하다 붙잡힌 자의 잔인한 구타행위 등을 통해서 도주를 저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도주해 놓고 보자는 것이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생각이었다. 강제노동자들의 도주 원인¹⁰⁹⁾은 작업에 대한 공포, 과도한 노동, 응모 당시의 노동조건과 실체가 다른 것 등이 도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전기호 2001:24)

도주는 분쟁의 투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저항이었고, 때론 목숨을 담보한 투쟁이었다. 일본이 도주에 대해 갖가지 방지책을 내놓으면서 도주가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모집방식 때의 경우에는 도주율이 50%선을 넘고 있었다. 이것은 사업장 사고로 인한 죽음의 공포, 가혹한 강제노동,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조선 노동자를 도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일본으로 도항 이후 약 6개월 정도가 도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주율은 산업부문, 지역에 따라 다르고 노동 강도가 다른 탄광, 토건 혹은 도시와의 인접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도주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생산성도 일본 노동자들에 비해 조선 노동자들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원인은 대부분이 농민 출신으로 탄광과 공장 및 사업장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또 잦은 직장 이탈과 도주, 태업과 파업이 원인이 되어 일본인 작업능률의 50~70%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前田一 1943:134, 변은진 2002:48 재인)

109) 內務省 警保局이 도주의 원인을 내놓은 것을 보면 ①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지도항의 수단으로 응모한 것, ②타고난 불량성에 기인한 것, ③직장의 사고 등으로 작업에 공포를 느낀 것, ④타인의 선동 유혹에 의하여 직장을 포기, 자유노동자로 되고자 하는 것, ⑤작업의 과로를 혐기하는 것, ⑥사회생활을 동경하는 것, ⑦응모당시의 노동조건과 실체가 상이한 것 등이다.(內務省 警報局 1942, 전기호 2001:24 재인용)

용)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생국은 1942년 8월 6일에 ‘이입조선노무자 도주방지대책 요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노동자 훈련이나 노무관리가 강화되었고, 브로커와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방지 대책이 강화되자 기타큐슈(北九州) 고카시(古河市) 다카시(高田) 광산과 일본 광업회사인 오미네(大峯)광산에서는 도주했던 노동자를 검거해서 가혹행위 끝에 노동자가 죽었던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폭동이 일어나 군대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변은진 2002:50) 도주 노동자가 자주발생하면서 협화회 업무는 노동자 단속을 위해 날이 갈수록 협화사업이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이입 노동자들의 도주는 일본이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집단 도주로 발전하였다. 또 그 도주형태는 동향 출신끼리 조직적으로 탈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예를 들면 오카야마현(岡山縣)에서는 1943년 7월 3일 충북 진천 출신인 청송제순(淸松在淳)등 23~24세 가량의 직공 4인이 도주하였고, 경기도 안성 출신인 김영석(金永錫) 등 직공 4명이 도주하는 일도 방생하였다. 또 후쿠오카현(福岡縣)의 모 탄광에서는 징계에 불만을 품고 37명이 사감실을 부수고 도주하였고, 도야마현(富山縣)에서는 반장 이하 15명이 집단 도주를 계획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있었고, 야마구치현의 우베(宇部)탄광에서는 기타훈련 종료 후 첫 외출에서 대장 이하 반수(半數)가 도주한 사례가 있었고, 이 외에도 도주형태의 저항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다.(변은진 2002:52)

도주는 군수 생산력 증강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경제적, 군사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즉, 군수 생산력 확충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 되었고, 생산력 저하운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력 강제동원에 맞서 도주로 저항하였던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제(反帝), 반전(反戰)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변은진 2002:48)

2. 분쟁의(紛爭議)에 의한 저항

도주와 함께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은 분쟁의(紛爭議)라고

볼 수 있다. 강제 동원되어 간 대부분의 노동자는 농촌 출신으로써 광산과 공사장의 노동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민족으로서 차별을 받으며 위험한 작업과 가혹한 노동을 견뎌야 하는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의가 끊이지 않았다.¹¹⁰⁾

이렇게 분쟁의가 일어난 배경에는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폭압적인 노동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40년 4월~1941년 12월 사이의 ‘특고월보(特高月報)’에 나타난 분쟁의의 원인을 종합해 보면 노동 정책의 가혹성이 분명히 들어난다. 첫째, 대우 불만으로 일어난 경우로서 약 32% 정도 된다. 둘째, 언어 감정의 차이에 의해 일어난 경우로서 약 30.5%에 해당한다. 셋째, 계약 조건 불만으로 일어난 경우로서 약 14.5%이다. 넷째, 재해 발생으로 일어난 경우로서 약 8.1%이다. 기타 경우의 원인이 약 15%로 나타나고 있다.(강만길 1997:246) 이처럼 분쟁의 원인은 혹독하고 잔인한 노무 관리와 의·식·주의 배급문제, 계약만기에 따른 협박과 회유책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것이 분쟁의 전체의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 당국은 조선인의 분쟁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다.¹¹¹⁾ 실질적으로 분쟁의(紛爭議)를 일으켰던 노동자들은 혹독한 노동과 배고픔에 대한 생존적인 반발이었다. 즉 가혹한 노무관리와 배고픔을 탈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열망이었던 것이다.

분쟁의 원인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모집방식과 관 알선방식으로 인해 일본에 이주한 1942년과 1943년의 동원수는 각각

110) 분쟁의를 일으키는 조선인들은 저항과 투쟁의 목적이 관철되든 안 되든 간에 조선인 노동자만이 일방적인 희생을 당했다.

111) 內務省 警保局이 지적하고 있는 원인분석을 보면 1) 응모시 노동조건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실제와 다른 것, 2) 언어습속의 상위에 의한 오해, 3) 갱내작업을 위협시키는 것, 4) 민족적 편견에 따른 사물에 대한 곡해, 5) 경제통제, 이를테면 식량배급규정, 임금통제령 기타에 대한 몰이해, 6) 위험방지, 복리시설의 완비를 요구하는 것, 7) 사소한 일을 과장해서 듣고 일반이 부화뇌동하는 것, 8) 사업주 측에서 그들을 산업전사로 우대하는데 부추겨져서 우쭐해진 것, 한편 지도자 측의 일부에서도 협화사업의 수행 상 잘못된 내선일체의 관념에 사로잡혀 그 지도를 면탈한 결과 공연히 그들을 우쭐하게 만든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전기호 2001:11)

146,473명과 154,181명으로 관 알선에 의한 동원이 약간 많지만 양자간에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1942년의 분쟁의(紛爭議)는 모집이 203건이고 관 알선이 92건이었다. 1943년의 분쟁의(紛爭議)는 이와 반대로 모집이 50건이고, 관 알선이 296건으로 나타난다. 동원자수는 비슷한데 분쟁의(紛爭議)는 관 알선 쪽이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의 성격차이가 있었다.¹¹²⁾모집보다 관 알선의 경우가 강제성이 강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조선노동자의 불만도 훨씬 많고 결과적으로 분쟁의도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에 체류한 기간과 깊은 연관이 있다. 모집이 관 알선에 비해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길어서 일본의 노동과 생활조건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분쟁의(紛爭議)를 일으켜도 별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자포자기한 것이다. 관 알선은 체류기간이 짧아서 갑자기 바뀐 열악한 노동조건에 견딜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많았던 것이다.(전기호 2001:20)

다음은 내무성 경보국이 작성한 분쟁의 발생건수와 참가 인원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2>사업장내 분쟁의 발생건수 참가인원

년 수	건 수	참가인원(명)
1938	166	3,650
1939	153	9,630
1940	338	23,383
1941	154	10,143
1942	295	16,006
1943	346	16,693
1944	129	10,029

자료 : 1938~1942년은 內務省 輕保局, 「社會運動の狀況」

1943년은 內務省 輕保局, 「特高月報」

1944년은 司法省 「治安維持法についての 報告」

朴慶植編 1975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4卷 三一書房(전기호 2001:7 재인용)

112) 모집은 형식상으로는 자유응모형식을 취했다. 당시의 사회여건과 환경이 경제적 꺾임에 의한 응모, 일본의 순사나 면직원이 가지는 위압적인 말, 황민화정책에 의한 정신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관 알선은 납치연행과 같은 신체적 구속에 의한 강요된 연행이었다.

주 : 1939년까지는 재일조선인 전체의 노동분쟁의. 1940년 이후는 강제연행 된 노동자에 의한 노동분쟁의와 내선인 투쟁사건을 합계한 수치임. 필자는 이 합계를 사업장내 분쟁이라고 부름.

1940년도의 수치는 1939년 이후 강제연행된 이주조선인노동자의 사업장 내 분쟁의를 1940년 말까지 누계한 것임.

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년도는 1939년 7월 이후 강제동원된 노동자의 분쟁의(紛爭議)를 1940년 말까지 합계한 것이다. 분쟁의가 338건이고, 참가인원이 23,383명으로 갑자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동원된 숫자를 감안하면 분쟁의(紛爭議)는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또 1944년에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것은 재판에 회부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추정된다.(전기호 2001:8)

분쟁의(紛爭議)를 일으켰던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먼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충돌이 생긴 경우로 조선인 노동자 402명이 참가하여 일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중상과 12명의 경상을 입고 조선 노동자 11명이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特高月報 1943:86-89, 강만길 1997:247 재인용) 또 일본인 감독이 조선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200명의 노동자 중 70명이 일본인 감독을 집단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주모자는 검찰로 송치된 일도 있었다.(特高月報 1943:86-88, 강만길 1997:247 재인용) 또, 어느 광산에서는 50명 노동자 전원이 대우개선을 요구하며 일본인 수위를 폭행했다가 진압하러 나온 경찰관의 칼을 빼앗은 사건으로 50명 전원이 검거되어 그 중 22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송치된 일도 있었다.(特高月報 1943:75-76, 강만길 1997:247 재인용) 또한 1944년 9월 사할린의 토로탄광에서는 3천명의 동원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분쟁의(紛爭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¹¹³⁾ 이 밖에도 수 없이 많은 분쟁의가 있었던 것

113) 1944년9월 사할린 토로탄광의 집단 분쟁의 요구조건을 보면 1)기간연장은 조선총독부에 사업자측이 제출한 기간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그리고 서신 왕래도 인정하라, 2)기간만료자들의 지장을 전환배치하지 말라, 3)기간 만료자들의 급여를 조속히 정산하고 국민저금통장을 본인에게 넘겨주고 동시에 왕복여비를 규정에 따라 지불할 것, 4)숙소설비를 개선할 것, 작업복을 지급할 것, 식사를 개선할 것, 휴일날의 외출과 자유행동을 허가할 것, 작업시간을 단축할 것, 병자에 대한 의료를 개선할 것, 이상의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 등이다. (林えいだい 1992:118-119)

으로 알려지고 있다.

격심한 육체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만과 불평은 항상 부족한 식사량과 질적인 저하였다.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파업과 태업 등 집단적으로 분쟁의(紛爭議)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단속 대책을 강화하며 탄압으로만 일관했던 것이다. 즉 조선 노동자의 작업 감독을 군대 출신이나 경찰관 경력을 가진 자로 채용하였고,¹¹⁴⁾ 이처럼 단속 대책도 탄압과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 태업을 일으키는 자는 주모자, 선동자를 본적지에 송환, 또는 불순분자를 철저히 소탕하는 등 단호한 조치로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1944년 12월 귀족원(貴族院)의 사상조사위원회(思想調査委員會)에서는 일본인과 감정대립, 집단폭행, 파업, 태업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일본은 분쟁의 단속을 더욱 강화되었고, 일본과 기업 측은 기존방법을 겸하여 조선 노동자 중에서 회사 측에 협조적인 자를 만들었다. 더욱 단속방법은 고도화되어 노동자들 사이를 서로 이간시키고 단결을 못하게 막는 등 온갖 교활한 방법을 강구하였다.(김민영 1995:165) 일본은 분쟁의(紛爭議)를 일으키는 조선인을 ‘불량선인(不良鮮人)’이라 불렀으며, 그 규정을 ‘규칙위반 상습자, 도주벽이 있는 자, 흉포성이 있는 자, 나태·상습도벽·선동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특별훈련소¹¹⁵⁾라는 곳에서 2개월 정도 훈련을 통해 사상개조(思想改造)를 실시하기도 하였다.(변은진 2002:44)

114) 군대에서 제대하여 노무계 감독이 된 어느 일본인의 회고를 보면 “노무사무소에는 여러 가지 사형(私刑)도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 목도는 부러지지 않게 뿔나무로 만든 굵은 것이었고 보통은 가죽 채를 썼다.”(林えいだい 1989:221) 또 하나의 예는 광업소 복리과에 근무한 일본인은 “광부의 훈련소에 갔더니 조선인 한사람이 반항했다하여 노무계의 감독이 사무실 콘크리트 위에 꿰어앉히고 바리칸으로 머리를 열십자로 꺾고 물을 끼얹으며 쇠로 만든 솔로 문지르고 있었다.”라 하여 일본인 감독들이 얼마나 사형이 심했는지 말해주고 있다.(林えいだい 1989:484)

115) 어느 광업소에서는 특별훈련소를 설치하여 청심료(淸心寮)라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조선인 광부를 299명을 수용하여 도주벽이 있는 사람 205명, 폭행6명, 태업벽28명, 소행불량11명, 도벽7명, 도박상습 18명, 선동벽 17명 불순종4명, 규칙무시 3명 등으로 불량선인의 훈련을 하였는데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었다.(前田一 1943:110-114, 변은진 2002:44 재인용)

3. 비밀결사운동에 의한 저항

노동력 강제동원에 저항하는 방법 중에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은 민족적인 조직을 가지고 저항하는 독립운동이었다. 강제동원 된 노동자 중에는 민족 독립운동이란 목적을 가지고 광산, 공사장, 사업장으로 배치되어 조직적인 폭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¹¹⁶⁾ 그리고 민족운동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에게 확대시키기 위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강만길 1997:259) 더구나 국민징용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중에는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도 동원 되었지만, 민족사상 고취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이 입 노동자 속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특징도 일본 패망이 가까워오면서 주도층이 학생과 지도자층에서 노동자층으로 점차 바뀌어갔고, 그 성격도 폭동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¹¹⁷⁾ 그래서 특고경찰(特高警察)은 이들 노동자들의 동향을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만길 1997:259) 또 각 사업장에서도 이런 징용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주시하였고, 이들은 강점기 말에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심상치 않는 움직임에 대해 특고경찰을 비롯하여 일본당국은 ‘민중의 폭동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1944년~1945년경에는 일본 본토가 연합국에 의해서 공습될 것이라는 것이 가시화 되면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일본인들은 회사 출근율이 감소하거나 안전지대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 폭동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유연비어가 난무하였다. 즉 조선인에 의해 “군사기밀누설이 누설 된다”는 설과 “주요 장소의 폭격은

116) 처음부터 민족독립이란 목적으로 도일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가사키 협화훈련대 특별청년회’의 광전병규, ‘사가현 조선인 노무자 민족주의그룹’의 풍전실언, ‘김일성대’의 송본일철 등이 있다.(변은진 2002:60)

117) 조선의 독립운동의 대부분이 1941년7월까지만 해도 일본유학생이라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일본당국이 언급하였다.(昭和思想統制資料 1981:395, 변은진 2002:54 재인용) 1943년5월에는 “조선독립운동이 종래 일본 재류학생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많았음에 비해 최근 자유노무자, 공원(工員) 등에 의해 행해진 것이 많아 진 것”을 언급했다.(昭和思想統制資料 1981:489, 변은진 2002:54 재인용)

조선 스파이(spy)가 있는 탓이다”라는 설이 있었던 것이다. 후방지역에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조차 아군이 아니라 연합국과 뜻이 같은 적군으로 여겼던 것이다.

민족운동의 주도층이 노동자로 옮겨가면서 더욱 폭력적인 형태로 바뀌어갔다. 주요 비밀결사단체들의 활동무대 역시 재일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大阪)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조직 활동을 전개하였다.¹¹⁸⁾ 강제노동자 대부분은 강제노동의 혹독함과 차별대우 등에 반감을 품고 민족적 감정으로 비밀결사운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같은 고향 출신끼리 참가하였고, 또 공장, 탄광의 숙소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을 하거나 저항에 준비하였다.(변은진 2002:60) 당시 비밀결사단체들의 노선에도 특징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즉 ‘아마가사키 협화훈련대 특별청년회’, 동경에서 임원갑이 조직한 ‘조국위안회(祖國慰安會)’, 문종달(文鍾達)이 중심이 된 삿포로지역의 ‘토건그룹’ 등이 주장한 노선과 활동은 무력투쟁을 통한 독립이었다. 그들은 결정적 시기에 무장 봉기를 주장하며 패전해 가는 상황에서 무장 독립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변은진 2002:61) 즉 단순히 강제노동에 대한 불평불만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조선독립에 의해서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그것은 무력 투쟁에 의한 민중봉기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4. 해방 후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귀환

1945년 8월 15일에 패전을 맞이한 일본은 강제동원 노동자에게 본국에 돌아가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였다. 일본과 당시 GHQ¹¹⁹⁾는 조선 노동자의 구분을 노동력 동원정책에 의해서 도일(渡日)한 ‘계획

118) 강점기말에 조선인노동자가 조직한 대표적인 비밀결사단체는 조선독립청년단, 아마카타쟁부중심 ‘공산민족주의그룹’, 사할린의 직공그룹, 조선독립혈맹그룹, 교토 토공민족주의그룹, 조국위안회, 아마가사키 협화훈련대 특별청년회, 오사카 조선인직공 민족주의 그룹, 사가현 조선인노무자 민족주의 그룹, 삿포로 ‘토건그룹’, 김일성대, 명우강좌회, 아사히카와 토공그룹, 북성조그룹, ‘독립본부’-조선민족통일동맹(8.15후)등이다.(변은진 2002:58-59)

119)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s for the Allied Powers) 일반적으로 GHQ 또는 SCAP라고도 한다.

이입노동자(計劃移入勞動者)’와 그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면서 노동했던 ‘자유노동자(自由勞動者)’로 구분하고 있었다. 처음 이들의 귀환정책은 강제동원된 ‘계획이입노동자’를 1945년 내에 모두 귀환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귀환정책¹²⁰⁾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실하여서 상황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였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는 일본 정부나 기업주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투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귀환하는 자가 많았다. 이처럼 일본의 초기 귀환정책은 귀환자 보호나 귀환경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귀환할 때 전제 되는 노동자의 임금과 기타 미지불된 임금 청산에 대한 정책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 노동자는 치안상의 이유를 들어 ‘귀찮은 존재’로 보고 우선적으로 송환하려는 의도밖에 없었다.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서 GHQ가 1945년 11월 1일에 구체적인 귀환정책을 세울 때까지 일본 정부의 귀환정책은 ‘노동자우선수송’라는 방침으로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 뒤에 총괄적인 귀환정책이 수립되어 진 것이 1946년 3월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강만길 외 2002)

이처럼 해방과 함께 찾아온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귀환 희망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시 귀환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자료를 다음 <표 13>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조선 귀환자를 1948년까지 백분율로 구분하였고, 또 이것은 귀환한 총인원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귀환 숫자를 알기에는 일정의 한계점도 있어 보인다.

<표 13> 국외 지역별 귀환자 수(1945.8~1948.12)

지역	인구(명)	%	지역	인구(명)	%
일본	1,117,819	91.6%	호주	3,051	0.2%
중국	59,372	4.99%	오кина와	1,755	0.19%
만주	10,572	0.9%	남양군도	14,058	1.29%

120) 귀환정책의 시기적 구분에서 와그너의 경우는 제1기를 자발적 집단출국시기(1945.8.15~11.30), 제2기를 인양 원호국을 통한 귀환 시기(1945.12~1946), 제3기를 정식 인양정책 종료 후 GHQ통제하의 귀환(1947.1~1948.8.15)으로 보고 있다. 또 김영달의 경우는 제1기를 자주귀환기(1945.8~1946.3), 제2기를 계획송환기(1946.4~1946.12), 제3기를 심사귀환기(1947.1~1950.6)로 나누고 있다.(강만길 외 2002:69)

대만	3,440	0.3%	기타	7,018	0.6%
하와이	2,642	0.2%	소계	1,220,627	100.0%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1945, 『경제연감』, 강만길 외 2002:71 재인용

위의 <표 13>에서 보면 일본에서의 귀환이 91%를 넘고 있다. 그것은 조선 외로 강제 동원되었던 곳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만주·남양군도는 주로 군속이 동원되었던 곳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948년 4월까지의 귀환자가 937,323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의 94%가 1945년 9월부터 1946년 5월 사이에 귀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밀항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군정(美軍政)에서 통계 조사한 것을 보면 1948년까지 귀환자는 약 100만 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 1945년 12월까지 67~80%가 귀환한 것으로 나와 있다.(강만길 외 2002:72)

일본은 1945년 9월 1일에 강제 노동자 송환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앞에서 전술하였듯이 일본 정부는 ‘계획이입노동자’와 ‘자유노동자’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래서 1945년 8월 26일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이입노동자’는 거의 모든 노동자가 하루 빨리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노동자’는 과반수가 일본에 재류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태기 1997:90, 강만길 외 2002:75 재인용) 일본은 이 조사에 근거하여 ‘조선인 집단이입 노동자 등의 긴급조치에 관한 건’을 각 지방 장관 앞으로 통첩(通牒)하고 ‘계획이입노동자’의 귀환수송에 구체안을 내었다. 이 통첩은 전국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졌다. 그 의도가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경계하려는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귀환 수송 방침을 세우는 것이었다. 즉 조선인 실업자가 증가하여 난동부릴 것을 염려하여 미리 예방하려는 회유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GHQ는 1945년 11월 1일에 ‘일본점령 및 관리에 관한 초기 기본지령’을 내려 조선인의 송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¹²¹⁾ 그러나 여전히 수송에 대한

121) ‘일본점령 및 관리에 관한 초기 기본지령’ : 조선인을 해방인민으로 처우해야한다. 조선인은 일본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직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적국인으로 취급해도 된다. 조선인이 희망하면 규칙에 따라 귀환할 수 있다.(강만길 외 2002:81)

것은 일본 정부가 맡고 있었다. 해방 때부터 시작된 이입노동자의 귀환은 1946년 3월 상순에 거의 종료되었다. 조선으로 이입 노동자의 귀환은 거의 끝났지만, ‘일반 조선인’에 대한 귀환은 계속하여 종용하고 있었다.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 행정 관청에 귀환 의사를 등록하는 ‘등록인양제’가 시작하였다. 이 결과 귀환 희망자는 670,593명으로 나왔다. 그러나 1946년 12월 일반 조선인의 계획된 귀환이 끝났으나 실제 귀국한 인원은 희망 등록수의 6~7%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질병 등의 이유로 귀환하지 못한 경우나 해외에서 들어와 미처 귀환하지 못한 경우를 ‘특수 사정자’라고 하여 1947년 이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서 허가받은 자만 송환하였다. 그 뒤 ‘특수 사정자’의 귀환은 몇 번씩 중단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1950년까지 계속되었다.(강만길 외 2002:82)

강제동원 노동자는 해방 직후에 각 사업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조선인을 일본 정부는 해고하지 말고 그대로 고용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의해 1945년 9월 초까지는 비교적 평온히 각 사업장에서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대부분의 기업은 조선인 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조선인들은 실업 상태가 되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때부터 각 사업장에서는 생존과 귀환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투쟁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투쟁인 ‘습격’이 가장 많았고, ‘교섭’, ‘파업’등의 다양한 형태로 생존과 귀환을 쟁취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나갔다.

일본은 1945년 9월 20일에 각 지방 행정 관청에 인양민사무소(引揚民事務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귀환자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또 GHQ가 ‘인양항(引揚港)’으로 지정한 곳에 지방인양원호국(地方引揚援護局)설립하였다. 지방인양원호국의 업무는 일본 각지에서 모인 귀환자를 승선할 때까지 수용하고, 승선 수속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 일본의 ‘인양항(引揚港)’에서 공식적으로 귀환자들을 신고 첫 배가 8월 30일에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서 항구 주변에는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밀항선을 이용해 귀환한 조선인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조선인의 귀환을 가장 많이 도왔던 민간기관이 재일본 조선연맹(약칭 조련)이었다. 조련의 귀국 원조는 11월 이후부터 일본 정부와 교섭하면서 귀국자 수송의 일부 업무도 맡았다. 귀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대우나 임금 청산의 중개, 기업에 대한 임금 요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조선 노동자들의 귀환을 도왔었다.

패전 당시 일본은 식민지로 지배했던 조선인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사상이 팽배해 있었다. 그들은 패전에서 오는 실망감으로 막연하게 잘못된 적개심에 불타서 조선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폭침에 의해 가라앉은 사건’이다.¹²²⁾ 지금까지 원인조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일본 당국의 방관과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배는 1945년 8월 22일에 아오모리현(靑森縣)의 오미나토항(大湊港)을 출항하여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에 교토(京都)의 마이즈루항(舞鶴港)에 들어가려다가 폭침을 당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인 3,725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망자 524명, 행불자가 1천 수백 명에(일본정부 공식발표) 달했던 것이다.(사이토 사쿠지 1996:265)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학살사건이 ‘가미시즈카(上敷香)학살사건’이다.¹²³⁾ 1945년 8월 18일 일본 헌병들이 사할린에서 조선인을 붙잡아 처참하게 구타하고, 이렇게 구타한 그들을 가미시즈카(上敷香)경찰서 유치장에 몰아넣고 밖에서 지키며 나오는 사람은 사살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건물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집단 학살한 사건이 ‘가미시즈카(上敷香)학살사건’이다.(사이토 사쿠지 1996:263) 다음으로 ‘미즈호(端穗)학살사건’

122)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일본해군이 저지른 의도적인 자폭’인가 아니면 ‘미군이 부설한 부설기뢰에 따른 침몰’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배상 책임원리로 보면 폭침원인의 구별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침몰의 원천적인 원인은 일본해군이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폭침결과와는 관계없이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의 주인인 일본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사이토 사쿠지 1996:266)

123) 가미시즈카(上敷香)의 경찰서유치장에는 당시 50명이 유치되어있었고, 일본인만 먼저 석방하고 난 후 조선인 19명을 총살하고 다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태워죽인 사건을 말한다.(林えいだい 1993:170))

을 들 수 있다.¹²⁴⁾ 1945년 8월 19일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처리 방안을 놓고 경찰서장, 면장, 민방위대장, 우체국장, 역장 등이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미즈호(端穗)에 있는 조선인 남성들을 전부 체포하여 냉동고에 집어넣은 다음 얼려 죽여서 배로 싣고나가 바다에 버린 사건이다.(사이토 사쿠지 1996:264)

일본이 패전 직후 이렇게 조선 노동자들을 집단 학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조선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었다. ②조선 노동자들이 소련군을 안내하고 있다는 소문이였다. ③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인이 저지른 죄악성을 소련군에게 폭로할 것이라는 염려로 집약할 수 있다.(사이토 사쿠지 1996:263)

이처럼 패전 당시 막연히 잘못된 생각으로 저지른 참혹하고도 잔인한 이 사건들을 역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일본정부는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의 폭침도 가설로서 의문만 부풀리지 말고, 이에 관련된 제반 자료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숨겨온 이런 학살 사건의 진상을 진술하게 규명하고자할 때 올바른 국제관계 개선과 양국 간의 진정한 협력이 있을 것이다.

5. 소결

이상에서 일본의 노동력 강제동원에 맞서서 저항했던 노동실태와 해방 후의 귀환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로 도주의 저항에 있어서는 징용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동원 초기 과정에서부터 도주로 저항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징용 현장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도주는 이어졌었다. 이에 일본은 협화회를 동원해서 도주자들을 통제하였다. 도주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에 대한 공포, 가혹한 강제노동,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도주형태의 저항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두 번째

124) 미즈호(端穗)의 학살사건은 1946년 여름 소련군의 특무기관이 현지조사를 하여 발표하였다. 즉 여성이 세 사람과 여섯 사람의 어린애와 어른을 모두 합쳐 27명의 조선인 죽었다고 밝혔다.(林えいだい 1993:241-242)

로 분쟁의 저항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폭압적인 노동 정책이 원인으로 들어났다. 혹독한 노동과 배고픔에 대한 생존적인 반발이 분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분쟁을 일으키는 조선인을 ‘불량선인(不良鮮人)’이라 불렀으며, 이에 강경 일변도로 탄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비밀결사운동의 저항에 대해서는 국민징용제가 발동되면서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징용되어 비밀결사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민족정신 고취라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이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 특고경찰은 비밀결사단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주도층이 노동자층으로 바뀌어 갔다는 점은 민족운동의 또 다른 흐름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해방 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귀환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이 단순히 조선인을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귀환정책에 소홀하였고, 그 때문에 귀환과정에서 많은 조선인 희생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본과 GHQ는 귀환정책을 세우면서 ‘계획이입노동자’와 ‘자유노동자’로 구분하여 귀환조치를 하였다. 특히 패전의 실망감으로 적개심에 불타서 조선인 노동자를 집단 학살한 사건도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

이상에서 일본 강점기하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관한 실태를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노동력 강제동원 실태파악을 위해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정리함으로서 본고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제기하였던 것이 일본의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에 대한 분석이었다. 강제동원 정책은 일본이 1929년 경제 대공황(大恐慌)을 대륙침략전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은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려는 의도로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강제동원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전쟁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은 전 조선을 ‘총동원체제’로 개편하였다. 노동력 강제동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지역간 노무수급 조정책’과 ‘도항조정책(渡航調整策)’으로서 조선 내의 노동력을 조절해 왔었다. 이런 노동정책이 ‘노무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에 따라 1939년 내무·후생 두 차관의 통첩으로 본격적인 노동력 동원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다. 또한 대륙침략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은 ‘내선일체’를 통한 ‘황국신민화’라는 정신동원을 강요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국민총력운동’을 통한 조선인의 정신교화와 전시협력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좀더 효율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을 발령하여 전 조선인의 노동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력 강제동원은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관련 기관도 수시로 개편해 나갔던 것도 알 수 있었다. 조선에 대한 노동력 동원정책은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동원한 총체적 동원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제기하였던 것이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전개과정과 유형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조선인 노동력 동원의 규모, 방법, 유형, 전개과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이 패망과 함께 강제동원관련 문서들을 소각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분명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단지 단편적인 여러 자료와 조사, 증언을 종합한 것

이 현재 노동력 동원의 실상이다. ①동원규모는 2003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7,941,101명이 강제 동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표 7〉참조) 당시의 조선 인구를 2,200만 명 안팎으로 본다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동원된 셈이 된다. ②동원방법에 있어서는 모집-관 알선-징용의 단계로 동원되었다. 초기의 모집방식에서는 자유모집 형식을 취한 노동력 강제동원이었고, 관 알선방식에서는 권력을 앞세운 알선헌식을 취한 노동력 강제동원이었고, 징용에서도 신체를 구속하는 법률적 제재를 가한 노동력 강제동원이었다. 이처럼 모든 동원단계는 강력한 조선총독부의 권력이 그 중심에 서있었다. 그리고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과 민간기구를 총동원한 총체적 수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떤 동원방식이든 그것은 관(官)이 깊이 개입되어있는 동원체제로서 패전할 때까지 일관되게 이끌고 갔던 것이다. ③동원유형에 있어서는 조선 내외로 동원해 갔다. 먼저 조선 내의 동원은 관 알선에 의해 단기적으로 동원되었다. 점차 전쟁이 확대되면서 근로보국대 형식으로 바뀌어 갔는데, 노동력을 보유한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동원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조선 외의 동원으로는 대규모적으로 동원되었던 동원방식이 모집방식, 관 알선헌식, 징용방식이 있었고, 소규모적으로는 조선농업보국청년대, 군속(軍要員), 남양농업이민(南洋農業移民),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 여성 종군간호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원지역은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시아, 남양군도, 사할린, 소련 등 다양하였다. 그 중에 일본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그 동원된 절반은 탄광으로 가서 혹사하였고, 또 탄광에 배치된 노동자 절반이 홋카이도(北海道)로 동원되어 갔던 것이다. ④노동력 동원의 전개과정은 먼저 모집방식에서 보면 처음에는 순조롭게 모집할 수 있었지만 점차 현지의 가혹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동원이 힘들어져 갔다. 순사와 면서기를 동원하여 강제성을 띠고 모집하였지만 목표에 미달하자 관 알선헌식으로 동원방식을 바꾸었다. 이 관 알선헌식 동원과정에서 도주자가 속출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동원된 노동자의 조직도 군대식으로 편성하였고, 교육과 훈련도 하였지만 당초의 동원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일본은 더욱 강력한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

용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국민징용이 실시되면서 ‘응징사(應徵士)’라는 별칭으로 본인과 가족의 영예가 된다는 것을 선전하며 동원을 최대화하였다. 그런데 징용방식도 역시 일본의 의도대로 잘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노동력 동원의 전개과정은 일본이 무모한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인을 자국의 전쟁에 무차별적으로 몰아넣어 희생시키는 형태가 되었다.

세 번째로 제기하였던 것이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었다. 일본은 동원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철저하게 군대식 규율과 편제로 노무관리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원초기부터 대(隊)-반(班)-조(組)로 편제하여 작업현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를 취하였다. 더구나 일본은 계속되는 강제동원으로 노동력이 바닥나자 노동력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의 향상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정신훈련과 연성(鍊成)을 통하여 생산성을 올리고자 상명하복이 뚜렷한 산업군단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협화회(協和會)는 황민화교육을 위해 경찰과 연계하여 철저한 감시와 감찰로 노동자를 억압하였다. 협화회원장을 항상 소지할 것을 강요하며 통제하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황민화정신의 함양’을 강요하였다. 또한 강제동원 노동자는 군대식 규율의 노무관리뿐 만아니라 민족적인 차별과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작업 배치 과정에서 위험하고, 힘들고, 사고가 빈번한 곳에 조선인 노동자를 집중 배치하는가 하면 임금(賃金)면에서도 일본 내지인들과 현저한 차별 대우를 하였다. 노동 강도는 하루에 14~15시간 정도의 중노동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강제노역을 하였다. 노무관리를 하는 노무계의 직원은 군인이나 경찰관 출신으로 젊고 완력이 있는 자들을 선별 채용하여 온갖 린치와 폭압으로 강제노역을 시켰던 것이다. 노동실태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전시 하의 물자 부족 현상은 노동자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배급량 부족으로 직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생활은 험벗고 굶주림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각종 명목으로 착취하여 갔고, 저축이나 고향에 송금하기는커녕 먹고사는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음식과 식사는 절대량이 부족하여 굶어죽

은 사람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부족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중간착취가 심했던 것이다. 기숙사는 대부분의 동원 노동자들이 료(寮)라는 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였지만 조잡하게 만들어진 곳이 많았다. 이처럼 배고픔과 열악한 환경과 차별적인 상황에서 견뎌야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실태는 인간 이하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제기하였던 것이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저항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강압적인 노무관리 속에서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소극적인 저항인 도주와 적극적인 저항인 분쟁의와 비밀결사를 통해서 강제동원에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동원 초기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을 기피해 왔던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 도착해서도 저항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개인적인 도주였으나 이것은 점차 집단적인 도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각종 분쟁의로 일본의 강압적인 노무관리에 저항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농촌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노동자들이 일본의 억압에 맞서 자연 발생적으로 분쟁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더구나 민족적인 성격이 강한 비밀결사조직을 통하여 일본에 맞선 것은 민족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 저항운동의 성격은 일본의 혹독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선 민족적인 저항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패전 후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귀환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그 결과 귀환이 지연되면서 동원 노동자들은 미불임금을 비롯해서 식량사정, 민족감정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강제동원 노동자 중에는 현지에서 사망하거나 귀환 중에 배가 침몰하여 실종됐던 조선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은 자국의 패전에 따른 과민반응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은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의 폭침사건을 비롯해 ‘가미시즈카(上敷香)학살사건’ 등 아직도 여러 학살사건이 그 실상조차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귀환정책과 귀환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지금까지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미귀환 문제는 재일교포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한일양국은 해방이후 ‘노동력 강제동원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해 왔었다. 일본 강점기하의 강제동원 역사는 묻어둔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강제동원문제는 현재 남북분단과 해외 한인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깊게 골이 패인 우리 민족의 왜곡된 근대민족사를 바르게 복원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인 것이다. 노동력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은 앞으로 한일양국의 긴밀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최우선적으로 청산해야할 핵심적인 과거사문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國民精神總動員忠淸南道聯盟. 1939a. “推戴式ニ於ケル總督訓示”. 63.
- 國民精神總動員忠淸南道聯盟. 1939b. “日本精神發揚週刊實施狀況(實績)”. 163-171.
- 國民總力朝鮮聯盟. 1941a. 『國民總力讀本の趣意』.
- 國民總力朝鮮聯盟. 1941b. 『國民總力讀本』.
- 國民總力朝鮮聯盟. 1945a.
- 國民總力朝鮮聯盟. 1945b.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 國民總力朝鮮聯盟. 1945c.
- 宮孝一 著. 1942. 上田龍男 譯. 『朝鮮徵用問答』. 毎日新報社.
- 宮孝一 著. 1944. 上田龍男 譯. 『朝鮮徵用問答』. 毎日新報社.
- 慶尙南道 鑛工部 勞務課. 1944. “朝鮮職業紹介所令”『勞務關係法令集』. 273-274.
- 內務省 警報局. 1942. 『社會運動の狀況』第4券2號.
- 대장성 관리국. 「일본인 해외활동 관한 역사적 조사」통권. 제10책. 「조선 편」. 제9분책.
- 鈴木武雄. 1939. 『大陸兵站基地論解説』. 綠旗聯盟.
- 肥塚正太述. 1941. “常會早わかり讀本”『國民總力』第3券5號. 123-124.
- 石炭統制會 京城出張所. 1944. 『朝鮮人勞務者内地送出強化ニ就テ』. 北海道 大學 소장 문서 중.
- 『宇恒一成日記』. 1970. みすず書房. (1932年3月7日, 1932年4月4日).
- 朝鮮總督府. 1924. “合併の理由と朝鮮の現状”. 朝鮮印刷株式會社. 京城1.
- 朝鮮總督府. 1935. “施政二十五年史”. 949.
- 朝鮮總督府. 1940a. 『朝鮮法令輯覽』第13輯. 188-190.
- 朝鮮總督府. 1940b. “國民精神總動員聯盟必行二則制定ノ件”. 141.

朝鮮總督府. 1940c. “興亞奉公日ニ關スル件”. 147.

朝鮮總督府. 1940d. “百億貯蓄強調週間實施ニ關スル件”. 163-164.

朝鮮總督府. 1940e.

朝鮮行政學會. 1943. 『皇農への道』.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政課.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編纂. 南次郎の1938年4月19日道知事會議の發言.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諭告・訓示・演述總攬』. 173.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編纂. 南次郎の1940年8月31日道産業部長會議に於ける發言.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諭告・訓示・演述總攬』. 243.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1941a. “道知事會議ニ於ケル政務總監訓示”. 178.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1941b. “道警察部長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500.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1941c. “第20回中樞院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諭告・訓示・演述總攬』. 38.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政課. 1943. 『皇農으로의 길』. 朝鮮行政學會.

朝鮮總督府 遞信局. 1934. 『朝鮮に於ける社會公共事業に關する諸調査 其一』.

朝鮮總督府 遞信局. 1935. 『朝鮮に於ける朝鮮公共事業に關する諸調査 其二』.

朝鮮總督府 厚生局. 『勞務調整令解説』. 1942년.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1938a. “生活ノ刷新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1938b. “內鮮一體ノ強化徹底ニ關スル件”.

前田一. 1943.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2. 신문 및 간행물

『京城日報』. 1939年8月1日.

『東亞日報』. 1938年3月31日.

『東亞日報』. 1940年5月12日.

『毎日新報』. 1939年12月15日. “一道に一個所主義と國營職業紹介所”.

『毎日新報』. 1940年12月5日. “國營職業紹介所 大田, 光州, 清津に新設”.

『毎日新報』. 1943年4月26日.

『毎日新報』. 1944年5月26日.

『西鮮日報』. 1934年5月11日.

『석탄시보』. 142號.

『朝鮮日報』. 1933年12月22日.

『平壤毎日新聞』. 1936年10月30日.

『한겨레신문』. 1990年1月4日.

『殉銀罰査月報』第7號. 1938. “鑛山労働者の道外斡旋決定”. 89.

『朝鮮』. 1937年5月. “道知事會議”. 172-174.

『朝鮮』. 1942. 森谷克己. “大東亞の建設と半島の人的資源の重要性”. 323.

『朝鮮勞務』1券1號. 1941. “創刊の言語”1.

『朝鮮勞務』2券3號. 1942. 渡邊肆郎. “勞動技術統計調査に就て”. 44-48.

『朝鮮勞務』2券5號. 1942. 朝鮮總督府 勞務課 調査係. “朝鮮の勞務者移動狀況”. 53.

『朝鮮勞務』4券3號. 1944. 警務局 經濟警察課. “勞務管理と經濟警察”. 2-3.

『朝鮮經濟年報』. 1939.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編. 133-1.

『朝鮮鐵道協會會報』15券4號. 1936. 學務局社會科. “南鮮過剩人口の北送”. 10-15.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39. 朝鮮總督府 內務局. “職業紹介事業成績”. 28-34.

『釜山往復』. 1944年6月28日. “チロ送出情報”2.

『特高月報』.

3. 국내 단행본

강제연행생존자증언집편집위원회. 2000. 『채인돌-태평양전쟁중 창녕군에서 강제연행당한 생존자 증언집-』.

- 강창일. 1997.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인 군사동원-조선 지배정책과 관련하여-”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 권태억. 2005. “일제 식민통치의 기조”.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한일관계사연구논집8). 경인문화사. 115-149.
- 김대상. 1975. 『日帝下强制人力收奪史』. 정음사.
- 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
- 김성례·강정숙·서현주. 1995. “일제말기 노동력 수탈정책:법령을 중심으로”.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일제식민지정책연구논문집』.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영희. 2003.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연구』. 경인문화사.
- 김인덕. 1996.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 김인덕. 2002. 『강제연행사 연구』. 景仁文化社.
- 김태기. 1997. 『戰後日本政治와 在日朝鮮人問題 SCAP의 대재일조선인정책 1945-1952년』. 勁草書房.
- 사이토 사쿠지. 1996.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진상』. 가람기획.
- 이승렬. 1996. “1930년대 전반기 일본군부의 대륙침략관과 ‘조선공업화’ 정책” 『國使館論叢』 67輯. 國史編纂委員會.
- 정창석. 2005. “식민지 시대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한일관계사연구논집 8). 경인문화사. 61-113.
- 정혜경. 2003.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사료연구. 景仁文化社.
- 정혜경·이완범·정병준·방선주. 2002. 『행방전후사사료연구1』. 도서출판선인.
- 최유리. 1997.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國學資料院.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일제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한일문제연구원. 1995.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7백만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 아세아문화사.
-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2005. 『강제연행 강제노동연구 길

라잡이』. 선인.

허수열. 1985.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조선 내에서의 강제동원 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4. 국외 단행본

宮田節子. 1985. “志願兵制度の展開とその意味”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51.

近藤劔一 編. 1961. 『太平洋戦下終末期朝鮮の治政』. 朝鮮史料編纂會.

近藤劔一 編. 1964. 『太平洋戦下の朝鮮』. 友邦協會.

金英達. 2003. 『金英達 著作集2-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房.

大藏省管理局. 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통권. 제10책.
「조선편」 제9분책.

林えいだい. 1982. 『日帝의 朝鮮人勞動強制收奪史』. 신정식 譯. 비봉출판사.

林えいだい. 1989. 『消された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明石書店.

林えいだい. 1991a.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II 朝鮮人1上卷. 明石書店.

林えいだい. 1991b.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III 朝鮮人2상卷. 明石書店.

林えいだい. 1991c.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III 朝鮮人2중卷. 明石書店.

林えいだい. 1992. 『사할린은 통곡한다』. 반민족문제연구소 옮김. 계명문화사.

林えいだい. 1993. 『證言·樺太朝鮮人虐殺事件』. 소문출판.

木坂順一郎. 1981. “大政翼贊會ノ成立” 『岩波講座日本歴史』 20. 近代7. 306.

木坂順一郎. 1985. “大日本帝國の崩壊” 『講座日本歴史』 10. 東京大學出版會. 312-313.

- 民族問題研究所 編5. 2000a. “生産力擴充計劃の現況と將來展望”『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186-205.
- 民族問題研究所 編15. 2000b. “朝鮮ニ於ケル勞務需給(内地供出ヲ含ム)狀況概要並ニ需給計劃ト実績トノ對照(最近三ケ年)”『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304-317.
- 民族問題研究所 編15. 2000c. “朝鮮ニ於ケル國民登錄實施成績概要”『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323-324.
- 民族問題研究所 編15. 2000d. “内地要望朝鮮人勞務者ノ供出ニ關スル情況”『日帝下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264-265.
- 民族問題研究所 編22. 2000. “學徒動員ノ狀況及將來ノ方針如何”『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162-165.
- 朴慶植.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미래사.
- 朴慶植 編. 1975~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4권. 三一書房.
- 朴慶植 編. 1980. 『朝鮮問題資料叢書』. アジア問題研究所.
- 福岡安則. 1993. 『在日韓國. 朝鮮人』. 中央公論社.
- 寺崎昌男. 戰時下教育研究會 編. 1987. 『總力戰體制と教育-皇國民‘鍊成’の理念と實踐』. 東京大出版會.
- 小林英夫. 1989. “총력전체제와 식민지”『日帝末期과시금과 韓國社會』. 최원규譯. 청아출판사. 15-20.
- 야마다 쇼오지(山田昭次) 외. 1992. 『근현대사 속의 한국과 일본』. 샘기획 옮김. 돌베개.
- 李興燮. 1990. 『アボジがこえた海』. 葦書房. 이명환 譯. 『아버지가 건넌 바다』. 광주.
- 前田一. 1943.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 제19회 思想實務家會同(1941/7/17-18)중에서. 1981. 『昭和思想統制資料』별권(상). 生活社.
- 中塚明. 1981. “日本帝國主義와 植民地”. 高橋幸八郎外 共編. 『日本近代史論』.

- 額纈厚. 1981. 『總力戰體制研究 및 日本陸軍ノ國家總動員構想』. 三一書房.
- 樋口雄一. 1992. 『戰時下朝鮮人統制組職の研究』. 高麗書林.
- 樋口雄一. 1998.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社會評論社.
- 樋口雄一編. 2000. “從業者移動防止令ノ施行ニ際シ內務局長談發表ノ件” 『戰時下朝鮮人勞務動員基礎資料輯1』. 綠蔭書房. 346-365.
- 河棕文. 1996. 『戰時勞動力政策の展開-動員のロジック, 動員機構, 勞動力需給狀況を中心に-』. 東京大學日本史學研究室.

5. 논문

- 곽건홍. 1998. “전시체제기 (1937 ~ 1945년) 일제의 노동이동 제한 정책”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59-186.
- 곽건홍. 2002. “침략전쟁기(1937~45)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존재 형태:군대식 노동규율과 노동조건의 민족적 차별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5권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9-32.
- 강계삼. 1986. “日本-戰時體制下の 勞使關係” 『논문집』. 서원대학교. 217-257.
- 강만길. 1997. “침략전쟁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저항” 『한국사학보』 2. 고려사학회. 239-263.
- 강만길·안자코 유카. 2002. “해방직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 『아세아연구』 제45권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67-106.
- 김민영. 1991. “日帝의 朝鮮人 勞動力 收奪에 관한 연구 : 強制動員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영. 2000. “식민지시대, 조선인 ‘전시노무동원’ 문제에 대한 연구쟁점과 전망(2)” 『지역개발 연구』 32-1통권36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43-62.
- 김민영. 2003a. “植民地時代 勞務動員 勞働者の 送出과 鐵道·連絡船” 『韓日民族問題研究』 제4호. 韓日民族問題學會. 41-68.

- 김민영. 2003b. “강제동원피해자의 대한 조사 및 인원추정” 『2003년도 일제 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영희. 1996. “1930·40년대 日帝의 農村統制政策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운태. 1996. “일본제국주의의 강제동원 정책의 실태”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 편) 제35집. 大韓民國學術院. 209-340.
- 김은경. 1999. “植民地朝鮮의 大陸兵站基地論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중. 2000. “일제말기 조선인의 북해도지역 강제연행과 저항”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은진. 2002. “일제 침략전쟁기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의 저항과 성격: 일본 내 ‘도주’·‘비밀결사운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5권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3-65.
- 안자코 유카. 2003. “일제말기(1937~1945년)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 : 총동원체제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의 전개” 『한국사학보』 14호. 고려사학회. 317-348.
- 유성희·박은경. 1998.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인문사회과학연구』.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41-157.
- 이복숙. 1977. “日人の 韓民族에 대한 虐待와 差別에 관한 調査研究” 『건국대학교학술지』.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소. 63-80.
- 이상의. 2003.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2001년 12월19일. “구술자료로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 민족문제연구소·한일민족문제학회.
- 전기호. 2001. “강제연행 제일조선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17』. 경희대학교부설 경희경제연구소. 1-28.
- 전기호. 2000. “日帝下 朝鮮人 強制 連行·強制勞動에 있어서 強制的 性格에

- 관한연구”『경제연구16』. 慶熙大學校附設慶熙經濟研究所. 1-29.
- 정혜경. 2002. “일제 말기 강제연행 노동력 동원의 사례 : ‘조선농업보국청
년대”『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소. 179-217.
- 한혜인. 2001. “‘조선인강제연행’에서의 강제성의 한 단면”『일본어문학』.
한국일본어문학회. 265-293.
- 한혜인. 2003.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1939·40年の 朝鮮總督府 政策과
釜山職業紹介所の 役割을 中心으로)”『韓日民族問題研究』 제4호. 韓日
民族問題學會. 69-104.